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3423-01

2020. 11.

농촌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적 농업 추진 방안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3423-01

2020. 11.

농촌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적 농업 추진 방안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김정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연구위원 | 연구총괄, 사례조사·분석, 집필(1~5장)

조승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부연구위원 | 사례 조사·분석

하인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연구원 | 문헌 등 자료 정리, 집필(2장, 3장)

농촌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적 농업 추진 방안

발행 | 2020. 11

발행처 | 농림축산식품부

인쇄처 | 더크리홍보(주)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농촌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적 농업 추진 방안」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1월

연구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김정섭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조승연 (부연구위원)

하인혜 (연구원)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농촌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사회적 농업을 실천할 수 있게 촉진하는 정책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제도 정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구체적으로는 첫째,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이룬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다. 사회적 농장과 지역공동체 내 여러 행위 주체들과의 협력 연결망에 관련된 제도적 기반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개인이 직면할 수 있는 한계점을 짚어본다. 둘째, 사회적 농업의 지역 단위 추진 방안을 제시한다. 각종 정책사업과 결합해 상승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지역공동체 기반 활동을 실천하거나 조력하는 단위들과의 협력 연결망 구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사회적 농업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법제 정비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 방법

- 문헌 검토, 현황 조사 및 분석, 사례 분석과 더불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외국의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적 농업 실천 사례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으며, 국내의 사회적 농업 실천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사회적 농업의 실천 단위가 개별 농가인지 지역공동체 안의 여러 행위자들이 협력한 집합적 단위인지 살펴보았으며, 사회적 농업 실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 지역공동체에 바탕을 두고 전개되는 국내외 사회적 농업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공동체의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각종 활동들의 중요성이 인지되는 가운데 근년에 제출된 법률 발의안들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 사회적 농업의 근본 지향은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약자 포용’이다. 농장 단독으로는 사회적 농업 서비스(돌봄, 교육,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어 농촌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협력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탈리아(지역공동체가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 아일랜드(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협력 연결망) 등 외국에서도 지역공동체에 바탕을 두고 사회적 농업을 발전시켜 왔다.
- 지역공동체에 바탕을 둔 사회적 농업 실천은 유형·무형의 비용을 여럿이 분담하고 사회적 농업 참여자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사회적·심리적 효과를 증진하며, 실천 초기에 협력 관계 형성, 사회적 농장에 필요한 다양한 인적 자원 확보, 지역공동체의 포용적 발전 촉진 등 현실적인 장점을 지닌다.
- 현행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성과로는 사회적 농장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참여자 수가 단기간에 크게 증가한 것, 농업인이 보건·복지·교육 분야 기관·단체와 지역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여 농업·비농업 부문의 연계를 본격화한 혁신적 성격의 농업정책으로서 선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 그렇지만 지역공동체 내 협력 관계 형성과 사회적 농장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제고 측면에서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필요하다. 즉 개별 사회적 농장의 노력에만 맡기지 말고, 처음부터 다양한 주체들이 사회적 농업을 ‘함께’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게 지원 정책의 틀을 변화시켜야 하며, 사회적 농업 실천의 확산 추이를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농장 활동 프로그램이 유지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적 농업 실천 주체들의 ‘학습’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 제언

- 농장 단독으로 사회적 농업 활동을 홀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동시에 다양한 주체들 각각에 대해 ‘1 대 多’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현재 구조를 ‘多 대 多’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에 사회적 농업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며,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농장 활동의 역할을 분담하는 협력 관계를 촉진할 수 있다. 여러 농장과 여러 참여자를 연결·배치하는 퍼실리테이터 직무를 지원하여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적 농업에 협력하는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 또한 농촌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적 농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현장의 관계자들이 협력하는 가운데 ‘단계적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3. 주요 연구 방법 5

제2장 지역공동체에 바탕을 둔 사회적 농업의 의미와 필요성

1. 사회적 농업 실천의 성격 7
2. 지역공동체-기반 사회적 농업 실천의 국내외 사례 13
3. 지역공동체-기반이어야 하는 현실적 이유 40
4. 사회적 농업에서 지역공동체의 장소 범위 문제 43

제3장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1.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개요 45
2. 성과와 과제 47

제4장 사회적 농업 관련 법제 정비의 쟁점

1. 신법 제정을 전제로 할 경우 65
2. 기존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할 경우 68

제5장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적 농업 확산 전략

1. 개요 71
2. 지역공동체-기반 사회적 농업의 두 가지 모델 73
3. 추진 전략 77

부록

| | |
|--|------------|
| 부록 1. 농촌 지역에 소재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현황 | 91 |
| 부록 2. 이탈리아의 사회적 농업 법 | 93 |
| 부록 3. 「사회적농업 육성법」 발의안(2018년 12월 27일 발의) | 99 |
| 부록 4. “농촌 지역공동체의 사회서비스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초안 | 104 |
| 부록 5. 한국형 케어팜 모델 적용: 공적돌봄제도 체계와의 연계 방안 | 109 |
| 부록 6. 발달장애인과 1차 산업 연계 활성화 방안 | 119 |
| 참고문헌 | 131 |

제2장

〈표 2-1〉 행복농장의 2016년 자연구시프로그램 개요 15

제3장

〈표 3-1〉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농장들의 사회적 농업 실천 현황 48

〈표 3-2〉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농장 활동 프로그램 실적(2020년) 63

제4장

〈표 4-1〉 세 가지 법률 발의안의 구성 비교 66

제5장

〈표 5-1〉 협력 연결망 구성원의 역할 분담 75

〈표 5-2〉 무주군 안성면 공동체지원센터의 사회적 농업 관련 지원 활동(2019년) 79

〈표 5-3〉 ‘지역공동체-기반 사회적 농업’ 촉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단계별 지원 전략 88

〈표 5-4〉 사회적 농업 경험 여부에 따른 교육 지원 89

부록 5

〈부표 5-1〉 2018년 등급판정 완료자의 ADL 및 인지장애정도 분포 111

〈부표 5-2〉 장기요양급여 개선 및 서비스 확대 과정 112

〈부표 5-3〉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중 치매있다 응답자 현황 114

부록 6

| | |
|--------------------------------------|-----|
| 〈부표 6-1〉 전국 장애인·발달장애인 추이 | 120 |
| 〈부표 6-2〉 연령별 발달장애인 현황 | 120 |
| 〈부표 6-3〉 장애인과 발달장애인 고용현황 | 121 |
| 〈부표 6-4〉 장애인 임금 현황(월 평균) | 121 |
| 〈부표 6-5〉 민간영역 발달장애인 신규직무 | 124 |
| 〈부표 6-6〉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프로그램 예시 | 128 |
| 〈부표 6-7〉 시도별 지역별 발달장애인 현황 | 130 |

제2장

<그림 2-1> 사회적 농업의 세 가지 핵심 요소 10
<그림 2-2> 갈림길에 선 사회적 농업 12
<그림 2-3> 장곡면 일대의 지역사회 조직 협력 연결망 구조 21
<그림 2-4> 케리 사회적 농업 프로젝트의 협력 연결망 구조 30
<그림 2-5> 이탈리아의 운영 조직 유형별 사회적 농장 현황(2015년 기준) 34
<그림 2-6>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과 지역 보건기관의 협력 관계 38
<그림 2-7>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 A유형에 대한 지원 구조 38
<그림 2-8>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 B유형 및 민간 농장에 대한 지원 구조 39
<그림 2-9> 협동조합 행복농장의 '사회적 농업 협력 연결망' 42

제3장

<그림 3-1>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실시 지역(2020년) 46

제5장

<그림 5-1> 사회적 농업 거점 농장의 활동 범위(예시: 충청남도) 72
<그림 5-2> 농촌 현장의 관점에서 본 지역공동체-기반 사회적 농업 추진 전략 86

부록 6

<부도 6-1>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122
<부도 6-2> 서비스별·시설별 발달장애인 이용자 수 130

1

서론

1. 연구의 배경

정부는 2018년부터 ‘농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 정책을 추진해왔다. 사회적 농업을 한국보다 앞서 개념화하고 정책 영역에 포함시킨 유럽연합에서, 사회적 농업이란 “계약에 기초한 노동을 수행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가령, 지적·신체적 장애인, 출소자, 약물중독자, 소수자, 이주민 등)의 노동통합을 지향하거나,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의 재활, 교육, 돌봄^{care} 등을 촉진하거나, 아동이나 노인 등 특정 집단에게 농촌 지역에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닌 영농실천”(Iacovo and O’Cormor, 2009: 11)이라고 정의한다. 한국에서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사회 안으로 끌어안는 농업 실천을 사회적 농업이라고 정의할 때 노동통합, 돌봄, 직업교육훈련 등 세 가지 실천 유형의 맥아를 식별할 수 있다”(김정섭 외, 2017: 8-9)는 의견이 제출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하는 가운데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사회적 농장’과 사회적 농업 실천을 지식·정보 측면에서 지원하는 ‘거점 사회적 농장’을 선정해 주로 경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적 농장 단독으로는 영농활동과 농장활동에 바탕을 둔 돌봄 등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듯하다. '사회적 농업 확산'을 꾀하는 데에는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사회적 농장이 속한 농촌 지역공동체community의 다양한 구성원이 협력하여 '지역공동체 안에서 도움(돌봄, 교육, 일자리 등)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회적 농장을 매개로 포용하는 집단적 움직임'을 촉진하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그 같은 관점은 현행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형성된 초기(2018년)에도 수용되었고, 사업시행지침에도 일부 반영되었으나 충분치 않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적 농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려는 농업인, 사회복지단체 등의 협력 연결망을 구축하려는 정책사업(충청남도)도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국내에 알려진 외국의 사회적 농업 정책도 '지역공동체'를 사회적 농업 실천의 주체이자 장소로 간주하고 활용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룬다. 가령, 이탈리아에서는 지역공동체 구성원이 일자리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케 하고, 그 사회적 협동조합에 노동, 복지, 농업 분야의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농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케리 카운티Kerry County에서는 유럽연합의 지원하에 지역공동체-기반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 거주 인구 15만 명 규모의 케리 카운티 지역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려는 농업인들이 모여 연결망network을 형성하고, 사회적 농장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려는 발달장애인 등을 연결시켜 주며, 전체 활동을 조율하는 전담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를 두어 사업을 관리하게 하였다. 이 같은 모든 활동을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조직화하였고, 아주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Crowley *et al.*, 2017). 한편, 돌봄농업care farming이 하나의 부문sector으로 인지되는 네덜란드에서는, 지역공동체-기반이라기보다는 개별 영농 단위(주로 농가)가 각기 치매 노인 등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이탈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의 관련 정책 추진체계가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이는 각국의 복지정책 추진체계가 다르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아일랜드의 상황이 한국과 가장 유사한 듯하다. 가령, 네덜란드에서 사회적 농장 단독 서비스 제공 방식이 가능한

것은 농가의 재정 규모가 비교적 크고, 보건복지 정책에서는 개인예산제도¹⁾personal budget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노동 및 복지 정책의 전달체계 자체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한국에서는 최근 들어 읍, 면, 동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의 현안 문제를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바탕을 두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구자인 외, 2020), 그 같은 관점의 실천 사례가 소개되기도 하였다(김정섭 외, 2019a).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농촌발전 정책은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되었는데, 주로 행정리 수준의 지역공동체를 전제로 하였으며, 사회적 농업을 비롯한 ‘복지 서비스 관련 영역’에서의 실천과 정책사업은 그리 많지 않았다. 2019년 들어서야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²⁾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지역공동체가 복지정책의 대상이자 주체로서 등장할 단서가 겨우 마련된 셈이다. 아주 최근 들어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들도 읍, 면, 동과 같은 작은 지역공동체 단위의 활동에 주목하여 정책사업들을 연계하고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처럼 지역공동체의 자기주도성self-initiative을 강조하는 흐름이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듯하다. 그러나 아직은 초기의 단계라 할 수 있다. 가령, 전국 농촌에 50여 개 정도 설치된 마을만들기지원센터³⁾ 등, 이른바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자조自助, self-help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 정비 요구가 최근 5년 동안 제기되었으나, 아직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는 않았다.

1) “개인예산제도는 다양한 형태의 현금 지급제 중에서도 특히 예산에서의 이용자 주도를 최우선시하는 제도로, 개인의 욕구 평가에 기반하여 개별적으로 예산을 설계, 배당, 집행하는 제도이다. 개인예산제도 하에서는 자원할당의 주체를 공공이 맡고, 공급자는 옹호와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는 선택과 통제권을 갖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되고, 서비스는 표준화된 형태에서 벗어나 유연화된다. 즉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유연성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다.”(이한나 외, 2020: 84-85). 돌봄 서비스 같은 분야에 개인예산제도를 적용하면, 기본적으로 현물 서비스나 바우처 대신 현금을 개인에게 지급하여 서비스 이용자가 돌봄 서비스의 종류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2) 일명,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라고도 부른다.

3) 농촌 지역에 소재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목록을 <부록 1>에 소개하였다.

사회적 농업은 통상 지방^{local} 수준에서 농업인 개인의 실천, 공공기관, 사회집단(지역공동체, 제3섹터) 등과 더불어 출발하는 상향식 과정이다(Bloom, 2009: 183).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적 농업’이라는 표현에서 ‘사회’의 구체적인 실체가 바로 ‘지역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적 농업 실천이 지역공동체에 바탕을 두고 펼쳐질 수 있게 촉진하는 정책 노력과 제도적 기반이 아주 중요하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사회적 농업을 실천할 수 있게 촉진하는 정책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제도 정비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연구 목표를 정하였다.

첫째,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지역공동체-기반 복지 실천과의 연계성이라는 관점에서 이론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다. 사회적 농장의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이지만 지역공동체 내의 여러 행위 주체들과 협력 연결망을 맺어 활동하도록 권장하였다. 하지만 그 같은 협력 연결망 형성의 제도적 기반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방향 제시 없이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개인의 노력에 맡겨둔 현재의 상태가 직면할 수 있는 한계점을 짚어본다.

둘째, 사회적 농업의 지역 단위 추진 방안을 제시한다. 농촌 지역사회 수준에서 시행되는 각종 정책사업과 결합해 상승효과^{synergy}를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다양한 직능 영역과 공간 층위에서 지역공동체-기반 활동을 실천하거나 조력하는 단위(예: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사회적 경제 연합 조직, 지역농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 등)들과의 협력 연결망 구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사회적 농업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법제 정비 방안을 제시한다.

3. 주요 연구 방법

먼저, 두 갈래로 문헌을 검토하였다. 외국의 지역공동체-기반 사회적 농업 실천 사례와 관련된 정책을 소개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각종 활동들의 중요성이 인지되는 가운데 근년에 제출된 법률 발의안들을 검토하였다.

지역공동체-기반 사회적 농업 실천은 현행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서도 일정 부분 강조해 온 바, 정부 지원사업 시행 대상자인 행위자들이 지역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사회적 농업 실천 단위가 개별 농가인지 지역공동체 안의 여러 행위자들이 협력한 집합적 단위인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회적 농업 실천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조사하였다.

지역공동체에 바탕을 두고 전개되는 국내외 사회적 농업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외국 사례로는 지역공동체의 여러 행위자들이 협력해 설립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조직 형식으로 실천되는 이탈리아의 사회적 농업과 개별 농가들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 연결망을 구성해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아일랜드 케리 카운티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국내 사례로는 지역사회에서 개별 농가들과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해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확산하고 있는 충남 홍성군 도산2리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문헌 검토, 현황 조사 및 분석, 사례 분석 등과 더불어 수차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2

지역공동체에 바탕을 둔 사회적 농업의 의미와 필요성

1. 사회적 농업 실천의 성격

사회적 농업, 돌봄농업, 혹은 치유농업 등 몇 가지 용어로 개념화되고 있는 새로운 농업 실천⁴⁾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가? 관점에 따라서, 그 함의와 관련된 정책 추진 방향 논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대책 관계 또는 비교 가능한 위치에 있는 쟁점은 세 종류다.

1.1. 사회적 농업은 농업활동인가, 사회복지 실천인가?

이 물음에 관해서는, 적어도 유럽의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모종의 합의가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그 답은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활동인 동시에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점이다. 사회적 농업이 영농활동에 바탕을 둔다는 관점은, 장소만 농장이라는 점이 다를 뿐 사회복지 기관이나 여타의 직능 단체가 수행하는 수많은 형태의 사회복지 실천 가운데 한 종류일 뿐이라는 식의 개념 부여를 거부한다. 즉, 사회적 농업 실천의 기본 주체는

4) 편의상, 문맥에 따라 여러 용어들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사회적 농업'이라고 통칭한다.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다. 그래서 사회적 농업은 다기능 농업(multifunctional agriculture)의 범주 안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사회적 농업이라는 말보다는 돌봄농업이라는 용어가 더 우세하게 사용되고 제도상으로는 보건복지 서비스 체계와 가장 긴밀하게 접합되어 있는 네덜란드에서도, 사회적 농업은 다기능 농업의 확산이라는 배경 속에서 설명된다(Hassink, 2017: 25-26). 사회적 농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기원한 이탈리아에서는 당연하게 다기능 농업이라는 개념이 전제되며, 이는 유럽연합의 관련 정책 당국이나 연구자들 사이에 합의가 형성된 부분인 듯하다(Di Iacovo and O'Connor, 2009: 21).

사회적 농업의 핵심 실천 주체는 농업인이다. 그리고 사회적 농업은 혼종성(hybridity)을 갖는 다기능 농업이다. 즉, 농업 생산단위가 농업활동을 수행하는 동시에 '다른 무엇이 될 수 있다'는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의 가능성, 즉 농장이 농장이면서 동시에 돌봄의 장소가 되거나 농장이면서 동시에 교육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드러낸다(김정섭, 2018). 그런데 농업인 개인만의 행위로 그런 종류의 '-되기'에 성공하기는 어렵다. 사회적 농업은 농업인이 관계하는 농촌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행위자들로 구성된 사회 연결망에 녹아든 실천이다. 그러므로, 칼로 두부를 자르듯 확연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취약한 여건에 놓인 사람들을 수용한 시설 안에서 수행하는 여러 활동 중에 하나일 수 있는 '텃밭가꾸기 프로그램' 같은 것을 '사회적 농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돌봄농업은 서로 다른 두 영역, 즉 농업 영역과 보건 및 돌봄의 영역을 연결하는 과제에 도전하는 다기능 농업의 흥미로운 사례다. 전前 산업사회에서 농업과 보건·돌봄은 소규모 지역공동체 안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두 부문은 현대 사회의 출현과 더불어 각기 분리되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로 농업 부문은 보건·돌봄 및 사회 서비스를 다양한 집단에게 제공하는 일에 점점 더 많이 참여하게 되었다(Iacovo and O'Connor, 2009). 게다가 보건·돌봄 분야 전문가나 조직이 정신질환자, 지적 장애인, 노인, 아동, 약물중독자, 장기 실업자 등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농업인이 제공케 하는 접근방법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돌봄농업이 예전에는 과학적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던 다기능 농업의 한 사례가 되기에 이르렀다. 돌봄 농장은 농업 생산과 보건 및 사회 서비스를 결합한다.

- Hassink(2017: 25-26).

1.2. 사회적 농업은 전문화된 기능인가, 사회적 관계에 바탕을 둔 상호작용인가?

이 쟁점에 관해서는 두 가지 시각에서 논의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적 농업 실천이 가져다주는 편익(또는 효능)이 무엇인가라는 시각이며, 다른 하나는 실천의 바탕이 되는 ‘관계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는 시각이다.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적 농장의 서비스로부터 무엇인가를 얻는 입장에 있는 이들에게⁵⁾ 전해지는 편익이 단지 ‘농장 안팎에 있는 동식물과의 교감’ 또는 ‘자연환경과의 근친성’ 같은 요인에서만 비롯하는 것이라면, 사회적 농업은 ‘농업자원을 활용해 특정한 치유의 기능을 발휘하는 전문영역’이라고 이해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그러나 편익은 그런 차원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그림 2-1). 사회적 농업 활동의 참여자(이용자) 개인의 교육학적·심리학적 변화(새로운 실용기술 습득, 성취감, 책임감, 자신감)가 가장 중요한 결과인데, 그런 결과는 활동 과정에서 농민을 비롯한 지역공동체의 여러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망 안에 연결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집단의 일원 되기, 사회적 접촉, 소속감, 포용). 그래서 사회적 농업 실천을 단지 프로그램화 된 치유서비스(healing service)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는, 즉 ‘기능적(도구적) 관점’에서만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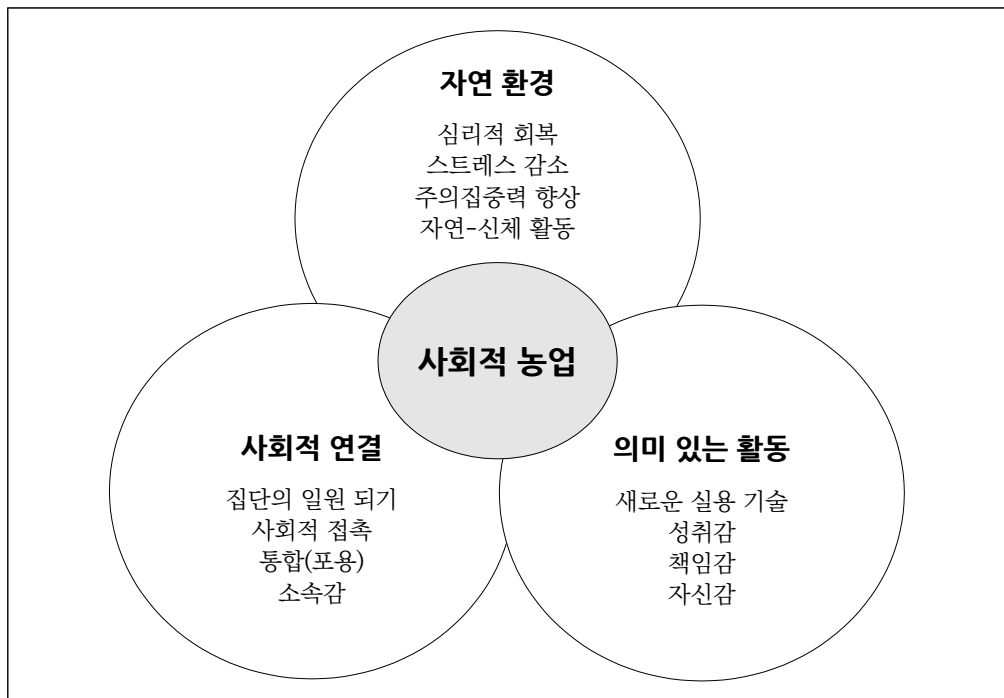
사회적 농장을 방문하여 일련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와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는 농민의 관계 구도를 세 가지 유형으로 설정해 논의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사회적 농장이 단순히 진기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로서만 이해되는 경우로서, 그때 농민은 ‘서비스 판매자’가 되고 프로그램 참여자는 ‘구매자’가 된다. 이는 시장에서의 거래 관계에 다름없다. 이런 관계 구도에서는 사회적 농업 실천에서 기대할 수 있는 편익이 아주 많이 제약된다. ‘사회적 연결’이라는 부분이 박약해지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구매력’이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둘째는 농민이 참여자의 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입장에 서는 경우로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때의 관계 구도는 ‘사회복지사-수급자’의 관계가 된다. 이런 관계 설정

⁵⁾ 이들만이 편익을 얻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고 농사짓는 농업인들도 편익을 얻을 수 있다. 즉, 일방향의 편익 제공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편익상,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얻는 입장에 있다’고 썼을 뿐이다.

은 이론적으로 가능할 뿐, 통상적인 농민의 역량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역할을 부과하는 것이며, 농촌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참여자와 맺을 수 있는 비공식적이면서도 일상적인 관계의 형성 가능성이 약화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농장의 농민은 그저 지역사회의 주민이되 농장을 찾는 이(그 역시 주민이다)를 환대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돌봄, 교육, 일자리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상적인 관계 구도다. 이런 구도에서 ‘사회적 연결’에서 비롯되는 편익이 최대화될 확률이 높다.

사회적 농업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부문이 아니라 농촌 지역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사회적 포용이라는 가치를 구현하는 실천이라고 이해할 때, 그 사회적 편익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도 SH군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에서 유급종사자로 일하는 H씨의 사례와 ○○남도 CG군의 한 농가에서 일하는 B씨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림 2-1〉 사회적 농업의 세 가지 핵심 요소



자료: Social Farming Ireland(2018: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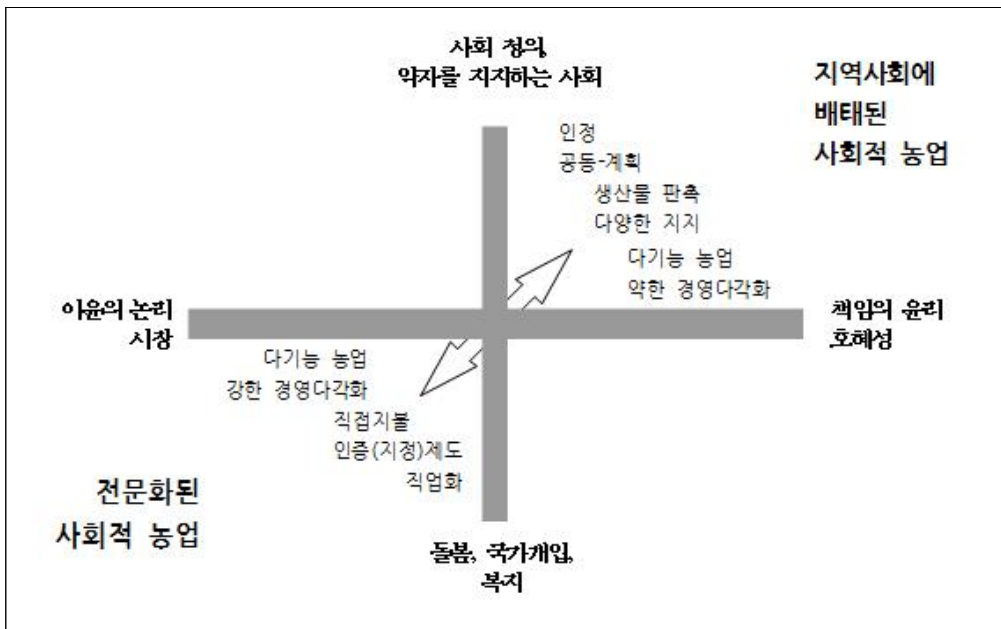
H씨는 10년 넘게 정신장애인 요양시설에 거주했던 인물이다. 중증 정신장애인이 다. ○○농장이 설립되고 사회적 농업 실천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시설에서 ○○농장을 방문하여 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다가, 나중에는 인턴십 과정을 거쳐 ○○농장에서 급여를 받고 주3일 근무하는 직원이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정신장애인 요양 시설을 아예 나와서 SH읍에 임대주택을 얻어 거주하며 농장으로 출퇴근한다. 어느 방송국에서 취재하던 과정에서 H씨에게 “농장에서 이렇게 일하니까 좋은 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유기농 허브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심신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대답이 나오지는 않았다. H씨의 대답은 ‘자유로워서 좋다’는 것이었다. H씨의 자유는 시설 안에서 거주할 때의 온갖 관리상 지침과 통제를 따르지 않아도 되어서 좋다는 자유이지만, H씨는 여전히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하며 약품을 복용해야 한다. 즉, 스스로 정신건강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한 자유다. 그리고 생계를 스스로의 힘으로 꾸려나가는 것이 가능할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자유다. H씨의 자유를 가능케 했던 것은, 행복농장과 그 주변의 주민들이 보여준 환대와 관계 형성에 있다고 해도 다름 아니다. H씨의 생일이 되면, ‘마을부엌’에서 점심을 함께하는 마을 농민 등 10여 명이 어김없이 축하해주고, 농장과 마을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접촉하게 되는 주민들과 스스럼없이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H씨가 누리는 자유의 바탕이다.

B씨는 CG군에 소재한 중증장애인 공동거주 시설, ‘PY’에 살던 인물이다. 영농활동에 종사할 능력이 상당히 있는 B씨를 ‘PY’에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농가에 취직시켜 ‘장애인이 아닌 동네의 농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갖은 우여곡절을 거쳐, 지금은 수년째 어느 농가의 상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몇 년 전에는 아예 주거를 ‘PY’를 나와, B씨가 근무하는 농장에 딸린 집에서 살고 있다. B씨 역시 지역사회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등한 주민으로서 그리고 농민으로서 생활하고 있다. B씨를 고용한 농민의 환대와 ‘PY’의 사회복지사들이 보여준 끈질긴 노력이 한 사람을 지역공동체에 통합시켜 낼 수 있었다.

1.3. 사회적 농업을 촉진하려는 정책은 특정 부문(농업 또는 사회복지)의 하위 부문을 발전시키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가, 지역정책(농촌발전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가?

이상의 논의를 이어간다면, 사회적 농업을 촉진하려는 정책은 특정 부문을 육성하려는 정책이라기보다는 농촌 지역사회를 더욱 ‘포용적인 사회’로 바꾸어 내는 지역 정책의 일환이 되어야 함은 분명해 보인다. 유럽연합에서 사회적 농업의 개념을 규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려던 초기 논의 단계에서, 사회적 농업이 ‘지역공동체-기반 실천’인가, 아니면 특별히 전문화된 ‘직능 영역(부문)’인가를 따지는 논쟁이 있었다. 아직, 논쟁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농업은 ‘지역사회에 스며든 포용적 실천’이어야 한다는 점에 상당한 합의가 형성된 듯하다. 특히,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 긴밀하게 접합되지 않은 아일랜드와 사회복지 분야 정책 전달체계 자체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탈리아에서 그런 관점이 강하게 주장되었다.

〈그림 2-2〉 갈림길에 선 사회적 농업



자료: Iacovo(2010: 6).

결론적으로, 개념 측면과 실천 측면 모두를 살펴본 우리는, 사회적 농업은 일종의 사회적 보호 수단이라는 특징을 지닌다고 제안한다. 사회적 농업은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거나, 그런 돌봄이 없을 경우 기본적인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당할 수 있는 소외된 집단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편견과 차별로부터 '통합'이라는 보호를 제공하며, 존엄하게 생활할 권리를 증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보호를 지향하는 다부문적이고 multisectoral 다차원적인 접근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농업을 통해 사람들은 먹거리 보장과 소득 보장 측면에서 보완적인 수단을 얻을 수 있고, 고용이 가능해지며,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얻을 수 있으며, 돌봄과 살림살이 경제 영역에서 무급 또는 유급의 일 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적 자원 측면의 투자가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접근으로부터 배제된 주변부의 인구 집단을 낙인찍거나 차별 같은 폐단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지적하기를, 사회적 농업은 서로 다른 여러 부문이나 분야들이 교차하는 곳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이어서, 일종의 큰 도전을 직면한다. 그 도전은 농촌 발전 분야에서 여러 활동들이 부문별로 나뉘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 같은 부문별 접근 방법에 도전함으로써, 사회적 보호 수단으로서 사회적 농업은 지역공동체 안에서 복지, 사회적 포용, 지속가능성 등을 증진하려는 목표를 지닌 농촌 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방법론적으로 재검토할 기회를 제공한다.

- Di Iacovo *et al.*(2015: 327).

2. 지역공동체-기반 사회적 농업 실천의 국내외 사례

2.1. 홍성군 장곡면⁶⁾

2.1.1. 행복농장

행복농장은 충남 홍성군 장곡면에 소재한다. 비닐하우스 4동의 소규모 시설에서 유기농 허브, 꽃모종 등 원예작물을 생산하는데, 비닐하우스 4동 정도의 소규모 농장이다. 행복농장이 지향하는 사회적 목적은 주로 지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통합시키는 데에 있다. 체험이나 교육 같은 농장활동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고용까지 염두에 둔 사회적 농업을 실천한다. 그래서 행복농장은 일

⁶⁾ 이 절의 내용은 2018년에 조사하고 2019년 봄에 발표한 논문, “사회적 농업, 농업과 농촌의 탈영토화: 홍성군 장곡면 사례”(김정섭, 2019)에다가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여름까지 장곡면에서 일어난 일들을 조사하여 덧붙인 것임을 밝혀둔다.

반적인 원예 농장과는 다른 규칙으로 운영된다. 조직의 형식, 농장 활동, 재무 구조 측면에서 그 차이점이 드러난다.

〈참고 2-1〉 행복농장 소개 글

마음을 돌보고, 몸을 돌보고, 세상과의 관계를 돌보는 농장입니다. 농작물뿐 아니라 사람을 돌보고 치유하고 키우는 따뜻한 확장이 시작되는 터전입니다. 행복농장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이라는 농장의 원천적 기능과 함께 농업이 가지고 있던 돌봄과 성장의 역할을 사람과 함께, 지역과 함께 복원하고 펼쳐 나가려 합니다.

(자료: 행복농장 홈페이지(<http://happyhada.com/>), 2018년 5월 15일)

자료: 행복농장 홈페이지(<http://happyhada.com/>), 2018년 5월 15일.

협동조합인 행복농장에는 농장 직원이 아닌 사람도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행복농장의 주된 목적은 돌봄⁷⁾과 ‘관계의 회복’이라는 언표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목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돌봄과 재활을 중심 목표로 삼되, 여전히 농장이므로 원예 작물을 생산한다. 그런 활동들을 프로그램화하여 ‘자연구시프로그램’을 운영한다.⁷⁾ ‘자연구시프로그램’은 요양시설에서 혹은 흥성군 내에 자택에서 거주하며 생활하는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농업을 활용해 재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 기반을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둔다.

행복농장 운영에서는 농업생산과 돌봄·재활의 균형을 중시하고, ‘생산성 극대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을 함께 고려한다. 현재의 영농 규모에서 생산성 극대화를 추구한다면 2명분의 전일제 노동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자연구시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프로그램 참여자 2명당 농민 1명이 곁에서 보살펴야 한다. 그래서 동일한 품목을 생산하는 비슷한 규모의 농장과 비교할 때 농업생산성이 떨어지기 십상이다. 그리고 요양시설에서 거주하다가 자연구시프로그램을 거쳐 고용된 행복농장의 다른 직원의 노동력 수준은 숙련된 농업인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지만 행복농장은 ‘사회적 통합’이라는 나름의 목적을 지향하며 운영된다.

7) 행복농장이 설립된 2014년 이후 2016년까지 초기에는 자연구시프로그램 외에도 미혼모, 탈북가정 자녀, 청소년, 노숙자, 자살유가족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심리적 치유와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했다. 지금은 자연구시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다.

〈표 2-1〉 행복농장의 2016년 자연구시프로그램 개요

| 구분 | 교육대상 | 숙박 | 기간 | 교육내용 | 참여방법 | 인원 | 목표 |
|-----------------------|-------------|-------|--------|-------------------------|-----------------------------|--------|----------------|
| 1. 일일 자연구시 체험 프로그램 | 만성 정신 질환자 | 당일 체험 | 1회 체험 | 자연과 농업 활동 체험, 수확, 요리 | 복지관 또는 기관 소속의 그룹별 진행 | 10-15명 | 농업과 생활을 경험 |
| 2. 일일 자연구시 체험 프로그램 | 만성 정신 질환자 | | 1회/매주 | | | 10-15명 | 외부 생활을 경험하는 과정 |
| 3. 일반 자연구시 | 만성 정신 질환자 | 4박 5일 | 3회/1년 | 일상적인 농업 활동 참가 | 기관에 소속된 10명 선발 | | 사회 생활을 경험하는 과정 |
| 4. 일반 자연구시 심화과정 | 만성 정신 질환자 | 3주 | | 일상적인 농업 활동 참가 심화 과정 | 일반 자연구시 이수자 중 선발 | 2-4명 | 인턴 과정 준비 기간 |
| 일반 자연구시 심화과정 이수자 중 평가 | | | | | | | |
| 5. 자연구시 인턴 | 일반 자연구시 이수자 | | 3-6 개월 | 농장에 출퇴근 농업 활동과 지역 활동 참여 | 회원의 의지, 농장 평가, 전문가의 조언 후 가능 | 1-3명 | 평가를 거쳐서 고용을 목표 |

주: 5자연구시 프로그램: 복지관 또는 기관에 소속된 만성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체험과 기술을 통하여 사회 속에서 자립이 가능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자료: 행복농장 홈페이지(<http://happyhada.com>), 2018년 5월 15일.

2.1.2. 젊은협업농장

젊은협업농장도 장곡면 도산리에, 행복농장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 영농 규모는 비닐하우스 8동이다. 주요 생산 품목은 유기농 쌈채소다. 행복농장과 마찬가지로 설립 초기부터 사회적 목적을 설정한 곳이다. 그 핵심어는 ‘교육’, ‘교류’, ‘함께 살아가는 농촌’이다. 그 같은 지향을 선언한 젊은협업농장도 조직의 형식, 구성원의 농장 활동, 재무 구조 등의 측면에서 보통의 쌈채소 재배 농장과는 다른 특징이 드러난다.

〈참고 2-2〉 젊은협업농장 소개 글

젊은협업농장은?

농촌을 사랑하는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합니다. 귀농을 꿈꿨던 사람들이 힘을 모아 2011년 홍성군 장곡면에 모여 농사를 시작하였습니다. 3인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10인 내외의 다양한 사람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유기농 쌈채소를 중심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합니다.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퇴비와 유기농 자재를 사용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종류의 쌈채소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교류를 통해 지역과 더불어 살아가겠습니다. 신규 농업인에게는 유기농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 농업인과는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농촌을 만들고자 합니다. (자료: 젊은협업농장 홈페이지(<http://collabo-farm.com/about-young-collabo-farm/>), 2018년 5월 15일, 굵은 글씨는 필자의 강조.)

첫째, 조직의 형식 측면에서 젊은협업농장은 협동조합법인이다. 그리고 ‘지역에 필요한 청년인재를 육성’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 주로 장곡면과 홍동면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인 45명의 조합원이 출자한 협동조합이다. 그런데 조합원들은 대부분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용고 배당을 받지 않는다. 이들은 경제적 이윤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젊은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사회적 목표에 동의한 셈이다.

“사람이 많아지거나 능력이 올라가더라도 그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을 분화해나가는 방식으로 그리고 노동시간을 줄이고 지역활동이나 개인활동 시간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해간다. 농업생산을 중심으로 하지만 이를 통해 지역, 농업 교육 분야를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농업을 둘러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 내의 새로운 단체를 인큐베이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중략) … 협동조합은 직원을 두지 않고 조합원의 조합활동으로 운영하며, 이용고, 출자금에 의한 배당은 없고 생산에 참여하는 조합원에게 운영비를 제외한 이익금을 동등하게 배분한다. … (중략) … 조합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중이해당사자협동조합으로 설립을 한다. 총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정보의 전달 방법을 취하고, 생산활동참여조합원 중심으로 조합운영의 방향을 결정해 나간다. 이사회는 협업농장과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여 기본적인 철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정민철(2014).

둘째, 젊은협업농장도 행복농장과 마찬가지로 농업 조수입이나 순수익을 극대화하

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운영하지 않는다. 농업 생산은 농장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유지되지만 ‘교육’과 ‘교류’라는 목표를 따르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농업 생산에 집중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특징은 농장의 젊은이들의 일과에서 잘 나타난다.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농작업을 수행한다. 그리고 나서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는 강좌에 참여한다. 강좌는 ‘평민마을학교’라는 이름으로 열리는데, 매 요일마다 한두 개의 과목이 있어 각각의 강사가 진행한다. 젊은협업농장 구성원이 아닌 주민에게도 개방된 강좌다. ‘평민마을학교’ 소개글을 보면 젊은협업농장이 ‘교육’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2-3〉 ‘평민마을학교’ 강좌 안내 포스터 문구

원래 교육의 본질은 개인의 성장을 돕는 ‘조육’助育이면서 다양한 개인들로 구성되는 이웃공동체의 관계와 테두리를 깊고 건강하게 넓혀가는 ‘공육’共育입니다. 시대의 소리에 응답하는, ‘이촌위교’以村爲校(마을이 학교가 된다)의 평민지역학교는 교육의 장소를 온 마을에 열고, 모든 주민이 일과 생활의 필요에 따라 평생 종교, 사상, 생태, 농업, 복지, 지역, 문화 등 넓은 범위를 서로 공부하면서, 평생 배우고 일하고 협력하는 지역, 돈과 경쟁이 아닌 흠과 공동체의 가치를 한걸음씩 구체화시키는 지역을 평민들이 아래로부터 만들어가는 학교입니다. (자료: 2018년 평민마을학교 프로그램 소개 현수막)

물론, 젊은협업농장의 구성원들이 ‘평민마을학교’의 강좌를 통해서만 학습하는 것은 아니다. 일상의 농작업 시간이 가장 중요한 학습 시간일 터이다. 농사일을 배우는 것은 비공식적인, 그리고 교수자의 역할이 크지 않거나 아예 교수자가 없는 경험학습 experiential learning⁸⁾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청년들은 주어진 농작업이나 그 연장선상의 과업을 수행하다가 해결해야 할 문제에 부딪히면, 주변에 질문하여 문제 해결의 단서를 얻는다. 그 같은 대화의 형식으로 학습이 진행된다. 이러한 교육 및 학습이 젊은협업농장이 수행하는 기능 중 핵심을 이룬다. 농업 분야에 진입하려는 청년들이 자영농으로서 농촌에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비밀 언덕’이 되는 것이 젊은협업농장

8) 말 그대로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과정을 말한다. 정확하게는 “행함에 대한 성찰을 통한 학습”이라고 정의된다. 경험학습은 단순작업을 반복하는 숙련 학습의 경우처럼 수동적인 학습 방법이 아니다. 그보다는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 경험학습에 관한 기본적인 안내로는 Beard(2010)를 참고.

의 중요한 목표다. 그렇지만 젊은협업농장을 농업경영이나 영농기술을 전달하는 농업 교육기관이라고만 그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젊은협업농장의 활동은 단순히 기술만을 전달하는 데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농촌에서 농업에 진입하려는 청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4대 난점’이라는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김정섭, 2016). 첫째, 농사일이 버릇처럼 몸에 배도록 익혀야 하고, 둘째, 농촌의 사회적 관계망에 편입되어야 하며, 셋째, 농촌에 진입하는 초기 생활비 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 소득이 있어야 하며, 넷째, 농지 등의 영농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충분치는 않겠지만, 젊은협업농장은 앞에 언급한 네 종류 과제 가운데 마지막 것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모두에 도전한다. 단순히 농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젊은협업농장 구성원이 개인으로서 혹은 젊은협업농장이라는 단체로서 지역사회 안에서 참여하는 여러 활동을 매개로 청년 신규취농자에게 사회 자본을 형성하고자 노력한다. 경제 자본이 부족한 청년 신규취농자에게 지역사회 내의 인간관계망은 그 자체로 경제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회자본이다.

셋째, 젊은협업농장이 지향하는 또 다른 목표는 ‘지역 농업인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농촌 만들기’라는 말로 표현된다. 그래서 젊은협업농장의 청년들은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한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실천하기 어려운 입장인 고령 농가에서 쓰레기를 모아 와 분류하고 배출하는 일상적인 일부터,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경우 새로운 활동 조직을 만드는 지역사회 조직가community organizer의 역할까지 여러 활동을 수행한다. 한 조직만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큰 규모의 도농 교류 행사를 여러 조직이나 주민들이 함께 기획하고 실행할 때에도 참여한다.

넷째, 재무 구조와 운영 측면에서도 특징이 있다. 젊은협업농장은 시장에서 화폐를 획득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농장에서 가장 중요한 운영 목적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다. 그래서 젊은협업농장의 농업 생산성은 다른 각도에서 조명된다. 농업 생산성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 농장이 유지해야 할 균형점 지표다. 2017년 젊은협업농장의 총수입은 1억 4,122만 원이었다. 지출은 1억 4,381만 원이었다. 경미한 수준의 적자였다. 사업 확장 계획이 없는 상태라면, 불필요하게 잉여를 남길 이유가 없는 게 협동조합의 회계 원리다. 그래서 수익이 적거나 없어도 문제가 될 상황은 아

니다. 하지만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더라도 농장을 계속 운영하려면 일정 수준의 농업 조수입을 유지해야 한다. 이때 어느 정도에서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젊은협업농장의 전체 매출 중에서 농산물 판매로 얻은 농업 수입의 비율은 67.6%였다. 그리고 외부에서 찾아오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에 따른 대가나 공익재단 및 공공기관의 지원금 등으로 얻은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28.3%였다. 그리고 차임금이 2.8%의 비율이었다. 농업 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쌈채소는 비닐하우스 8동에서 생산된다. 비닐하우스 1동당 1,193만 원의 매출이 일어난 셈이다. 비슷한 면적의 비닐하우스에서 같은 품목을 생산해도, 영농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생산량에는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다. 지역에 출하 시스템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렇지만 젊은협업농장이 있는 장곡면 일대에서 쌈채소를 유기농으로 재배하면 비닐하우스 1동당 1,500만 원쯤의 매출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를 고려하면, 통상적인 수준보다 젊은협업농장의 생산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셈이다.⁹⁾ 젊은협업농장에서 일하는 생산자 대부분은 경력 1~2년밖에 되지 않은, 일종의 ‘교육생’이다. 그리고 오후 4시 이후에는 농작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을 감안하면 젊은협업농장의 농업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까닭을 이해할 수 있다. 요점은, ‘생산성 저위’가 강제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자발적 선택의 결과라는 점이다. 젊은협업농장은 생산성 극대화라는 ‘경쟁력 코드’를 폐기하고 ‘농업노동 시간과 학습 시간의 균형’이라는 원칙을 재코드화한 셈이다.

9) 국가승인통계로 보고되는 농촌진흥청의 『2016년 농축산물소득자료집』에 따르면, 시설상추의 10a당(약 300평) 총수입은 전국 평균 약 933만 원이다. 통상적인 비닐하우스 1동이 200~250평 크기라는 점을 고려하고, 젊은협업농장에서 생산하는 쌈채소가 상추 외에 다른 품목들이 다채롭게 편성되어 있고 유기농산물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비교해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농촌진흥청의 통계치보다는 월등히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소득자료에서 시설상추 등의 총수입이 실제보다 낮게 집계된 것일 수 있다는 의문이 든다. 따라서 생산성 비교의 준거를 통계치에 두지 않고, 이웃한 농가들의 통설에 맞추는 게 적절하다. 젊은협업농장의 실무 책임자인 상임이사 정민철은 총수입만을 놓고 보았을 때, 생산성을 극대화하면 비닐하우스 1동에서 1500만 원의 농업조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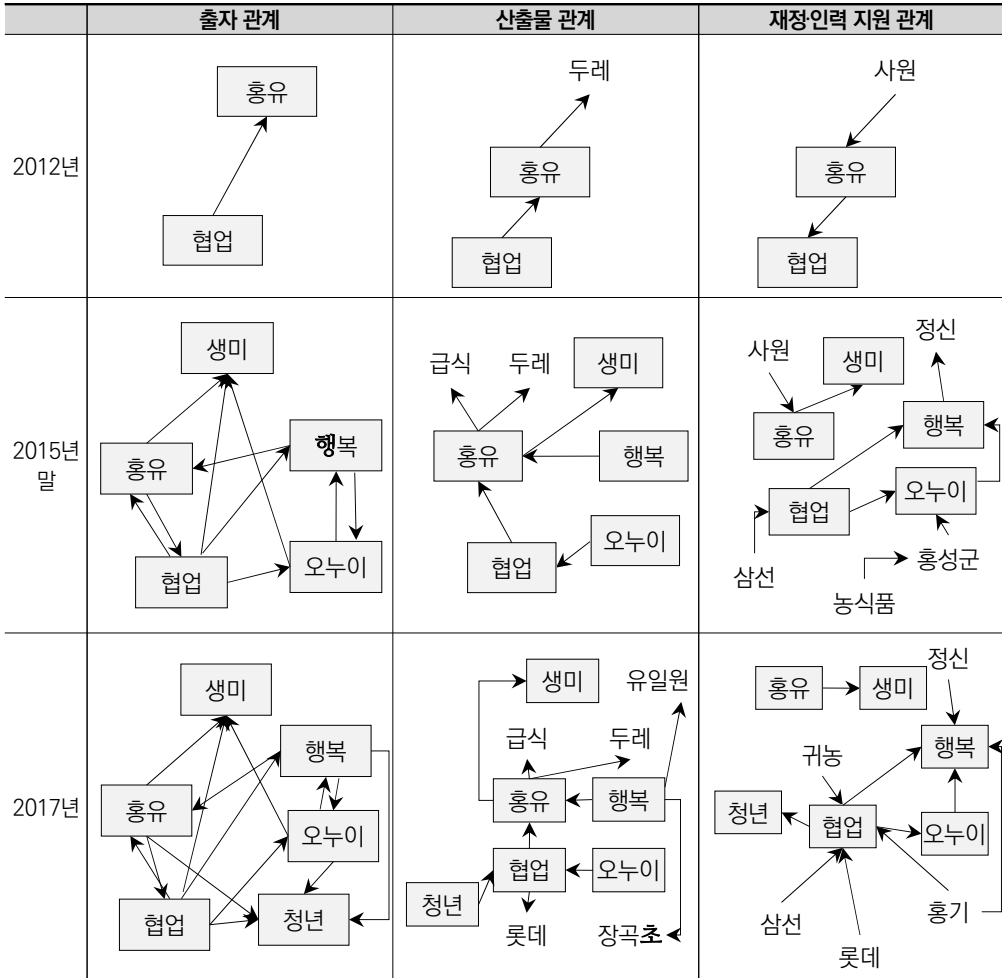
2.1.3. 지역공동체의 변화: 다층적 사회적 경제 연결망 형성

사회적 농장이 ‘사회적’일 수 있는 이유는 그 농장이 원자화된^{atomized} 개별 주체로 운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행복농장이나 젊은협업농장 같은 사회적 농장은 언제나 사회 연결망 안에서 활동한다. 그러면서 스스로 배태된 사회 연결망을 두텁게 다층적으로 재구성한다. 젊은협업농장과 행복농장의 활동은 장곡면 지역사회에서 협력의 연결망을 풍부하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 같은 다층적 연결망의 여러 층위 중 살펴볼 첫 번째는 협동 조직들의 상호 출자 연결망이다. 젊은협업농장이 장곡면에 자리를 잡기 몇 해 전에 흥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이하, ‘흥유’로 약칭)이 조직되었다. 젊은협업농장은 창립할 때부터 ‘흥유’로부터 농장 인프라를 형성하는 데 크게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젊은협업농장이 설립된 후 ‘흥유’에 출자하여 조합원이 되었다. 이후 행복농장을 설립할 때에는 젊은협업농장과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의 대표자(이하, ‘오누이’로 약칭)가 출자하였다. 행복농장은 다시 ‘흥유’와 ‘오누이’에 출자하였다. 그즈음에 장곡면에서는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협동조합 생미식당(이하, ‘생미’로 약칭)을 설립하는 일이 있었다. 여기에 ‘흥유’, 젊은협업농장, ‘오누이’가 조합원으로 참여하였다.

물론, 각각의 협동조합 및 영농조합법인마다 법인이 아닌 개인 조합원들도 다수가 참여한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협동조합 등 조직들의 상호 출자 연결망을 형성하면, 개별 조직들이 완전히 고립된 채 각기 개인 구성원들에 의해서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정보가 공유된다. 예를 들어, 2018년 4월에는 몇몇 협동 조직들이 합동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젊은협업농장, 행복농장,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이 이 합동정기총회에 참여하였다. 참석자 모두에게 2017년 결산자료와 2018년 예산자료를 공개하였다. 그리고 전년도 사업 내용과 당해 사업계획을 공개하였다. 개별 조직의 자료나 정보를 공유하는 일은 지역사회에서 개인 및 조직들 간의 의사소통 구조를 견고하게 만들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촉진한다.

〈그림 2-3〉 장곡면 일대의 지역사회 조직 협력 연결망 구조



주: 급식(홍성군학교급식지원센터), 귀농(서울 소재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농식품(농림축산식품부), 두레(두레생협), 롯데(롯데슈퍼), 사원(사회적기업 진흥원), 삼선(삼선재단), 생미(생미식당), 오누이(오누이권역협동조합), 유일(홍성군 소재 장애인 요양시설 유일원), 장곡(장곡초등학교), 정신(충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청년(청년농부영농조합법인), 흥유(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협업(젊은협업농장), 흥기(홍성군농업기술센터), 홍성군(홍성군청), 행복(행복농장).

자료: 김정섭 외(2019a: 50)의 내용을 수정.

두 번째 층위는 산출물 관계 연결망이다. 주요 산출물은 농산물이다. 다만, 행복농장이 돌봄 및 시설(주방) 이용 서비스를,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은 시설(강당, 사무실, 숙박시설 등) 이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업생산 조직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은 상당부분 ‘흥유’로 집결된다. ‘흥유’는 홍성군학교급식지원센터와 두레생협연합회에 그 농

산물을 판매한다. 모두 유기농산물이다. 품질이 차별화되어 있다. 홍성군학교급식지원센터가 최종 매입자 중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곳과의 거래는 제도에 의해 일정 부분 보장되어 있다. 두레생협연합회도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출하처다. 젊은 협업농장과 행복농장 둘 다 농산물의 절반 이상을 ‘홍유’를 경유하여 출하한다. 공공 부문의 지원이 적고, 시민사회의 후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 농업 실천이 지속하기가 어려운 조건이라는 점은 유럽연합의 몇몇 국가들과는 다른 한국의 특징이다. 젊은협업농장과 행복농장이 그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계속해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할 수 있었던 데에는 ‘판로의 안정성’이 있었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홍유’가 중심이 되어 형성된 산출물 관계 연결망이 판로의 안정성을 보장한 셈이다. 이는 젊은협업농장과 행복농장, 두 협동조합이 ‘홍유’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조합원이기 때문에 ‘홍유’에게는 권리이자 의무다. 이런 식으로 산출물 연결망이 형성되면서, 장곡면 일대에서 홍유의 판매 활동은 ‘둥지형 시장(nested market)’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어리둥절할 정도로 다양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졌다. 이들 시장을 두고 짧은 먹거리 사슬, 농민 시장, 근린 시장, 대안 먹거리 경로 등이라고 불러왔다. 이들 시장의 공통점은 어떤 식으로든 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간격을 잇고, 대형 먹거리 시장을 지배하는 필수통과지점(obligatory passage point)을 우회한다는 것이다. 이들 새롭게 출현하는 시장은 새들의 ‘둥지’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 둥지형 시장은 일반적인 먹거리 시장 내부에 자리를 잡지만, 일반 먹거리 시장과는 차별화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유하는 규범 틀 안에 둥지를 틀고, 그 규범 틀의 지지를 받는다. 둘째, 먹거리 제국의 통제 밖에 있는 경로를 따라 먹거리가 흘러갈 수 있게 해 주는 차별화된 인프라 구조 안에 둥지를 틀고, 그로부터 지지를 받는다. 셋째, 무엇보다, 둥지형 시장은 공급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 품질, 기원, 생산방법 그리고/또는 사용가능성 측면에서 독특한 특성이 있다.”(Ploeg, 2018: 207).

셋째는 재정 및 인력 관계의 상호 지원 연결망이다. 공공 부문으로부터의 재정 지원이 이들 협동 조직의 연결망에 유입된다. 이때 지원을 받은 한 조직이 그 자금을 독자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협동 조직들 간의 역할 분담과 더불어 연결망 구조 안에서 자금이

분배된다. 특히 최근에는 젊은협업농장이 지원 자금의 분배 및 협동사업 기획 측면에서 연결망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 한 조직이 감당하기에 벅찬 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할 때에는 다른 조직에 인력을 보내 돕는 인적 자원 협력의 연결망도 활발하게 작동한다.

이러한 협력 연결망의 구조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은 ‘조직’을 기본 단위로 한다. 조직 수준이 아니라 장곡면 일대에서 주민 개인들의 협력 연결망도 아주 다채롭게 형성되어 있다. 그런 개인들의 협력도 장곡면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간단하게 몇 가지를 살펴본다.

첫째, 생미식당이 폐업한 이후¹⁰⁾ ‘홍유’, 행복농장, 젊은협업농장, ‘오누이’ 등에서 상근하는 이들의 점심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장곡면은 인구 3,000명 남짓한 농촌이다. 인구가 줄어 상권이 크게 쇠퇴한 곳이다. 면사무소가 있는 중심지에는 음식점이 2곳 있다. 그러나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이 20명을 넘지 못하는 비좁은 음식점이다. 그중 한 곳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지역의 협동조직들과 주민들이 출자해 설립한 생미식당 협동조합이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그런데 생미식당이 폐업하자 사람들의 점심식사가 중요한 문제로 다시 등장한 것이다. 행복농장이 보유한 부엌 공간을 개선해 좌석 수를 늘렸다. 그리고 도산리의 주민이 주도하여 ‘식당 아닌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에 이곳에 와서 식사를 해결하는 인원은 매일 20명을 넘는다. 외부 방문객이 오는 경우 50명을 넘길 때도 있다. 단지 점심식사를 해결하고자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별 일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인구가 급감한 농촌 지역에서는 음식점이 사라진 것이 중대한 문제로 부각된다. 그럼에도, 주민들이 협력해 문제 해결에 나선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둘째, 이곳 장곡면 일대는 유기농업이 활발히 실천되는 곳인데, 최근에는 사회적 농업까지 더하여 타지에서 견학, 체험, 교육, 연수 등의 목적으로 장곡면을 찾아오는 방문자가 아주 많다. 2017년 한 해 동안 그 같은 목적으로 젊은협업농장을 찾아온 방문자만 해도 2895명이나 된다. 수십 명 이상의 인원이 방문하면, 젊은협업농장 단독으로는 응대하기가 어려워진다. 농업체험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수십 명이 찾아오면, 젊

10) 만 5년 동안 운영된 협동조합 생미식당은 2018년 2월 말에 해산하였다. 식당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해왔는데, 5년 동안의 임대 기간이 끝나자 재계약 조건으로 건물주가 임대료를 계약 초기(2013년)에 비해 40% 인상된 금액을 요구하였다. 경영수지를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산하였다.

은협업농장과 협력하는 농민 개인의 농장이나 인근의 법인 농장에 분산 배치한다. 행복농장이 자연구시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때에도 규모가 작은 행복농장이 단독으로는 응대하기 어려워, 마찬가지로 분산 배치하게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협력하는 농민들 중 상당수가 젊은협업농장을 거쳐서 지역에 정착한 청년 농민들이다.

셋째, 지역사회에 형성되는 협력 연결망은 장곡면의 다른 문제에도 역할을 수행한다. 장곡면에 하나밖에 없는 작은 초등학교인 장곡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2년 동안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이 진행되어 왔다. 장곡초등학교 전교생 수는 47명이다. 폐교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학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의 실천들이 시작되었다. 학교 밖 수업을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구성해 진행한다. 원예, 목공, 악기, 사진 등을 주제로 여러 과목을 편성하였고, 주민 여럿이 참여해 각기 과목을 맡아 '장곡마을학교 교사'로 활동한다. 그런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할 때에도 젊은협업농장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개인들의 연결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필요를 충족하려는 실천에 조직이든 개인이든 여러 주체가 협력하고 참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은 '협동의 경험'에서 시작된다. 그러한 협동 문화의 기원이나 내력을 상세히 설명하려면 별도의 분석이 있어야 할 테다. 분명한 것은, 개인의 협력 활동 중 상당수는 농업생산 활동과 지역사회 활동을 결합하는 다기능 농업 실천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농업이 그 대표적인 예다. 그 같은 실천이 기획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집단 수준의 자원 동원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점 또한 중요하다.

2.2. 아일랜드 케리 카운티

2.2.1. 아일랜드의 사회적 농업 지원 체계와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적 농업 사례

아일랜드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 사회적 농업의 중간 주자에 속한다.¹¹⁾ 하지만 사회

11) 유럽의 맥락에서 보자면 사회적 농업은 돌봄농업, 건강을 위한 농업farming for health, 녹색돌봄green

적 농업의 ‘사회적’ 측면, 특히 지역공동체의 사회자본을 중시하는 스타일로 사회적 농업 실천을 전개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의 조력 기구들이 정부와 긴밀한 파트너십하에 사회적 농업 실천에 조력하고 있어 눈에 띈다.

아일랜드에서 사회적 농장은 대체로 전문화된 농장도 치료농장(treatment farm)도 아니다(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곳에서는 대체로 전문화된 치료농장이나 사회복지시설(주간보호센터, 보호작업장)의 형태로 사회적 농장들이 자리를 잡았다).

아일랜드의 사회적 농장들은 의학적 치료 환경이라고는 볼 수 없는 평범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일하는 농장’이다. 대부분 중소 규모의 가족농이며 복합영농을 하는데, 날이 갈수록 다양한 유형의 농장들이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아주 작은 규모의 원예 농장에서부터 십만 평이 넘는 면적의 농경지를 지닌 대형 농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승마, 채소원예, 화훼, 산림 경영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양하게 전문화된 농장들도 일부 있다.

그런 배경에서, 아일랜드의 사회적 농업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농장에 배치하여 특별히 초점을 맞춘 성과를 얻을 수 있게 지원한다. 이때 지역의 사람들, 장소, 이러저러한 활동들, 지역공동체 등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역 자산을 활용하여 사회적 농업 참여자 스스로 선택한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농장이 지닌 자연환경 안에서 참여자가 농민이나 그 농가 구성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활동에 기초하는데,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하나는 소중한 의미 있는 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적 연결과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점이다. 그만큼 아일랜드에서 사회적 농업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자 실천이다. 그러나 사회적 농장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해지고 있다. 국가 및 광역지역 수준의 관계자 연결망도 확장되고 공고해지고 있다.

care 등 여러 종류의 명칭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된 유럽 국가들마다 그 발전 수준은 상당히 차이가 난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은 사회적 농업 발전 상위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간주된다. 프랑스, 핀란드, 독일, 영국 같은 나라들이 중위 수준이며, 아일랜드는 초기 단계와 중위 수준의 중간쯤에 위치한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 2-4〉 사회적 농업-아일랜드(Social Farming Ireland, SoFI)

SoFI는 아일랜드 정부가 지정한 '국가 사회적 농업 사무국'이다. 농식품해양부(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and the Marine, DAFM)로부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기로 계약하여 일하고 있다. CEDRA¹²⁾(Commission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Rural Affairs)의 '혁신발전기금'으로 운영되며, 국가 수준에서 사회적 농업을 발전시키는 임무를 수행한다. '레이트림통합발전회사(Leitrim Integrated Development Company, LIDC)'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국가 수준의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발전과 지역개발 담당 공무원들이 속한 지역의 파트너 조직들과 함께 근거-기반 연구 과제를 지원한다. SoFI는 국가 수준에서 사회적 농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사업들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사회적 농업에 관한 정보 확산, 사회적 농업을 실천할 농업인 교육훈련 및 육성, 보건·사회적 돌봄·기타 서비스 기관들과 협력하여 사회적 농장 활동을 활성화하기, 근거-기반 연구 활동, 정책 개발 등.

SoFI의 활동과 발전에는 두 개의 핵심 위원회가 관여한다. 하나는 '국가조정위원회'인데, SoFI 지원 사무국 팀의 국가 프로젝트 관리자, 국가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파트너십을 형성한 지역발전회사LDC 대표자, 각 지역의 지역개발 담당 관료, 학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격월로 모여 포럼을 운영한다. 두번째 위원회는 '국가자문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연 2회 소집되며 보다 광범위한 전문적 정보를 수집하고 논의한다. LIDC, 더블린 대학, 파트너십을 형성한 지역발전회사, 서비스 공급자, 참여자, 사회적 농장의 농업인, 국제 수준의 사회적 농업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아일랜드에서 사회적 농업 실천이 최근 들어 발전하게 된 것은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SI 정책'과 '지역사회/농촌 발전Community/Rural Development, CD 정책'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발전회사Local Development Companies¹³⁾의 직원들 다수가 사회적 농업 정책을 준비하는 측으로부터의 요청에 충실하게 응답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포용에 대한 강조는 과거의 정책 프로그램(특히, 지역발전 및 사회적 포용 프로그램Local Development Social Inclusion Programme, LDSIP)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 정책에서는 중소 농가들이 공식적인 대상이었다.

12) 아일랜드의 환경·지역공동체·지방정부부 장관이 주관하는 위원회다. 아일랜드 농촌에서 고용 창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 창설한 위원회다.

13) 일종의 사회적 기업으로서 한국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같은 중간지원조직들이 수행하는 것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

〈참고 2-5〉 사회적 포용 및 지역사회 활성화 프로그램(SICAP)

SICAP(2018-2022)은 불리한 여건에 있는 개인들, 지역공동체 조직, 공공기관 등의 주체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지방 수준에서 서로 관여하는 구조를 갖추으로써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도록 자금을 지원한다. 아일랜드 정부가 농촌·지역사회발전부(Department of Rural and Community Development, DRCD)를 통해 유럽연합의 사회기금으로 운영되는 ‘고용·포용·학습 프로그램’의 자금을 지원받아 수행한다. 지방에서 활동하는 33개의 로컬지역사회발전위원회(Local Community Development Committees, LCDCs)가 SICAP을 감독한다. SICAP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실행 기관이라고도 하는 지역발전회사들을 통해 추진된다. 이들은 주변화된 지역공동체들과 함께 일하며, 다양한 목표 집단 및 서비스 제공자들과 함께 일한다. 이때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개발 접근방법을 취한다. SICAP을 불리한 여건에 있는 지역공동체 및 개인을 지원한다. 불리한 여건에 있는 개인이라 함은 실업자, 한계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장애인,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등을 말한다.

사회적 농업과 관련해서는, SICAP의 ‘목표 2’가 깊은 연관을 지닌다. 이 목표는 ‘평생학습 및 노동시장 지원을 통해 불리한 여건에 있는 개인들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거나 직업기술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일련의 지원 프로그램이 전형적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된 제1차 SICAP에서는 약 11만 명의 개인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기반 지원 활동을 실행하였다. SICAP 안에는 여러 개의 주제 영역이 있는데, 사회적 농업은 2차 SICAP에서 새로운 고객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결과물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아일랜드 사회적 농업의 특별한 발전과 관심 증대 이면에는, 여러 개의 정부 정책과 제도들이 서로 연계되면서 변화한 것이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런 정책 및 제도 변화는 보건, 사회적 돌봄, 사회적 포용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을 더욱 촉진하는 것이었다. 그런 방향 변화의 예로는 장애인 사회복지 모델의 등장, 정신보건 정책 및 지역사회 안에서의 회복을 위한 실천에 대한 강조, 정신적 웰빙에 관한 보다 총체적인 접근방법 강조, 대부분의 사회적 포용 정책에서 개인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두는 접근방법을 채택하는 경우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현장에서는, 특히 아일랜드 공화국의 접경 지대에서 주로, 사회적 농업 활동이 최근 2년 동안 급속하게 늘어났다. SoFI를 통해 전국 11개의 카운티에서 활동하는 28개 농장 120명의 참여자, 총 1700일 동안의 참여가 있었다. 2018년에는 22개 카운티, 약 300명의 참여자, 2,600일의 기록을 남길 것으로 예상되었다.

현재 활동적인 사회적 농업 실천 주체가 되려고 여러 단계의 학습 과정을 밟으면서 훈련 프로그램을 받는 농민이 약 60명이며, 훈련을 받고 실제로 활동하는 농민도 거의 60명에 달한다. 아일랜드의 카운티는 모두 26개인데, 그중 25개의 카운티에 SoFI를 통해 훈련을 받은 사회적 농업인이 1명 이상 있으며, 서비스 측면에서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활용 가능한 농장을 늘리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사회적 농업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일하는 사회서비스 기관 또는 단체의 수가 늘고 그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현재는 각종 자선단체나 재활돌봄 기관, 지역의 지적 장애인 지원 기관, 정신보건 관련 기관, 캠프힐 공동체, 보건복지부 장애인 담당 부서, 아일랜드 다운증후군 단체, 지역발전회사, 사회통합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SICAP 수행 기관 등이 관계를 맺고 있다.

SoFI의 활동과 노력을 통해 약 7만 5,000유로의 자금이 조성되었고, 여기에 다양한 기관들이 대응투자(matching)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아일랜드 보건기금으로부터 4만 유로의 자금이 지원되었고, SICAP 프로그램으로부터 7,000유로의 자금이 사회적 농장에 직접 전달되었다.

아일랜드에서 발전해 온 사회적 농업 모델은 여러 개의 핵심 가치에 바탕을 둔다. 근본적으로는 개인-중심적이고 개별화된 사회적 농업을 지향한다. 이는 참여자들이 평범한 가족농 농장에서 시간을 보냄으로써 자신의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기회와 선택지를 제공하는 데 크게 중점을 둔다.

참여자들에게 생활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결과를 다양하게 달성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는 점에서 진보적인 사회적 농업을 지향한다. 타인 및 자연환경과의 자연스러운 연결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아일랜드의 모든 카운티에서 사회적 농업이 발전하면서, 지금은 분산된 전문기관이나 의료 기관 환경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포용의 접근가능한 실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지지를 보장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SoFI가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의 바탕에는 엄격한 거버넌스 체계와 과정이 있어서 참여자, 옹호자, 사회서비스 당국, 법정 관리 당국 등에게 일정한 보증을 제공한다. 사회적 농장에 참여자가 배치되어 경험하는 것들이 소중하고, 즐겁고, 안전하다는 점을 보증한다.

2.2.2.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적 농업 시범 프로젝트 _Kerry Social Farming

아일랜드의 케리 카운티 인구는 약 15만 명이다. 2013년에 장애인 가족, 농업인, 복지서비스 제공자, 지역사회 개발 조직community development organization, 그리고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케리 사회적 농업 시범 프로젝트'를 기획할 작업반을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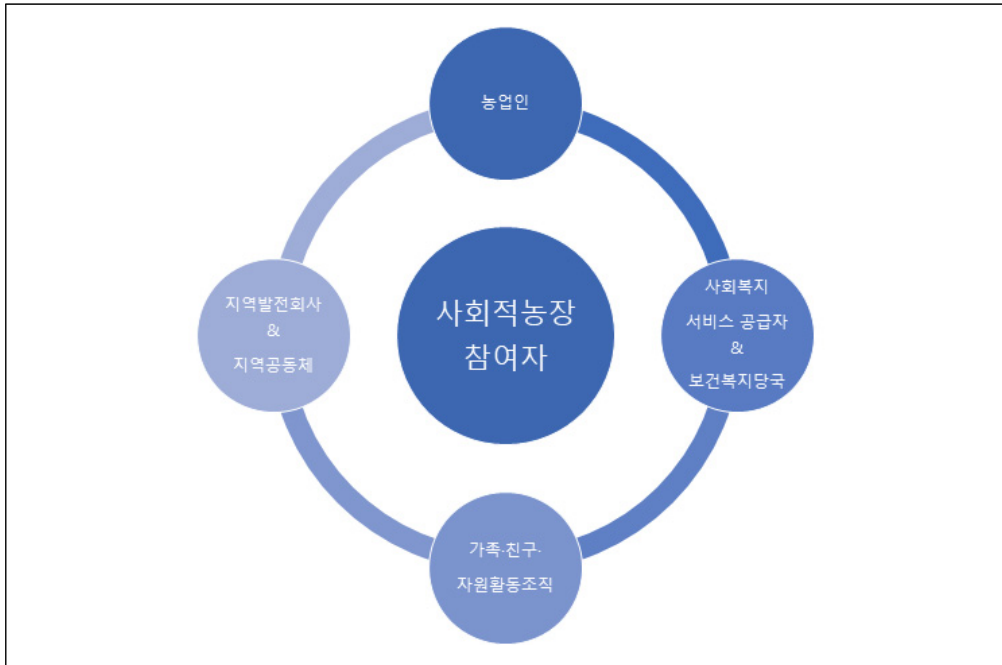
6개월 동안 계획을 수립하면서, 작업반 구성원들은 유럽연합이 주관한 타 지역에서 열리는 사회적 농업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사회적 농장들을 찾아가 여러 종류의 모델을 학습했다. 이는 케리 카운티의 상황에 적합한 스타일을 계획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케리 사회적 농업은 자원봉사에 기초하며 지역공동체에 바탕을 둔 서비스로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영농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적 포용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케리 사회적 농업의 비전은 장애인과 함께 지역공동체 안에서 연결망을 형성하고, 보다 더 큰 포용을 이루며,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안에 돌봄 서비스 제공자, 장애인, 지역사회 주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중간지원조직), 중앙 및 지방 정부, 사업체들, 농민 조직, 농가들 등이 협업하여 케리 카운티에서 사회적 농업을 발전시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삼는다.

이 같은 계획하에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 내용은 장애인들이 지역의 일상적인 환경에서 보통 사람들(농민)의 실제 삶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같은 활동을 돕기 위한 외곽의 지원 연결망을 <그림 2-4>에서 보는 것처럼 구성하였다.

카운티 내에서 30여 명의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적 농업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고, 이들을 맞이하여 영농활동을 함께할 농가 11가구가 자원하였다. 참여자 개인의 욕구나 상황에 따라, 각자 매칭된 농가에 주 1~5회 방문하여 농업을 배우고, 농작업에 가능한 한 참여하였다. 즉, 농가마다 1~3명의 장애인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셈이다.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3년 차인 2017년에는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지원금(인건비)을 받아 상임 사회적 농업 퍼실리테이터를 고용하였다.

〈그림 2-4〉 케리 사회적 농업 프로젝트의 협력 연결망 구조



자료: Crowley *et al.*(2017: 2).

참여자가 사회적 농장에 처음 올 때에는 사회복지 기관의 지원 활동가가 동반하는데, 지원활동가는 참여자와 농업인 곁에서 돌봄 전문가로서 농업인에게 돌봄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등을 알려준다. 가령,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과 함께 작업하고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관해 조언한다. 참여자가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학습 경험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돕는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지원활동가의 도움 없이 사회적 농장을 방문하지만, 직무(농작업)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다.

케리 사회적 농업 시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아일랜드 정부의 국고 보조를 받은 연구진이 3년간에 걸쳐 면밀하게 관찰하고 조사하고 분석하는 평가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평가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주요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참여자에 대한 투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여자 개인의 욕구에 더욱 더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가령, 참여자가 어느 사회적 농장으로 갈 것인지 또는 가지 않을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참여자 개인의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사회복지 부문의 자금 지원을 개인예산제 형태로 전환한

다면, 개인의 욕구를 더욱 배려하는 방식의 접근방법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적 농장의 농업인과 참여자 모두에게 교육훈련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 이는 농업인과 참여자 모두가 요청한 사항이다. 농업인들은 대체로 처음부터 네덜란드나 노르웨이 같은 곳에 견학을 가서 학습한 경험이 있기는 했지만, 더 많은 학습욕구를 지니고 있었다. 시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남부 케리 카운티 마을만들기지원센터SKDP가 주관하는 교육훈련과 안내를 받았고, 지원활동가들이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농업인들은 실행학습learning by doing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모니터링과 평가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참여자가 농장에서 수행한 활동과 성취와 진보를 기록으로 남기는 임무는 농업인의 몫이다. 농업인들은 그런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가 지지받고 계속 수행되게 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에 보다 개선된 방식의 농장활동 기록 양식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

참여자의 활동 내용과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농작업뿐만 아니라 장보러 가기, 로컬푸드 매장에서 일하기 등의 활동이 제안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사회적 농업 활동은 지역공동체 내부로 조금 더 알려지고 확산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과 농장활동 참여의 규칙을 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참여자와 사회적 농장의 농업인에 대한 급여 지급 방도를 찾아야 한다. 이로써 자원봉사 모델에 기초한 케리 사회적 농업 프로젝트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가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 지역발전회사의 핵심 역할이 확인되었다. 사회적 농업과 지역공동체 그리고 농촌 발전 사이의 긍정적 연관을 전제로, 사회적 농업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에서 계속 실행되게 하려면 LDC의 역할이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고 제안되었다.

추가적이고 지속가능한 자금 지원을 보장해야 하며, 과도한 규제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SoFI와 지방의회로부터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케리 사회적 농업 퍼실리테이터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 프로젝트에 상근하는 퍼실리테이터의 핵심 역할이 부각되었다. 퍼실리테이터는 2017년 초에 새롭게 고용된 인물이고, 새로운 지위였다. 사회적 농장의 농업인은 특히 숙련되고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퍼실리테이터가 여러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줄 수 있어서 소중한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직위의 고용은 12개월 주기로 계약되는 형식

이어서, 직무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퍼실리테이터 자신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개선안이나 발전 방안을 고민할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3. 지역공동체-기반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이탈리아의 사회적 농업¹⁴⁾

2.3.1. 개요

사회적 포용과 지역발전의 수단으로서 사회적 농업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성장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이탈리아다.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농업은 1970년대에 기원했다. 이른바 ‘68혁명’과 여타의 지역공동체 기반 운동에 토대를 두고 시작되었다.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관통하면서 이탈리아 여러 지역에서 진행된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폐쇄 운동이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농업이 출현하는 과정과 깊은 관계가 있다. 정신과 의사 프랑코 바잘리아(F. Bagnalia)가 주도했던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폐쇄 사례들에서는 의료계 인사들과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쳐 시설을 나온 정신질환자들의 생업, 주간활동,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시작했는데, 영농을 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들도 만들어졌다.¹⁵⁾ 이것이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농업의 기원이라 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돌봄 체계의 일종으로 신뢰받는다. 주로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조직들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렇지만 농업인 개인이 사회적 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탈리아의 사회적 농업에는 고용을 지향하는 노동통합형 사회적 농업, 아동 돌봄 및 교육훈련을 지향하는 사회적 농업으로 크게 두 종류의 하위 분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용을 지향하는 사회적 농업은 다양한 문제나 장애(예: 중증이 아닌 신체장애, 정신건강상의 어려움, 학습장애,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사람 등)를 지닌 특정한 사람들

14) 이 절의 내용은 김정섭 외(2017)에 소개한 이탈리아의 사회적 농업 사례를 보완 서술한 것임을 밝혀둔다.

15) 그 당시 이탈리아의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폐쇄 운동에 대한 개관으로는 존 풋(2019)을 참고하였다.

또는 취약계층(예: 장기 실업자, 출소자, 약물중독자 등)을 대상으로 농장에서 노동통합과 사회적 포용을 추구한다. 이들은 원예, 포도 및 올리브 재배, 가축 사육, 농식품 가공, 농산물 직판, 농장 레스토랑 등의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종사한다. 이런 식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이들이 자신의 역량과 기술을 향상하고, 사회적 일상생활을 개선하며 사회와 노동시장으로 재통합될 수 있는 대안적 실천을 경험하게 된다.

아동 돌봄 및 교육훈련을 지향하는 사회적 농업에는 아동이나 학생이 농장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영양을 얻고 환경 교육을 받게 하는 목적의 교육이나 유연한 돌봄 활동이 포함된다. 이른바 이들 ‘교육농장’은 최근 수년 사이에 상당히 늘어났으며 사회복지체계에도 유의미하게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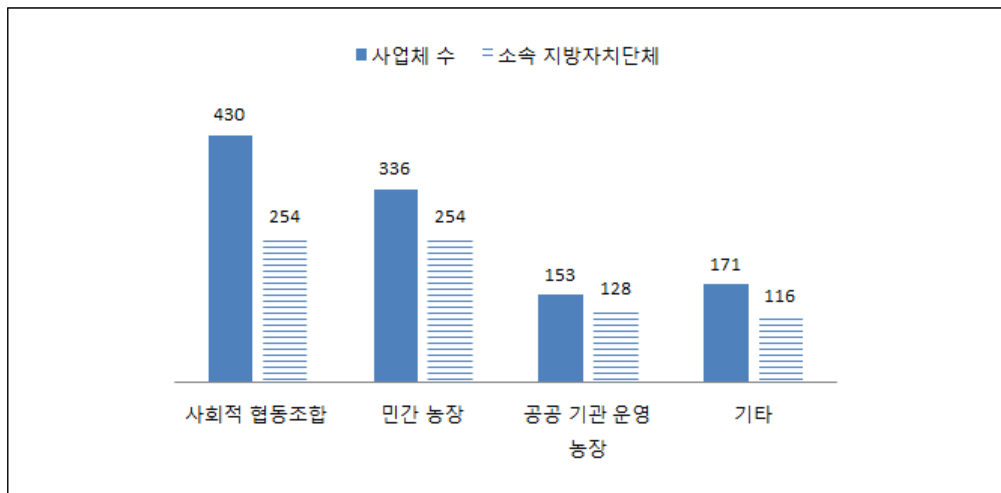
이탈리아에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가 함께 모이는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가 지역 공동체 기반으로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 네트워크는 마케팅의 핵심 요소인데, 농장이 자신의 특별한 실천을 소개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 수준에서도 사회적 농업 포럼이 있어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이탈리아 정부는 전통적인 복지국가 개념을 탈피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공공 서비스 제공의 기본 방향을 전환하였다. 1978년 이후부터 이미 많은 지역사회 조직이 주 정부, 꼬뮤네 등의 지역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대부분 협동조합 형태로 지역사회 안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정부는 기존의 민관 협력 관계를 체계적으로 재편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조직의 지위와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려고 1991년에 ‘사회적 협동조합 법’을 제정하였다. 이때부터 많은 지역사회 조직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등록하고, 지역 공공기관과 공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법’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두 종류로 구분한다. 돌봄과 교육 서비스(아동 돌봄, 재가 복지, 주간보호, 요양 시설 등)를 제공하는 A유형이 있다. 그리고 농업·제조업·상업·서비스업 등 각종 경제사업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고 노동 통합을 지원하는 B유형이 있다. B유형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경관 및 공공시설 관리 등의 공공 일자리에도 우선권을 가지고 참여한다. A유형의 사회적 협동조합에는 서비스 수혜자(이용자), 돌봄 및 교육 전문가 직원, 자원봉사자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한다. B유형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일반 직원, 사회적 약자이면서 조합원인 직원, 자원

봉사자,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다. B유형은 전체 조합원의 30% 이상이 사회적 약자여야 한다.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50%를 넘을 수 없다. A유형과 B유형이 혼합된 사회적 협동조합도 많다. 2~3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역사회 안에서 협력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그림 2-5〉 이탈리아의 운영 조직 유형별 사회적 농장 현황(2015년 기준)



자료: Mipaaf(2015), 김정섭 외(2017: 28)에서 재인용.

운영 주체와 활동에 따라 이탈리아의 사회적 농업 실천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A유형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역의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어 기관에서 관리하는 돌봄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주로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농업 자원을 활용해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농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의 다른 농장과 협력한다.

둘째는 B유형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민간 농장이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다.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지정한 직업 재활치료 대상자가 B유형 사회적 협동조합에 속한 농장이나 민간 농장의 프로그램에 자발적 동의하에 참여해 일한다.

셋째는 B유형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민간 농장이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다. 유럽연합에서 정책 사업으로 지원하기도 하는 형태다.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대상자를 지정하는데, 그렇게 지정된 교육생은 최대 2년 동안 농업 교육훈련을 받는다. 돌봄, 직업 재활 치료, 직업 교육 프로그램 등을 공공기관에서 직접 농장을 운영하면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넷째는 B유형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민간 농장이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일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즉 고용함으로써 노동 통합을 추구하는 형태다. 지역의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특별 고용 계약을 맺으며, 이 프로그램에 공공기관이 임금을 지원한다.

다섯째는 B유형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민간 농장이 사회적 의미가 있는 농촌관광 사업을 추진하거나 농장의 일상, 자연, 건강한 먹거리 등을 소재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다. 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여섯째는 A유형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역의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어 농업 활동을 매개로 아동 돌봄 시설을 운영하거나, 재소자, 약물 중독자 등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2015년을 기준으로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농장은 1,090개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 가운데 사회적 협동조합이 약 40%, 민간 농장이 31%의 비율을 차지한다. 또한, CREA¹⁶⁾의 사회적 농업 실태 조사¹⁷⁾에 따르면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가 72%로 가장 많았다. 2010년과 2015년 사이에 사회적 농업을 시작한 사례가 30%로, 최근 들어 사회적 농업 실천이 민간 농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참고 2-6〉 사례: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 아그리꼴뚜라 카포다르코(Agricoltura Capodarco)

사례 농장은 로마 근교에 있다. 1978년에 지역 내 장애인 복지 기관의 장애인들을 농업 활동에 고용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지금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등록하였으며 A, B 유형이 혼합된 형태다. 지역사회에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원예 재활 치료 프로그램 등의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직원은 농업인, 사회복지사, 정신과 의사, 원예 치료사, 요리사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며 전체 직원 수는 약 50명이다. 상주 직원이 10명이고 조합원은 38명이다. 발달 장애인, 정신질환자, 약물 중독자 등의 취약 계층도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취약 계층은 농사 경험이 있거나 관련 기술이 있으면 바로 직원으로 채용되어 조합원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 2년까지 직업 연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연수생 신분으로 고용된다. 약 30명의 지역 내 청년 자원봉사자들도 협동조합의 농업 활동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보조한다. 농장 부지의 대부분은 국유지를 임차한 것이다. 일부 건물 및 토지는 지역의 수녀원에서 기부하였다.

16) 이탈리아 중앙 정부 출연의 농업·농촌 분야 연구 기관이다.

17) 300개의 사회적 농업 실천 사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실제 조사에 208개 사례가 응답하였다.

농장은 채소와 과일을 주로 생산한다. 가공 시설을 갖추고 있어 와인, 올리브 오일, 꿀 등을 생산하여 판매한다. 로마 시내와 농장에 레스토랑과 식료품 가게를 직접 운영하여 소비자와 직거래가 언제든지 가능하다. 와인, 올리브 오일 등의 상품은 전문 중개인을 통해 유럽 전역으로 판매한다.

고용된 약물 중독자, 발달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의 취약 계층은 보통 농업 활동을 보조한다. 노동 역량이 부족하거나 농업 활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일을 돕는다. 지역의 다른 사회적 협동조합과 협력하여 3개의 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조합원이 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다른 협동조합에 고용되어 일할 수 있다. 2008년부터는 지역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원예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원예, 미술, 음악, 동영상 제작 등의 활동을 제공한다. 기관에서 관리하는 발달 장애인, 약물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12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조합원인 정신과 의사 2명과 원예 치료사 1명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자료: 2017년 2월 이탈리아 출장에서 방문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영자와의 인터뷰 결과를 정리하고, 웹사이트(www.agricolturacapodarco.it)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자료: 김정섭 외(2017: 30).

2.3.2. 이탈리아의 사회적 농업 정책 추진체계

이탈리아에서는 사회적 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최근에 제정되었다. 그렇지만 예전부터 기본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 법률을 근거로 사회적 농업에 대한 정책을 추진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방정부 혹은 지역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사회적 약자를 농업 분야에서 고용하거나 농장의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 또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국가로부터 지급받는다. 사회적 약자를 고용할 때 지원 및 혜택을 받기도 한다. 국가의 보건복지, 교육, 고용 등 분야별 제도마다 각기 다른 기준으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탈리아 보건복지 제도 및 정책을 먼저 살펴봐야 사회적 농업 정책의 추진 체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보건복지 제도의 기본적인 원칙과 목표를 제시한다. 21개 지방정부가 이를 반영해 각자의 지역 여건에 맞게 보건복지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지역 보건기관(ASLs: Local Health Authorities¹⁸⁾)은 지방정부의 보건복지 계

18) 지역에서 주민들의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리학적인 특성과 인구를 반영하여 설치되는 공공 행정 기관이다. 관할 구역의 보건복지 서비스 공급을 계획하고 관리한다. 2012년 기준으로 이탈리아 전역에

획에 따라 보건복지서비스 공급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시행계획에는 관할 구역의 보건복지 수요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예를 들자면, 지역 보건기관이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관할 구역에서 발굴하고 관리한다. 이 사람들의 상태와 여건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때 지역의 사회적 협동조합과 협의하고 돌봄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지방정부는 시행계획에 포함된 전반적인 내용과 예산을 지역 보건기관과 협의하에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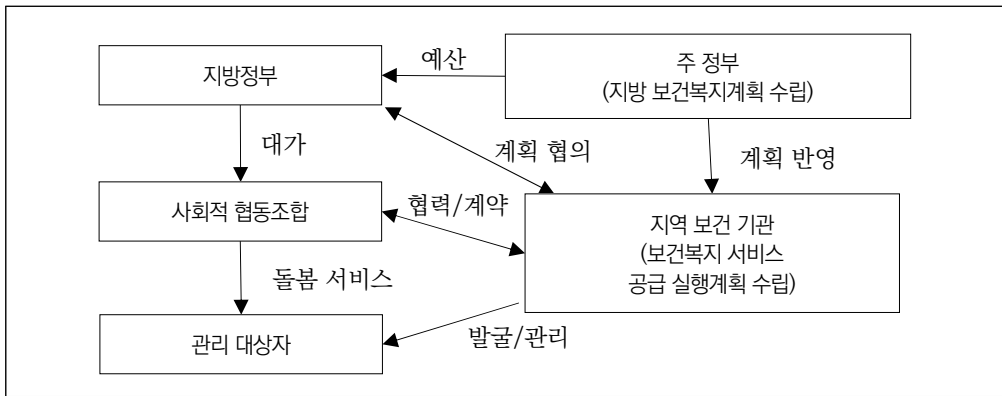
사회적 농업의 구체적인 종류에 따라 정책 지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행된다. A유형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 보건기관과 계약을 맺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해, 지방정부로부터 서비스 제공 대가를 지급받는다. 금액은 서비스 이용자 1인 1일 기준으로 30~70유로 수준이다.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상태나 이용 시간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난다. 아동 돌봄 서비스, 재소자 및 약물 중독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지역의 관련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어 대가를 지급받는다. B유형 사회적 협동조합과 민간 농장은 지역 보건 기관이 관리하는 대상자를 고용하거나 그들에게 직업 교육 및 직업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회적 약자를 고용할 경우 특별 고용 계약을 맺는데, 이때 임금의 일부를 지방정부가 지원한다. 직업 재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에게는 지방정부가 임금 성격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금액은 1달에 200유로이다. 직업 교육 프로그램은 유럽 연합이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민간 농장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지원받는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임금 성격의 보조금을 받는다. 금액은 1달에 400유로 정도이다. B유형 사회적 협동조합에는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경관 및 공공시설 관리 등 공공 일자리 분야에서도 우선 참여권을 보장받는다.

이탈리아의 21개 주 가운데 13개 주가 조례에 사회적 농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였다. 이 조례에 따라 주 정부가 수립하는 보건복지 계획이나 농촌 발전 계획에 사회적 농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8월에는 주 정부마다 각기 지원 내용이 다르게 정해져 있는 것을 통일하고 관련 부처 간의 협력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사회적 농업 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사회적 농업의 정의와 범위를 제시한

143개의 지역 보건 기관이 있고 그 아래에 826개 지구 사무소가 있다. 여러 지방정부를 포함하기도 하며, 1개 지구가 담당하는 주민의 인구는 평균 6만 명이다(Ferre 외,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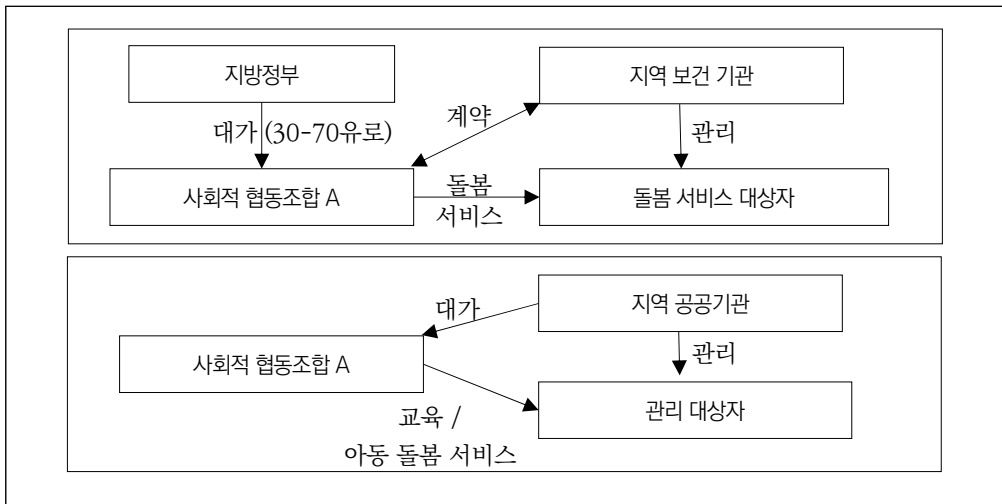
다. 개인, 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노동 통합, 고용, 치유, 재활, 교육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농업 활동을 사회적 농업이라고 정의하였다. 농업 매출액이 30% 이상 되어야 사회적 농업 실천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국유지 이용 우선권, 공공 조달 우선권 등의 지원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사회적 농업 지원 조직을 설립하여 기술 지원, 사회적 농업경영체 인정, 교육 과정 개설, 점검·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림 2-6〉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과 지역 보건기관의 협력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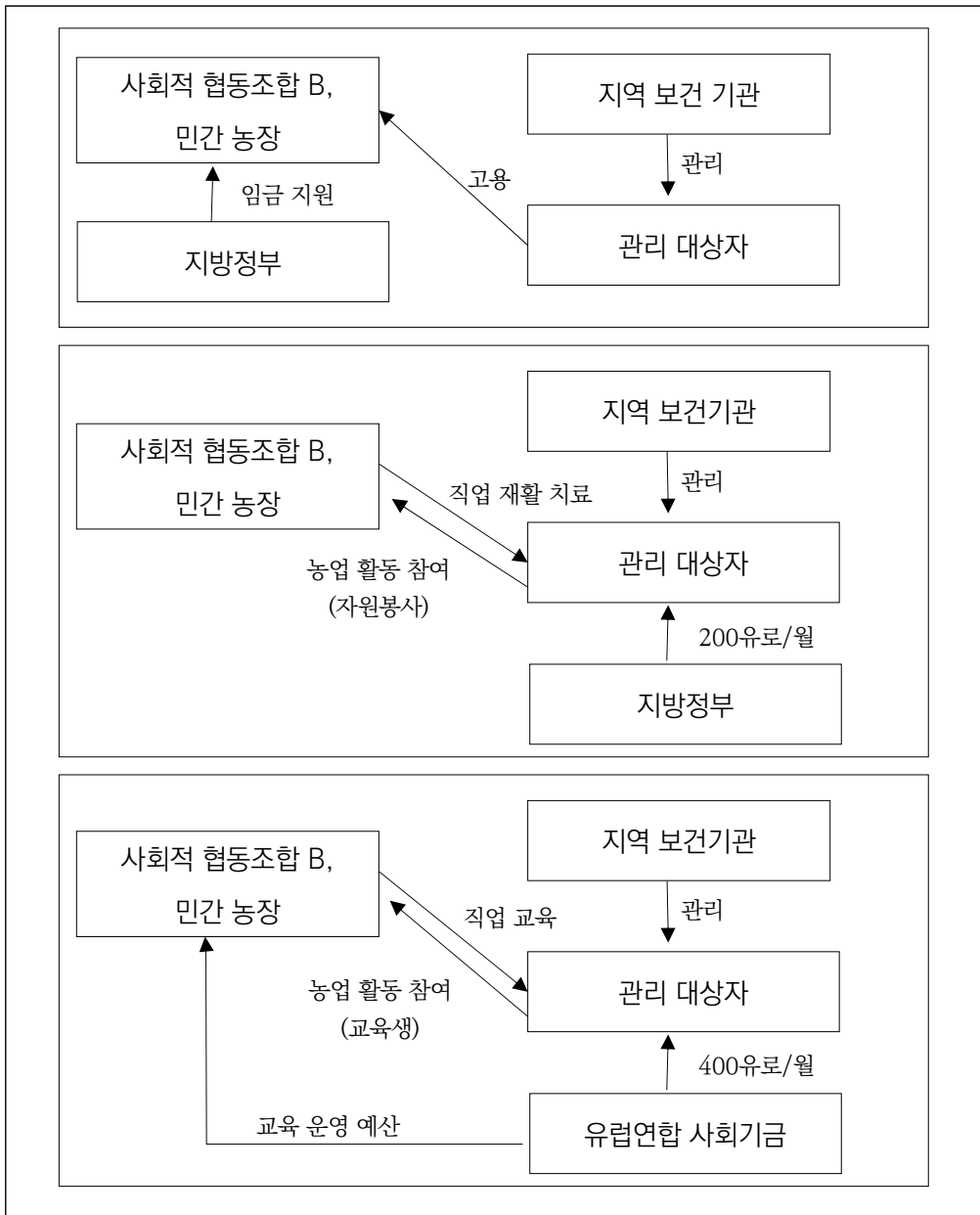
자료: 김정섭 외(2017: 42).

〈그림 2-7〉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 A유형에 대한 지원 구조



자료: 김정섭 외(2017: 43).

〈그림 2-8〉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 B유형 및 민간 농장에 대한 지원 구조



자료: 자료: 김정섭 외(2017: 44).

3. 지역공동체-기반이어야 하는 현실적 이유

사회적 농업이 지역공동체에 바탕을 두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사회적 농업’의 지향이 사회통합 또는 사회적 포용에 있다는 점에서 우선 드러나지만, 현실적인 이유들도 있다.

첫째, 사회적 농장 운영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다. 네덜란드와 달리 사회적 농업 실천에 따르는 비용 혹은 서비스 제공에 따르는 대가를 공적 자금으로 지불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확립되지 않은 한국에서, 가족농 단위의 일반적인 농가들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누군가를 고용하는 데에는 농장 경영상의 큰 제약이 동반된다. 한 농가가 여러 명의 참여자를 돌보거나 고용하거나 농업교육을 실시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개별 농업경영체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을 줄이려면, 지역공동체 안에 여러 농가들이 사회적 농업 실천에 동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진다.

가령, 잘 알려진 행복농장의 경우 유기농 허브를 재배하는데, 그 판로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그럼에도 250평 크기의 비닐하우스 4동에서 작물을 재배하여 얻는 매출액은 연간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별도의 대가를 지불받지 않는 상태에서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횟수에 비례하여,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자의 수에 비례하여 농업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2019년에 행복농장은 지역에 거주하는 10여 명의 정신장애인들이 매주 방문하여 농업활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12회 진행하였고, 약 일주일 간 행복농장이 소재한 도산리에 4박 5일 동안 정신장애인이 머물며 농업활동에 참여하는 ‘자연구시프로그램’도 2회 진행하였다. 그밖에도 지역 내 초중등 학교의 특수반(돌봄반)에 속한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도 상황에 따라 학기당 10회차 내외의 주기로 운영하였다. 그 시간만 해도 연간 수백 시간에 달한다. 행복농장에서 고용한 H씨의 급여 또한 순전히 경영적 관점에서 보자면 노동생산성에 비해 훨씬 많은 금액이 지불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정도가 행복농장이 경영수지 측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인 듯하다.

둘째, 사회적 농업 활동 참여자들이 얻을 수 있는 심리적·사회적 효과 측면에서도 개별 농장으로서 많은 수의 참여자를 응대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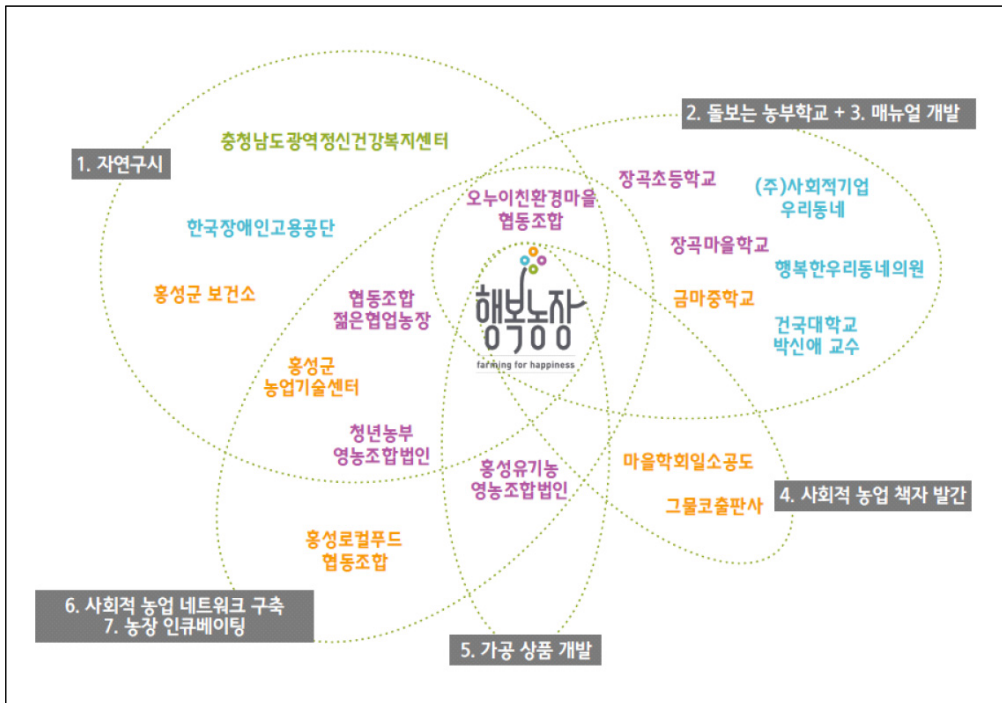
중증 발달장애인이거나 정신장애인의 경우, 농장활동을 진행할 때에는 농민 1명이 1~3명의 장애인과 함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대체로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20명이 농장활동에 동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농장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지역공동체 안에서 근거리에 여러 사회적 농장이 존재한다면, 이들 참여자를 분산 배치함으로써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셋째, 사회적 농업 활동에 참여할 ‘사회적 약자’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초기 단계의 접촉 과정에서 사회적 농장 단독으로는 수많은 애로를 경험하게 된다. 현재 활동하는 사회적 농장들 모두 지역에 있는 보건 또는 사회복지 기관들과의 접촉을 통해, ‘사회적 농업’이라는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었다. 농촌 주민들, 특히 농민들의 일상생활에서는 보건 및 복지 관련 기관과의 접촉 기회나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여러 직능 기관과의 네트워킹이 필수적인 과제로 부각된다.

넷째, 사회적 농장이 감당해야 할 구체적인 기능들을 소화할 인적 자원 소요는 다양하고 많지만, 사회적 농장은 그런 인적 자원을 상시 고용하고 유지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지역공동체 내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과의 협력 관계에서만 사회적 농장이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역공동체 내부의 협동과 연대 관계에서 확보해야 할 기능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사회적 농업을 지역에 알리고 협조를 구하기 위한 홍보 및 출판물 간행, 사회적 농업 활동 참여자들에 대한 모니터링(혹은, 사례관리), 현금, 현물, 노동력 등 다양한 형식의 후원, 사회적 농장 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 사회적 농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 획득, 사회적 농장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로 확보, 사회적 농장 활동 프로그램 운영상의 여러 기능(예: 기록, 촬영, 프로그램 진행 보조, 송영, 집단 상담 등 참여자 대상 비농업 프로그램, 강의장·숙박·식당 등의 시설, 식사 제공 등) 등이 그 예이다.

〈그림 2-9〉 협동조합 행복농장의 ‘사회적 농업 협력 연결망’



자료: 행복농장 내부 자료.

다섯째, 사회적 농업 실천을 확산하려는 정책을 ‘부문 정책’이 아닌 ‘농촌발전 정책’의 범주 안에서 이해할 때, 사회적 농장은 지역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포용, 사회혁신, 사회적 경제 등 세 가지 측면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때 지역공동체 내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관계는 그런 기능들이 발휘되면서 지역공동체를 더욱 ‘공동체 스텝게’ 변화시키는 매체가 된다.

‘사회적 포용’이라는 이념은 지역공동체 안의 사회적 약자를 통합하고 포용하는 실천의 필요성과 효과를 보여주는 역할을 뜻하며, ‘사회 혁신’ 사례의 창출은 과거에는 관계가 없던 행위자들이 ‘새롭게 관계를 맺고, 그 바탕 위에서 변화를 이루어내는 실천’, 즉 부문 간의 칸막이를 해소하는 실천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의미한다. ‘사회적 경제’ 확장의 거점이란 지역공동체 안에서 여러 행위자가 협동과 연대를 바탕으로 조직화되고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끊임없이 수행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 기능하는 것을 뜻한다.

4. 사회적 농업에서 지역공동체의 장소 범위 문제

사회적 농업을 지역공동체에 바탕을 두고 실천해야 할 필요성은 사회적 농업 실천이 주민의 ‘자발성’과 ‘협동’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도출된다.

네덜란드와 달리, 사회적 농업이 정부 등 국가가 제공하는 제도화된 사회복지 서비스의 일종으로 인정되지 않는 현재로서는 일정 부분 농업인이나 농촌 주민의 자발적 실천으로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자발성에 근거한 실천이며 공공부문으로부터 대가 지불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게다가 여러 분야 인적 자원의 지식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개별 농가의 단독 실천으로는 사회적 농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 지역공동체 내 여러 행위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때, 검토해야 할 것은 자발성과 협동의 힘이 발휘되는 ‘지역공동체의 장소적 범위’ 문제다. 지역공동체란 리, 읍/면, 시/군 등 어느 정도 크기의 장소 범위를 염두에 둔 것인가? 사회적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일자리, 농업교육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참여자 또는 이용자)의 장소적 분포는 행정리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들을 사회적 농장에 연결시켜 주거나 조력할 위치에 있는 기관·단체(예: 사회복지기관)들은 대체로 시/군 또는 읍/면 수준에서 활동한다. 참여자(이용자) 그리고 조력자 입장에서 볼 때, 사회적 농업의 협력 연결망은 행정리에 한정할 수 없다. 한편, 사회적 농장들이 넓은 장소에 분산될 경우, 접근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적 농장들은 가급적 서로 인접한 곳(행정리 혹은 읍/면)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적 농업 실천이 지역공동체에서 배제된 이들을 사회적으로 포용하려는 취지의 활동이므로, 지역공동체 나름의 사회적 포용 전략(혹은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토대로 지역에서 사회적 농업을 확산해나가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 사회적 포용을 염두에 둔 계획이나 전략은 지역공동체 내부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파악을 전제하므로 상정하는 지역공동체의 장소적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수립하기가 어려워진다. 대체로 읍/면 수준의 범위가 적절하다.

사회적 농업은 다기능 농업의 일종으로, 영농활동을 전제로 하며 실천의 기본 주체는 농업인이다. 그런데 사회적 포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농업인이 농장에서 농업인이 아닌 다른 사람(불리한 여건에 있고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을 참여자로 불러들여 환대하는 실천이다. 농업인-비농업인의 면대면 사회적 관계 없이는 실천되기 어렵다.

3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1.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개요

정부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¹⁹⁾이라는 명칭의 보조금 정책사업을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두 가지로 서술되어 있다. 그 가운데 두 번째 목적에서 제시한 내용은, 이 사업이 처음부터 ‘지역공동체-기반’이라는 원칙을 견지해왔음을 보여준다.

첫째,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을 도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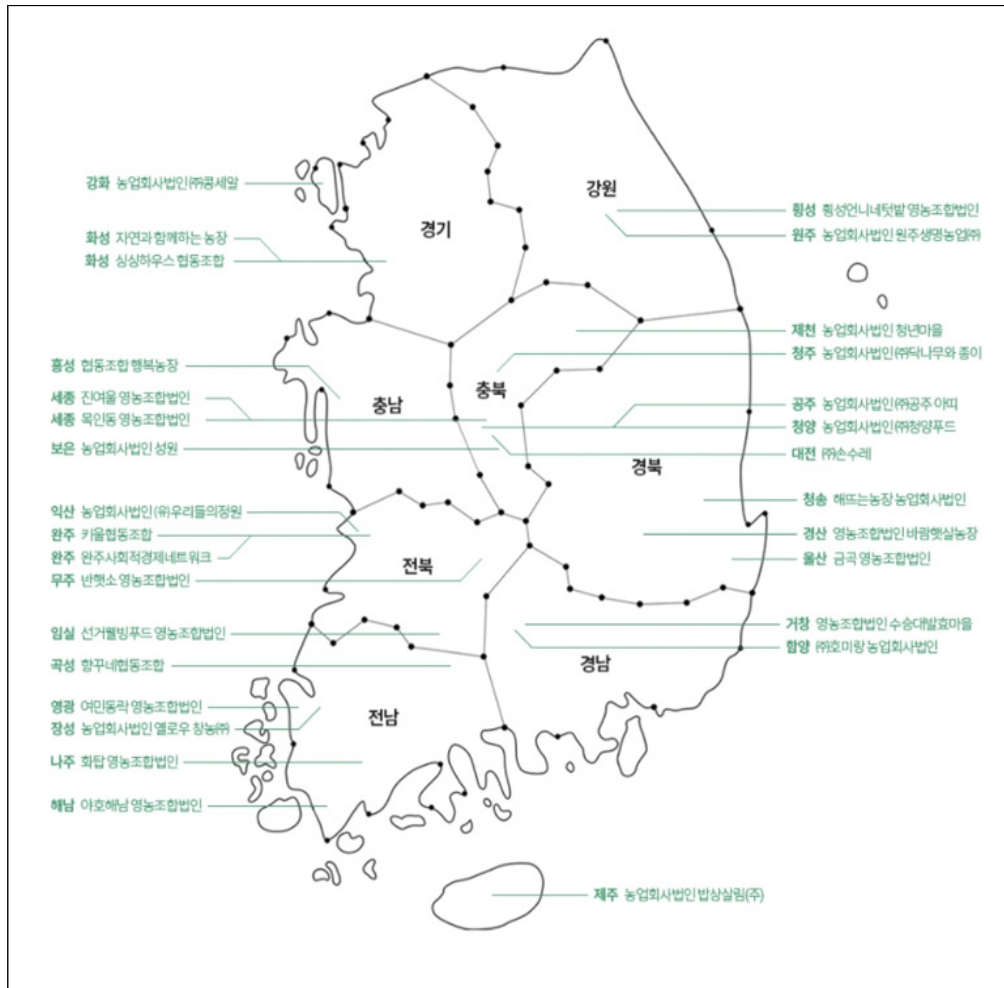
둘째, 사회적 농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한다.

이 사업의 예산 세목은 ‘지자체경상보조’이며, 개소당 연간 6,000만 원을 보조한다(국고 70%, 지방비 30%). 2018년에 9개소, 2019년에 9개소, 2020년에 12개소를 지정하여 현재 30개소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면, ‘지역사회의

19) 정확하게는, ‘농업농촌 사회적 가치 확산 지원’이라는 명칭의 사업에 속한 ‘내역사업’이다.

주민, 조직,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이루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전제로 사업을 계획하게끔 지침에 명시해두었다.

〈그림 3-1〉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실시 지역(2020년)



자료: 사회적 농업 온라인 포털사이트(<http://socialfarm.kr>). 2020년 9월 30일 검색.

2. 성과와 과제

실제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30개소의 사업 대상지 모두 ‘계획’에는 협력 연결망에 포함시킬 지역 내 기관, 단체 등의 행위자를 명시하였는데, 30개의 사회적 농장이 협력 관계를 형성하기로 계획한 대상 기관 또는 단체는 총 199개로, 평균 6.7개의 기관·단체와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표 3-1).²⁰⁾ 협력 관계를 맺기로 한 기관 및 단체 중에 사회복지기관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장애인이나 노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교육, 돌봄, 고용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부 사업내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같은 연결망 형성 양상은 현재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 농장들이 우선은 농장활동 참여자를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에 서부터 출발해 지역 내 네트워킹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공동체 안에서의 협력 관계 형성과 관련하여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려는 농민이 비농업 분야의 기관이나 단체와 만나기 시작했다는 점은, 중요한 한 고비를 넘기기 시작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공동체-기반 사회적 농업 확산’을 목표로한다면,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적 농장 한 곳과 여타 기관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내에 여러 사회적 농장들을 육성하고 연결망을 이루어야 한다. 것처럼 형성된(또는 형성될) 연결망이 유동적이고 비공식적인 관계에서 진화하여 일정하게 견고한 틀을, 가령 상상하자면 ‘○○군 사회적 농업 협회’ 혹은 ‘○○면 지역사회 돌봄 협의회’ 같은 방식의 명칭을 지니고 그에 걸맞은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조직적 틀을 갖추어야 한다. 네트워킹, 즉 협력 관계 형성에는 상당한 밀도의 교섭과 의사소통 노력이 필요하다. 그 모든 작업을 사회적 농장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연결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섭을 안내할 지역 내 조력기관을 사회적 농업의 영역으로 포섭해야 한다.

20) 이것은 계획이고, 실제 협력관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실증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임이나 만남이 대부분 중지되는 예외적인 상황이었다는 점도 돌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표 3-1〉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농장들의 사회적 농업 실천 현황

| 농장명 | 활동유형 | 활동내용(2020년 초 사업계획서 기준) | | | 네트워크 |
|---------------------------|----------------|------------------------|---|--|---|
| | | 대상 유형 | 프로그램명 | 프로그램 내용 | 기관단체명(협력 분야) |
| 농업회사 법인 청년마을 (주) | 교육 돌봄 고용 | 청년 | 청년농부 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농장 일정을 수립하고 하루 4시간 실습을 통해 전통농법을 익히고 먹거리 자급 학습 프로그램 개발 주 3회, 하루 4시간 공유지에서 농사실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공동체연구소(네트워크와 사업운영 노하우) 제천간디학교(농사 작업장과 농업 교육 마을 연계 프로그램) 누리꿈터덕산 지역아동센터(월 2회 농사 체험 프로그램) 참좋은곳간(청년농촌정착 프로그램 위탁, 직판장, 쇼핑몰 공유) 먹거리나눔협동조합 파릇(생산물 판매 및 협동조합 참여) 덕산초중등학교(초/중/유치원생 농사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월악산 힐링푸드(6차 산업과 농산물 가공 실습 교육) 교통대 디자인과(디자인 작업장 참여와 지도) 건국대 링크플러스사업단(농도상생청년 교류) |
| | | | 간디학교 농사작업장 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천 간디학교 6명을 대상으로 작업장 농사 및 농산가공품, 농사체험 기록, 마을활동 체험교육을 통해 농사와 마을에 대한 이해도와 친밀성 제고 | |
| | | | 마을 배움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주도적 배움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청년이 희망하는 것을 찾아 자신을 일로 만들어 작업장으로 연계(16교실 각각 6강좌) 영상, 독서, 영어수다, 그리기, 목공 | |
| | | 진로작업장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의 관심사를 발전시켜 전문가로 성장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을 창업하여 농촌에 정착 목표로 함 영상미디어센터, 그림교실, 로컬푸드 음식 작업장, 디자인 등 | | |
| | | 지역아동 | 지역아동 농사체험 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취약계층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들판 백일장, 그림 그리기 등 농사교육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 체험활동, 지역에 대한 긍정적 추억 제공 | |

| 농장명 | 활동유형 | 활동내용(2020년 초 사업계획서 기준) | | | 네트워크 |
|----------------------------|------------------------|------------------------|--------------------------|---|--|
| | | 대상 유형 | 프로그램명 | 프로그램 내용 | 기관단체명(협력 분야) |
| 횡성언니네 네티밭 영농조합 법인 | 교육 고용 기타 (힐링) | 귀농귀촌여성 | 귀촌여성농업인 정착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개 지역 언니네 네티밭 협업농장 운영 귀농귀촌 희망 여성 대상 시기별 농업활동 체험 및 농사법 전수 귀촌여성, 다문화여성에게 농사기술전수 및 소득활동 지원 귀농희망 여성 농업경영체등록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횡성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기획 및 농업, 식생활 교육) 영농조합법인 네티밭(농산물가공및토종농산물(콩)구매) 사회적협동조합 행인서원(농업연계인문학교실, 힐링센터) 횡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 협동조합(사회적 경제 장터 참여를 위한 교육 등) |
| | | 고령농업인 (여성) | 언니네 밥상 프로그램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철꾸러미 농산물로 만든 반찬을 만들어 고령여성농업인 건강관리 및 말벗 활동 실시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농업인 공동체 복원 농촌형 여성 친화 마을 조성 고령여성농업인 지키미 활동 등 전통음식스토리텔링 및 푸드심리테라피 작업 | |
| | | 여성농업인 | 제철농산물즉석가공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니네 네티밭 참여하는 젊은 여성농업인이 사회적 농업 활동과 감사훈련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소득사업 지원 제철 농산물 활용 음식 판매 식당 운영 힐링푸드만들기, 푸드심리테라피, 무인판매대 운영 등 | |
| 농업회사 법인 원주생명 농업 | 돌봄 | 고령자, 귀농희망자 | 지역조사 및 인식개선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자원 조사, 고령자 경제활동 수요 및 돌봄 수요 조사 사회적 농업 인식 개선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주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돌봄사업 수행단체 사업연계, 연수 프로그램 등)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건강관리연계 운영) 원주노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고령자 대상 영농 실습 및 기술 훈련 대상 자연계) 성공회원주 나눔의집(건강증진 프로그램 연계)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고령자 대상 영농 실습 및 기술 훈련 대상자 연계 및 생활 자립 상담) 플라워림프(원예치료프로그램 등) 원주생협(협업농장 물품 판매 역할) |
| | | | 협업농장 시범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영농 실습 및 기술 훈련 지역 내 복지사업 단체 연계 | |
| | | | 농촌지역고령자 및 협업농장참여자돌봄 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예치료 프로그램(6회) 건강관리 프로그램 실시(2회) 건강증진 프로그램 실시(6회) 생활자립상담 프로그램(3회) | |
| | | | 지역 네트워크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단체 기획회의(3회) 사회적 활동 세미나(1회) | |
| | | | 사례 연수 및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사회적 농업 사례 연수 국외 사회적 농업 선진 사례 연수 | |

| 농장명 | 활동유형 | 활동내용(2020년 초 사업계획서 기준) | | | 네트워크 |
|--------------------|------------------------------|------------------------------|--------------------|---|--|
| | | 대상 유형 | 프로그램명 | 프로그램 내용 | 기관단체명(협력 분야) |
| 농업회사 법인 성원농장 | 교육 돌봄 고용 기타 (힐링) | 발달 장애인, 치매노인, 장애청소년 | 맞춤형 농업돌봄 및 교육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장애인은 체험(단기)반, 심화반 인턴반으로 편성 단순 체험부터 네트워크농장 실습까지 구분하여 농업교육 단기프로그램(5~10명) 2박 3일간 연 9회 운영 심화프로그램(2~5명) 주 3회 28주간 운영 인턴프로그램(1~3명) 1년 간 12주 운영 치매노인반은 주간돌봄으로 맞춤형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대상발굴, 직업평가, 사례관리 등) 보은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역복지기관 또는 사회단체와 연계 지원) 보은군농업기술센터(영농생산 기술 보급 및 강사 지원) 귀농귀촌단체협의회(농업자문지원 및 농업행사 지원) 보은군농업인협회(농작물판매 및 교육지원) 여성농업인회(농작물판매 및 교육지원) 보은농업경영인단체(농작물 판매 및 교육지원) 보은군보건소(체지방, 골격근정도 측정, 관리 방안 자문) 보은군정신건강증진센터(우울감 측정 지원 및 사례관리 지원, 자문) 가람회농장, 티움종장, 소풍농장(농업체험 및 훈련지도 등) 보은군영농후계자연합회(축산관련체험, 실습, 농장체험 등) 보은군산림조합(보은산나물, 산약초체험, 실습 등) |
| | | | 신체건강 증진 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체기능 재활 및 정서안정 공동체프로그램(과수, 원예, 식용작물수확체험) 개별프로그램(개별 텃밭 이용 다양한 작물체험) 자유프로그램(농장견기 등) 보건소연계(건강관리, 검진, 건강체조/운동프로그램) | |
| | | | 정서안정 증진 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힐링 농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한 우울감 감소 등 정서기능 향상(정원 만들기 등) | |
| | | | 여가문화 기회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활동 및 여가선용의 기회 제공 여가문화반(도자기공예, 꽃차만들기, 원예등) 가족공동텃밭(장애가족 대상 공동 텃밭 조성, 가족유대증진) 힐링가든 프로그램(치유정원, 텃밭정원, 미니정원) 장애 아동청소년 농장 체험반(장애아동청소년대상수확체험및 놀이기회제공) 농업 체험반(보은군내오이, 사과, 딸기 등 대표 작목반 체험) | |

| 농장명 | 활동유형 | 활동내용(2020년 초 사업계획서 기준) | | | 네트워크 |
|--------------------------|------|------------------------|------------------|---|--|
| | | 대상 유형 | 프로그램명 | 프로그램 내용 | 기관단체명(협력 분야) |
| 농업회사 법인 닥나무와 종이 | 돌봄 | 치매 고령자, 아동·청소년 | 치매노인 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치매 노인 추억여행 프로그램(1기수) 초기치매 노인 기억개선 프로그램(2기수,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한 요양원(치매환자 이동, 대상자 선정, 요양사 지원 등) 상당구치매센터(치매노인프로그램자문, 개선 사항 공유) 청주시토종씨앗연구회(농장체험, 전문강사제공, 청소년 프로그램 강의 자문) 문의초중학교(농사교육 및 체험연계, 농사교육 장소 제공) 백민구절초연구소(체험, 축제, 장소제공, 재료거래 등) 교육청Wee센터(청소년 대상 발굴, 프로그램 추진 계획 공유 등) 문의면사무소(주민자치 프로그램, 전시장소 제공) |
| | | | 아동/청소년 창의농업 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과 친해지는 시간 절기별 재료 인식 및 수집 공예품 만들기 등 | |
| | | | 청년 농부활동가 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농귀촌 희망 청년 또는 활동 희망 청년 모집 다양한 수업 및 지역문화 축제 참여, 상시교육 진행 | |
| | | | 마을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의소재 지역주민 대상 참여자 모집 역새, 녹조 등 활용수업 진행, 공예품 만들기 등 | |

| 농장명 | 활동유형 | 활동내용(2020년 초 사업계획서 기준) | | | 네트워크 |
|-------------------|------|----------------------------|---------------------------|---|--|
| | | 대상 유형 | 프로그램명 | 프로그램 내용 | 기관단체명(협력 분야) |
| 진여울 영농조합 법인 | 교육 | 장애학생 | 세종누리학교 농업인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공동으로 영농에 참여, 텃밭 조성 ▪ 작물재배 요령, 농업 관련 교육 체험 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누리학교(장애학생 교육, 이동 지원) ▪ 성남고등학교(봉사동아리활동, 이동 지원) ▪ 연기어린이집(참여 아동연계 및 안전관리 인력) ▪ 놀왕리마을회(주민참여) ▪ 세종장애인복지관(프로그램 공유 및 강사 지원) ▪ 세종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 ▪ 씨앗도서관협의회세종지회 ▪ 세종로컬푸드(농산물출하 및 판매) ▪ 세종자원봉사센터(자원봉사지원) |
| | | 아동,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 연기 어린이집 영농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별 농업활동, 정서교육, 자연학습 기회 제공 | |
| | | 장애학생, 비장애 학생 | 장애학생+비장애학 생 커뮤니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누리학교 학생 + 성남고등학교 학생 어울려 도움을 주고 받으며 또래 간의 교감, 인성교육 | |
| | | 주민, 장애학생, 아동 | 장애학생 사회성 향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어르신과 어울리며 농촌 현실과 정서 체감 기회 제공 | |
| | | 장애가족 | 장애가족 텃밭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와 가족이 텃밭 운영, 공동체 형성 | |
| 목인동 영농조합 법인 | 교육 | 장애인 | 세종요나의 집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텃밭 정원, 맞춤형 체험 ▪ 월별 프로그램 진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 누리학교(특수학급 학생 대상 텃밭 매개 체로 힐링/치유 프로그램) ▪ 세종요나의집(돌봄, 케어, 힐링프로그램 연계) ▪ 세종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문화가족연계) |
| | | 장애학생 | 세종 누리학교 특수 학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텃밭 정원 직접 관리하며 정서함양 ▪ 식용화초 활용 식생활 프로그램 ▪ 황토놀이터 및 숲길 걷기 심리적 안정 기여 | |
| | | 다문화 |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힐링 치유 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 다문화 가족 대상 힐링 치유의 밤 행사 개최 ▪ 전의초등학교 다문화 가족 대상 경험 | |

| 농장명 | 활동유형 | 활동내용(2020년 초 사업계획서 기준) | | | 네트워크 |
|--------------------|----------|------------------------|-------------------------|---|--|
| | | 대상 유형 | 프로그램명 | 프로그램 내용 | 기관단체명(협력 분야) |
| 여민동락 영농조합 법인 | 교육 고용 | 고령노인 | 노업활동 유지교육 및 돌봄연계 체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거리 개발 마을공동체 활성화 도모 참여 노인의 일상적 관리 및 건강/정서 파악 고령인 노동 능력에 적합한 작목과 농법 보급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민동락 공동체(사회복지사 인력 지원, 프로그램 및 사례관리 협력 등) 의료기관(영광종합병원, 묘량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 깨움마을학교 묘량중앙초, 송학중, 성지고(프로그램 연계) 야생화영농조합, 태형골야생화, 영광이레농장(협력농장) 목포대(인력교류 및 실습, 프로그램 개발 협력) |
| | | 아동/청소년 | 돌보는 농부학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농부(초): 교육과정 연계 생태교육 꿈꾸는농부(중): 노작교육 미래농부(고): 영농 활동 동행 | |
| | | 청년/귀농인 | 청년/귀농인 이주돌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농귀촌 희망자 마을살이, 농업활동 등 이론/실습 교육 제공 도시청년대상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공유, 정착지원 | |
| 반햇소 영농조합 법인 | 교육 돌봄 | 장애청소년 | 무주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 농업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에 취약한 장애인 대상 다양한 농업교육 경험 및 직업경험 반햇소농업활동(텃밭작물재배, 가공물생산직업교육등) 해밀캠핑장농업활동(자연및농업활동, 수확및요리) 반디농장, 딸기농장, 진원 반디길 등 협력농장 농업활동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주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프로그램 개발, 기획, 관리 지원 등) 무주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 일반/장애학생/전문가연계)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전북지부(농가교육 및 전문가 자문) 무주교육공동체(사회적 농업 홍보 및 프로그램 참여)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대상자발굴, 전문가연계 등) 무주종합복지관(성인 장애인 참여 및 관리 등) |

| 농장명 | 활동유형 | 활동내용(2020년 초 사업계획서 기준) | | | 네트워크 |
|--------------------------|----------------|------------------------|--|------------------------------------|--|
| | | 대상 유형 | 프로그램명 | 프로그램 내용 | 기관단체명(협력 분야) |
| 선거웰빙 푸드 영농조합 법인 | 교육 돌봄 고용 | 독거노인 | 독거노인 농업활동 | ▪ 농업활동 안전교육 및 원예작물 재배 일거리 나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정/성폭력 피해자 대상 및 차량 지원 등) ▪ 임실시니어클럽(독거노인연계, 건강 체크 관리 등) ▪ 임실마을가꾸기협의회(산양목작 연계추진) |
| | | 범죄피해자 | 범죄피해자 농업활동 | ▪ 농업활동 안전교육 및 원예작물 재배 일거리 나눔 | |
| | | 노인, 범죄피해자 | 원예치료 | ▪ 원예치료사자격증 교육 및 지역노인정 순회 교육 | |
| | | 독거노인 | 치매 및 정서지원 문해교육 | ▪ 지역독거노인 대상 문해교육 및 치매예방/정서지원 | |
| | | 청년 | 청년 공동활동 | ▪ 마을입구 꽃밭 가꾸기 활동, 원예치료 및 보존화, 공동수확 | |
| 야호해남 영농조합 법인 | 교육 고용 | 귀농인, 해외이주민 | 농사활동 협업, 농가방문 (체험, 수확, 요리) 농업활동 및 카페, 화원, 제빵 등 다양한 경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남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해남교육지원청 ▪ 해남사회적기업협동조합 ▪ 해남자활 ▪ 해남신활력사업추진단 |
| | | 귀농인, 해외이주민 | 체험지도자 양성 | | |
| | | 해외이주민, 아동/청소년 | 공유 놀이터 프로그램 | ▪ 푸드트럭 활용, 요리와 인문학 콘서트 등 | |
| | | - | 사회적 농업 콘테스트 | ▪ 돌봄과 자립 활동 인력 발굴 | |

| 농장명 | 활동유형 | 활동내용(2020년 초 사업계획서 기준) | | | 네트워크 |
|-------------------------|----------------|------------------------|-------------------------------|---|--|
| | | 대상 유형 | 프로그램명 | 프로그램 내용 | 기관단체명(협력 분야) |
| 완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 교육 돌봄 고용 | 성인 장애인, 지체장애인 | 장애인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혜의 동산, 완주군 평생교육 아카데미와 협력 치유(원예,요리), 농작물 재배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치두레농장(고령농과 귀농인 협력 로컬푸드 농산물 재배) 소양인덕두레농장(고령농과 귀농인 협력 로컬푸드 농산물 재배)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이랑협동조합(밭달지연 아동치료사업, 다문화, 장애학생 문화교육 사업) 청년협업농장(청년 공동농업 활동) 온누리살이사회적협동조합(진로교육 및 직업 체험 교육) 고산풀뿌리교육네트워크(지역교육 프로그램 실현) 씨앗받는농부, 경천오복두레농장, 세상을 바꾸는 밥상 등 |
| | | 독거노인 | 독거노인 돌봄, 치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내 독거노인 대상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실시 (완주군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4명 협력) | |
| | | 귀농귀촌가족 | 초보(가족)농 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농귀촌자, 초보농, 가족농 대상 농업기술 전수, 지역사회 이해 증진 | |
| | | 아동, 가족 | 어린이 농부교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과 함께하는 텃밭 가꾸기 등 | |
| 회답 영농조합 법인 | 교육 고용 | 고령자, 지적장애학생 | 허브테라피 강사 양성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브가든 중심 허브원예치료, 허브상품만들기, 허브아로마테라피 등 허브 상품을 만들어보고 반복적 훈련을 통해 강사 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복지관 소속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진행) 세지면부녀회(지역주민 참여유도, 홍보활동 등) 나주시로컬푸드직매장(생산제품 판매 지원) 세지면보건소(프로그램 홍보 및 정보 제공, 참여자 안전 관리) 장애아동학교(덕수, 이화) 아뜰리에이화(소외계층 고용 및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 진행 시 제품 구매) |
| | | 고령자, 지적장애학생 | 가든플래너 양성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적 식물 재배관리, 식물 식재 및 설계, 식물 종 다양성 관리 등 | |
| | | 고령자, 장애인 | 허브치유가든 선물가게 부스운영 및 진로교육 | | |
| | | 전체 | 사회적 농업 팸파티 | | |

| 농장명 | 활동유형 | 활동내용(2020년 초 사업계획서 기준) | | | 네트워크 |
|--------------------------|----------|------------------------|----------------------|--|---|
| | | 대상 유형 | 프로그램명 | 프로그램 내용 | 기관단체명(협력 분야) |
| 항꾸네 협동조합 | 교육 | 귀농희망청년 | 농사 및 생태환경 | ▪ 농사 교육 이론, 실습, 농자재 교육 및 숲 탐방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곡성독방마켓, 구례공장, 순천숲틈시장, 장흥 마실장 항꾸네협동조합꾸러미회원 전국귀농운동본부 |
| | | | 농촌생활기술 워크숍 | ▪ 농막짓기, 용접/난로만들기 등 농촌생활 기술 실습 | |
| 키울협동 조합 | 교육 | 발달장애아동 | 돌봄, 치유농장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장애이 가족 주말 치유농장(노인멘토) 공동체놀이, 원예 치유 만들기 프로그램(이랑협동조합협력) 사회적 농장 식재료 이용 요리 교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봉 평치 두레농장(발달장애이 가족 농장 운영) 이랑협동조합(치유 대상자 선정 및 연계) 씨앗문화협동조합(지역자원, 지역살이 탐방) 지역아동센터, 보건소 등 다수 |
| | | 장애인 가족, 지역주민 등 | 장애인 가족 네트워크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비장애인 인식 개선 프로그램진행 및 어울림, 역량강화 | |
| 농업회사 법인 우리들의 정원 | 교육 고용 | 장애인 | 생산/가공/판매 장기 프로젝트 | ▪ 장애인 대상 허브 및 고구마 재배, 가공 학습, 기술 및 체험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복지시설(훈훈한 집, 맑은 집, 꿈마루 협동조합, 밝은 집 등) 초/중학교 특수반(부송중, 금마초, 오산초, 중앙초) 원광대 원예학과, 농수산대, 전북대 지역농가(낭산다레원, 미륵사지자연학교, 옥수도에, 미륵사지야생화, 염소농장) |
| | | 복지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 대상 원예치료 | ▪ 장애인 복지시설과 협력, 원예프로그램 진행 | |
| | | 영유아 장애아동 | 영유아 장애아동 고구마 관련 프로그램 | ▪ 고구마 심고 수확 체험 및 재배과정 습득 | |
| | | 청소년 장애아동 | 가족 텃밭만들기 프로그램 진행 | ▪ 가족 텃밭 만들기 프로그램 진행 | |
| | | 청년 장애인 | 허브 프로그램 진행 | ▪ 다년생 라벤더 파종 및 재배, 수확/가공 방법 습득 | |
| | | 청년, 장애인 | 허브 테마 농업프로그램 진행 | ▪ 허브 제품 만들기 등 진행, 정원 가꾸기, 플라마켓 등 | |

| 농장명 | 활동유형 | 활동내용(2020년 초 사업계획서 기준) | | | 네트워크 |
|------------------------------|----------------------|------------------------|------------------------------|--|---|
| | | 대상 유형 | 프로그램명 | 프로그램 내용 | 기관단체명(협력 분야) |
| 농업회사 법인 옐로우 창농 | 교육 돌봄 고용 |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농업 현장 프로그램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성군 청소년 상담센터 청소년 대상 과수, 채소, 식량작물 협력농장 재배 활동 실시, 팜파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성청소년상담센터(청소년 관리 및 지도) 아이소라체험놀이교육원(농장 프로그램 실습 및 개발) 퍼니팜스(농촌 자원 활용 전문가 육성) 행복을팜농장(농산물 가공 및 판매 방법) |
| 청송해뜨 는농장 농업회사 법인(주) | 교육 고용 | 귀농희망청년 | 청춘상상랩 수익모델 활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모델 및 공동체 활성화 모델 구체화, 상품 브랜딩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북대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 창양리새마을회, 현동면보육센터, 가원마을 경로당 청송군교육지원청, 문화센터보건소 등 |
| | | 귀농희망청년 | 슬기로운 농장생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수원 실습, 농촌일상 체험 등 | |
| 금곡 영농조합 법인 | 돌봄 | 정신장애인 | 성인장애인 대상 농업 및 노작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텃밭 활동, 직업재활 및 외부활동 등 지역 정신장애인 고용(농장보조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간장애인보호시설(한우리, 햇살), 장애인 거주시설(우리집) 울산농업기술센터 울주군장애인복지관,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
| | | 고령노인 | 영농 및 노작, 고용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어르신 영농 및 고용활동 텃밭 및 농장관리, 체험방문객 보조 활동가 | |
| 수승대밭 효마을 영농조합 법인 | 교육 돌봄 고용 기타 | 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 농업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장내 시설 이용한 원예 및 감성치유 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창군 지역자활센터(차량위계층 대상 프로그램 연계) 귀농학교(발효학교 운영 지원) 청소년지원센터(커리큘럼공동개발 및 지원) 해월복지관, 엘림, 효주간보호센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 | | 청소년 | 방과후 청소년 농업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과 함께하는 자연생태 체험 운영 청소년 및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건강 회복 프로그램 | |
| | | 주간보호센터 노인 | 비건베이커리 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간보호센터 어르신 대상 건강유지 프로그램 | |
| | | 주간보호센터 노인 | 텃밭 요리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간보호센터 어르신 대상 건강유지 프로그램 | |
| | | 귀농(희망)자 | 귀농장학교 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창, 부산 귀농학교 장학교 프로그램 | |
| | | 지역자활센터 | 장학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창지역자활센터 대상 장학교 | |

| 농장명 | 활동유형 | 활동내용(2020년 초 사업계획서 기준) | | | 네트워크 |
|-----------------------------|----------------|--|--------------------------|--|--|
| | | 대상 유형 | 프로그램명 | 프로그램 내용 | 기관단체명(협력 분야) |
| 영농조합 법인 바람햇살 농장 | 교육 고용 돌봄 | 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 대상 농업 관련 직업재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물재배활동(재배, 수확, 가공, 판매)농업관련 창업 및 자립 생활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산 및 대구지역 발달장애인관련기관, 대구 청소년자립센터 경산지역양로원원, 보건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산중앙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 |
| | | 청소년자립 생활관 | 청소년 대상 농업 관련 직업 자립 생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물재배활동(재배, 수확, 판매)농업관련 창업 및 자립생활 등 | |
| | | 경증치매환자 | 농장형 웰니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작물을 이용한 다양한 테라피 프로그램(4종) | |
| | | 코로나19로 인 하여 정신적 치유가 필요한 경산시민 및 직장인 | 농장형 웰니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작물을 이용한 각종 테라피(4종) | |
| 호미랑 농업회사 법인 | 돌봄 기타 | 장애인 |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함양군 장애인센터, 시설노인 단체와 원예농업활동 프로그램 사회적 기능을 돕거나 강화하는 농업 프로그램으로구성 직거래 장터 운영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함양군 지역아동센터, 함양군 장애인센터, 함양군교육지원청, 함양군자활센터, 함양군노인회, 함양군지곡면개평마을노모회, 함양군지곡면노인회 |
| | | 노인, 장애인 | 장애인센터, 노인 요양시설 농업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약단체 참여 식물재배 및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 |
| 농업회사 법인 밥상살림 '담을밭' | 교육 | 지역 농업인 | 농장조성 및 전문가 양성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농업 실천 농민 중심 사회적 농업 촉진자 그룹 형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동부종합사회복지관(지역 아동, 주민 교육 프로그램) 제주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치유프로그램 및 시설활용 등) 한 살림생협(생산물 공급 및 도시민연대사업) 제주생태유아공동체 제주어린이집연합회 비자림유스호스텔/비자숲 제주동부기술센터 |
| | | 귀농귀촌 희망자 | 교육 및 연대망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살림조합원 대상 제주 귀농귀촌 희망자 모집 영농실습, 시범 프로그램 운영 등 정착 지원 | |

| 농장명 | 활동유형 | 활동내용(2020년 초 사업계획서 기준) | | | 네트워크 |
|-------------------|----------------|------------------------|--|---|--|
| | | 대상 유형 | 프로그램명 | 프로그램 내용 | 기관단체명(협력 분야) |
| 협동조합 행복농장 | 고용 | 정신장애인 (성인만성) | (성인)자연구시/ 4박5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 및 서울 만성정신질환자 대상 농부학교 프로그램 운영 숙박교육, 일상농업활동, 농촌마을 이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참가자 모집/선정, 돌봄 프로그램 실행)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참가자모집/선정, 돌봄프로그램 실행) 협동조합젊은협업농장(프로그램 공동진행)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공간제공 및 행정 지원) 장곡초등학교, 금마중학교, 행복한우리동네 의원, 홍성유기농영농조합 등 |
| | | 정신장애인 (성인만성) | (성인)일일자연구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성군내 만성정신질환자 대상 농부학교 프로그램 운영 계절별 농업활동, 시내버스 이용 등 일상생활 연계 | |
| | | 성인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 (성인)커뮤니티케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내 성인 발달장애 및 정신장애 대상 마을돌봄 프로그램 운영, 약물관리 등 일상돌봄, 요리활동 등 | |
| 자연과 함께하는 농장 | 교육 돌봄 고용 | 정신장애인/ 아동/청소년 | <p>사회적 치유 농업 실천 프로그램, 농예일치프로그램, 찾아가는농촌체험, 도시농업프로그램 함께마을만들기</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예/동물 치유, 녹색 돌봄, 자연생태체험, 가족건강회복 등 2. 정신장애인돌봄, 교육, 고용, 직업 재활 프로그램 운영 3. 화성시 관내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농촌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4. 건강한 농촌 공동체를 위한 어르신 뇌 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함께하는정신건강의학과의원(참가자 모집 및 선정/돌봄 프로그램 실행/교육프로그램지원/시설 업무 지원/사례관리) 수원여대식품영양학과(교육프로그램지원) 화성시토종씨앗도서관(프로그램지원) 화성시로컬푸드(생산물판매지원) 자연누리협동조합(교육프로그램지원) 마음샘정신재활센터(참가자모집) 신구대원예학과(교육프로그램지원) 을지대학교산학협력단(자원봉사지원) 한일농업농촌문화연구소한국축대표현의송(농촌복지자문위원)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봉담지소,이음과배움,성문밖학교등 |

| 농장명 | 활동유형 | 활동내용(2020년 초 사업계획서 기준) | | | 네트워크 |
|------------------------|----------------|------------------------|------------------------|---|--|
| | | 대상 유형 | 프로그램명 | 프로그램 내용 | 기관단체명(협력 분야) |
| 농업회사 법인 (주) 공세알 | 교육 | 정신 장애인 | 공세알 농사학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화군내 정신장애인 대상 농업활동체험 및 사회생활 경험 일부 농장 직접 고용 목표(22년부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장애인 활동 진행, 출퇴근, 사례관리 등) 강화지역자활센터, 강화교육지원청 |
| | | 장애/비장애 가족 | 공세알 가족농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화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연계 텃밭농사, 벼농사, 고구마 농사 프로그램 운영 | |
| | | 고령인, 귀농 귀촌인 | 고령농업인 및 귀농 귀촌인 농업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기계 작업 지원 등 | |
| (주)손수레 | 교육 고용 | 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직거래 및 체험용 다양한 작물 재배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대전지부(발달장애인 연계, 농업활동 진행) 벤엘의집(노숙인대상자활농장운영지도) 관저종합사회복지관 인터플레이, 숲엔생태농이연구소, 추자나무목공협동조합, 녹색리듬 |
| | | 고령자, 아동 | 고령자 대상 농업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관 고령인과 아동 1:1 매칭,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 | |
| | | 일반인 등 | 농장 치유프로그램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활동 포함 다양한 활동으로 치유농장 운영 | |
| 농업회사 법인 공주 아띠 | 교육 고용 기타 | 발달 장애인, 부모 | 발달장애인 대상 농업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관 소속 장애인 및 부모 대상 작물 체험, 가공 체험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주 장애인 복지관(소속 장애인 연계, 출퇴근, 사례관리 등) 대전교구카톨릭발달장애인부모회(심리 상담 교육 및 농업 활동 연계) 공주장애인복지관부모회(심리 상담 교육 및 농업 활동 연계) 세종장애인복지관, 공주대 특수교육 및 사회복지학과, 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등 |
| | | 발달 장애인, 부모 | 심리치유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작물 재배활동 통한 심신 안정, 심리상담 전문가 프로그램 운영 등 | |
| | | 다문화 가족 | 다문화 가족 농업 및 치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 및 자녀 지역사회 편견 해소 교육, 정원 치유 프로그램 | |
| 농업회사 법인 청양푸드 | 교육 | 발달장애인 | 발달 장애인 대상 농업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양군 발달장애인 부모회와 연계 토종작물 재배 및 절기별 작물 파종, 모종 만들어 심기, 음식 만들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장애인 농업활동 연계, 출퇴근 및 보조, 사례관리) 농촌문화체험연구회(청양군 발달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연계) |

〈참고 3-1〉 지역공동체 내에서의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 활용 예시

그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조력 활동을 하는 기관(마을만들기지원센터,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한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연합 조직, 농업회의소, 여성농업인센터, 주민자치회 등)이 사회적 농업에 관심을 갖고 활동할 경우에 협력 연결망 구축과 학습이라는 두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엿보인다.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강원도 횡성군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 주체는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이다. 이 영농조합법인은 ‘횡성군 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와 긴밀한 연대 관계에 있었고, 그 관계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인문학 운동을 전개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행인서원’이나 로컬푸드 실천을 전개하는 ‘횡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 협동조합’과 연결될 수 있었다. 그것을 배경으로, 창의적인 사회적 농업 실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었다.

강원도 원주시의 ‘농업회사법인 원주생명농업’의 네트워킹을 지원한 곳은 조례에 의해 사회적 경제 활동을 돕도록 규정되고 설치된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였다. 이 조직을 통해 돌봄 사업과 관련된 여러 단체들과 접촉하고 협력할 수 있었다.

전라북도 무주군에서는 정책사업에 참여하던 초기부터 무주군이 설치한 중간지원조직 ‘무주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조력을 받았다. 이 센터는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관내의 교육기관이나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과 사회적 농장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전라북도 완주군의 ‘사회적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그 회원 조직만 40개가 넘는 규모가 큰 사회적 경제 연합조직이면서 완주군의 농촌 정책에 공식·비공식 조력 활동을 다양하게 펼치는 지자체와 파트너 관계에 있으면서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곳이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비농업 분야의 발달장애인 지원 기관이나 청년 농민 단체의 협력 연결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전라북도 익산시에서는,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기 전부터 ‘익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자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사회적 농업 실천에 참여하도록 5개의 농업경영체를 설득하고,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및 학교 등의 기관과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사업 신청 전에 5개 농업경영체들과 함께 6개월 동안 여러 차례의 학습모임을 열어, 사회적 농업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등 조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경남 거창군에서는 2020년 들어 거창군마을만들기센터가 사회적 농장인 수승대 발효마을과 더불어 지역 내의 농업인,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기관 등 여러 행위자들과 네트워킹하고 학습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이 연결망에는 거창군농업회소도 긴밀하게 관여하고 있는데, 거창군 농업회의소 안에는 ‘사회적 농업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지역에 이처럼 협력 연결망이 구성되기 시작했는데, 사회적 농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실천이 펼쳐졌는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매개로 이루어진 실천은 크게 ‘농장 활동 프로그램’, ‘교육·포럼 등 학습’, ‘지역 내 인식 개선 활동’의 세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농장 활동 프로그램’은 사회적 농장에 참여자가 방문하여 농업활동을 직접 경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실천을 말한다. 장애인, 노인, 귀농인, 아동, 청년 농업인 등이 주된 참여자였다. 그 같은 농장 활동을 얼마나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얼마나 자주 했는지는 사회적 농장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²¹⁾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 농장들이 제출한 ‘추진실적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총량을 집계해보면, 사회적 농장 30개소에서 한 해 동안 80종의 ‘농장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개소당 2.7종의 농장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 셈이다. 연인원 1만 5,800명·일 이상의 참여 건수를 기록하였다(표 3-2). 돌봄과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농장활동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일부 사회적 농장들은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농장 활동 프로그램’ 외에도 사회적 농업에 관계하는 이들의 학습과 교육이 병행되었다. 최소 4,000명·일 이상의 추진 실적이 있었다. 강의, 토론회, 정기적으로 여러 차례 참여하는 연수 과정, 워크숍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아울러 지역 내 여러 기관·단체들이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대상자인 사회적 농장과 더불어 회의를 열거나, 함께 행사를 주관하거나,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활동도 전개되었다. 그 참여자 수를 정확하게 집계하기는 어렵고, 집합 행사가 여의치 않았던 2020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적 농업과 관련한 지역 내 네트워킹 활동은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와 같은 네트워킹 활동을 진행한 지역이 최소 10곳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21)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사태에 따라 계획대로 농장 활동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지 못한 점도 감안한다면, 아래의 추진 실적은 실제 역량이나 여건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보다 다소 적게 집계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표 3-2〉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농장 활동 프로그램 실적(2020년)

| 농장 | 농장활동 프로그램 명칭 | 참여인원 (명일) | 유형 | 비고 |
|------|---------------------------|-----------|-----------|------------------------|
| JWKW | ▶ 협업농장 운영 | 269 | 교육 | ▶ 귀농희망자 대상 농업실습훈련 |
| | ▶ 원예치료 프로그램 | 68 | 돌봄 | ▶ 고령 주민 및 협업농장 참여자 대상) |
| SHKW | ▶ 귀촌여성에서 농업인으로 정착 지원 | 150 | 교육 | ▶ 농업실습 훈련 |
| | ▶ 고령여성농업인과 함께 하는 밥상 | 896 | 돌봄 | ▶ 고령 주민 |
| SHGG | ▶ 농작물 생육단계별 관리 방법 교육 | 120 | 교육 일자리 | ▶ 정신장애인 재활 |
| | ▶ 농기계 및 장비 관리교육 | 140 | | |
| | ▶ 개인텃밭가꾸기 및 치유농장활동 | 400 | | |
| | ▶ 토장 및 작물보호 관리 | 400 | | |
| | ▶ 양봉 및 표고버섯 재배 이론 및 실습 | 120 | | |
| | ▶ 배추 재배, 천연액비제조, 토양미생물 관리 | 120 | | |
| | ▶ 흙테를 이용한 전통 추수 체험 | 30 | | |
| YHGN | ▶ 농업에 관심 갖기(화훼농장 체험) | 16 | 돌봄 | ▶ 장애인 아동 대상 체험 프로그램 |
| DSGN | ▶ 농산물 가공(장류, 김치 등) 실습 | 300 | 교육 |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대상 |
| | ▶ 농산물 가공 체험 | 100 | 교육 | ▶ 귀농인 |
| | ▶ 농작물 재배 과정 실습 및 푸드테라피 | 225 | 돌봄 | ▶ 중학교 돌봄반 발달장애 학생 |
| | ▶ 농산물 가공 및 먹거리 체험 | 300 | 돌봄 | ▶ 노인복지관과 협력, 고령 주민 |
| | ▶ 텃밭 농작물 재배 및 먹거리 체험 | 80 | 돌봄 | ▶ 지역아동센터와 협력, 아동 |
| SCGB | ▶ 과수작물 재배 실습 교육 | 800 | 교육 | ▶ 청년농업인 |
| | ▶ 반려식물 재배 체험 | 100 | 치유 | ▶ 보건의료원직원 등 |
| SYDJ | ▶ 농사체험 | 144 | 돌봄 | ▶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 |
| | ▶ 실내정원 가꾸기 프로그램 | 20 | 돌봄 | ▶ 고령자와 7세 아동이 짝을 이뤄 참여 |
| | ▶ 원예치유 프로그램 | 30 | 돌봄 일자리 | ▶ 노숙인 |
| YJSJ | ▶ 주말텃밭운영 | 256 | 돌봄 | ▶ 발달장애인 및 가족 |
| | ▶ 농작물 수확 체험 | 10 | 치유 | ▶ 귀촌 희망자 |
| | ▶ 원예활동 및 농작물 수확 체험 | 77 | 돌봄 | ▶ 발달장애인 및 가족 |
| | ▶ 원예작물 수확 및 가공 | 30 | 돌봄 | ▶ 치매 어르신 |
| | ▶ 마을 어르신 소일거리 프로그램 | 42 | 일자리 | ▶ 농장 청소, 제초, 장애학생 돌보기 |
| PAUJ | ▶ 계절별 농사 프로그램 | 145 | 돌봄 | ▶ 성인장애인(주로 발달장애) |
| WKIC | ▶ 농사학교 | 25 | 교육 | ▶ 정신장애인 |
| | ▶ 가족농장 | 144 | 돌봄 | ▶ 발달장애인 |
| THNJ | ▶ 허브테라피 교육 | 20 | 교육 | ▶ 발달장애인 |
| | ▶ 가드너 양성 교육 | 100 | 교육 | ▶ 발달장애인 |
| SGJN | ▶ 생태순환농사 교육 | 360 | 교육 | ▶ 청년귀농인 |
| | ▶ 단기 도농교류 프로그램 | 25 | 치유 | ▶ 청년귀농인 참여 |

| 농장 | 농장활동 프로그램 명칭 | 참여인원 (명일) | 유형 | 비고 |
|-------|--------------------------|-----------|-----------|-------------------------------|
| NHJN | ▶ 농산물 판매 프로그램 | 3600 | 교육 | ▶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여성, 귀농인 등 |
| | ▶ 푸드트럭을 활용한 아동청소년 공유 놀이터 | 25 | 돌봄 | ▶ 아동, 청소년 |
| GYJN | ▶ 야생화, 새싹보리 재배 | 2193 | 일자리 돌봄 | ▶ 고령 주민 |
| SJJN | ▶ 학교밖 청소년과 함께하는 농업활동 | 140 | 돌봄 | ▶ 학교밖 청소년 대상 농업체험 |
| KJWJB | ▶ 농업체험 프로그램 | 140 | 돌봄 | ▶ 발달장애아 및 가족 |
| SJWJB | ▶ 풍경농장 프로그램 | 60 | 돌봄 | ▶ 다문화가족 |
| | ▶ 농사활동 및 농업진로교육 | 120 | 돌봄 교육 | ▶ 지역 내 보호 청소년 |
| | ▶ 느린농부학교 | 255 | 교육 | ▶ 기반이 없는 지역 내 귀농 가구 |
| | ▶ 독거노인 농장활동 | 396 | 돌봄 | ▶ 독거노인 대상 원예치유, 요리 등 |
| | ▶ 꿈바라기 농장활동 | 168 | 돌봄 교육 | ▶ 성인 장애인 대상 농장활동 및 일상생활 관련 교육 |
| | ▶ 드림열매농장활동 | 360 | 돌봄 | ▶ 시설에 입주한 노인 대상 |
| SIJB | ▶ 원예/텃밭 체험 | 120 | 돌봄 | ▶ 영유아, 장애인 대상 원예 체험 |
| | ▶ 직업으로서의 농업 교육 | 120 | 교육 | ▶ 청년 장애인, 시설과 협력 |
| | ▶ 가족텃밭 원예 프로그램 | 120 | 치유 | ▶ 장애인 가족 |
| CGJB | ▶ 농작물 재배 프로그램 | 16 | 치유 | |
| SSMJB | ▶ 농작물 재배 실습 | 18 | 돌봄 교육 | ▶ 범죄피해자 대상 농장운영 교육 |
| | ▶ 농장활동 및 원예치료 | 35 | 돌봄 | ▶ 홀몸노인 대상 |
| JMJB | ▶ 농사체험, 농산물이용생활용품만들기 | 108 | 돌봄 | ▶ 특수교육센터 청소년 |
| | ▶ 농장에서 채소 수확 및 요리만들기 | 51 | 돌봄 | |
| | ▶ 반려식물 화분만들기 | 8 | 돌봄 | |
| SHCN | ▶ 자연구시 | 45 | 돌봄 교육 | ▶ 정신장애인 대상 농장 실습 |
| | ▶ 돌보는 농부학교 1 | 8 | 돌봄 | ▶ 정신장애인 청년 농장 체험 |
| | ▶ 돌보는 농부학교 2 | 40 | 교육 | ▶ 지역 청소년 |
| JGCN | ▶ 농사체험 프로그램 | 48 | 돌봄 | ▶ 발달장애인 및 가족 |
| EBCB | ▶ 농업교육 프로그램 | 160 | 교육 | ▶ 발달장애 청년 직업교육 |
| CJCB | ▶ 사회적 농부 프로그램 | 1032 | 교육 | ▶ 귀농 청년 농사교육 및 실습 |
| | ▶ 초등농사체험프로그램 | 256 | 돌봄 | ▶ 지역 아동 |
| JCCB | ▶ 치매어르신 농산물 가공 프로그램 | 49 | 돌봄 | ▶ 치매어르신 |
| | ▶ 창의농업 프로그램 | 49 | 교육 | ▶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농업 및 생활용품 만들기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실적 보고자료>.

주1) 사회적 농장의 명칭은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2) 농장에 따라서는 프로그램 참여자 수와 참여자 1인당 참여횟수를 병기하여 보고하지 않았다. 그 경우, 참여자 1인이 최소 1회 참여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4

사회적 농업 관련 법제 정비의 쟁점

1. 신법 제정을 전제로 할 경우

농촌에서 사회적 농업 실천을 비롯하여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해당 지역에 필요한 ‘돌봄 등의 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요청되는데, 그런 정책의 법률적 근거를 충실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예컨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중 일부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 그때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크게 두 갈래 경로가 가능하다.

첫째는 ‘사회적 농업’만을 다루려는 법률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지난 20대 국회에서 “사회적 농업 육성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되었으나 입법에까지 이르지 못했다.²²⁾ 둘째는 사회적 농업이 지역공동체에 바탕을 둔 실천으로서 지역사회 복지 영역이나 마을만들기 등의 여러 자생적인 활동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22) 사회적 농업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려는 당시의 움직임에서 법률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논의가 적지 않게 진행된 바 있다. 기본적으로는 2015년에 제정된 이탈리아의 “사회적농업법”이 중요한 참조점으로 작용하였다. 이탈리아의 “사회적농업법”과 2018년 “사회적 농업 육성법안” 발의안을 부록에 남겨둔다.

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활동을 촉진하려는 취지의 법을 제정하되 그 일부분으로 사회적 농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두 번째 경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 신법 제정을 전제로, 고려해야 할 법률 전체의 구조와 기본 구성 요소를 정리하고자 한다. 그를 위해 유사한 취지로 제안되었던 마을공동체 기본법안(진선미 등 14인 발의, 2017년 2월 24일),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안(홍문표 등 10인 발의, 2016년 12월 15일),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유민봉 등 10인 발의, 2016년 11월 18일) 등의 발의안들에서 공통된 구조적 특징과 구성 요소, 그리고 차이점 등을 고찰하였다<표 4-1>.

<표 4-1>에 정리한 법률발의안의 구성은, 최근 새로이 제정되는 다른 분야의 법률의 목적을 참고로 한다면, 법률의 목적, 용어의 정의, 원칙 또는 이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계획 제도의 도입 시 계획 수립 절차, 내용, 수립 주체에 대한 규정, 정부의 지원 시책 범위, 정책 추진체계(각급 수준의 정책위원회, 지원기관 설치/업무위탁) 등 최소한의 구성 요소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깊게 검토해야 할 쟁점을 뽑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법률의 목적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의 표현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구체적으로 사례를 열거하면서 규정할 것인지, 용어의 정의와 관련하여 ①‘지역공동체’ 또는 ‘마을공동체’의 공간적 범위(리, 읍/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②‘활성화’를 무엇이라고 정의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계획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즉, 지역공동체 수준에서 주민들이 수립하는 계획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을 것인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이라는 별도의 법정 계획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농촌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임의로 수립한 계획을 포함해, 내용적으로 적합하다면 ‘주민자치회의 마을계획’, ‘농발 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삶의질 계획’ 등 관계없이 인정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표 4-1> 세 가지 법률 발의안의 구성 비교

| 구분 |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안 |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
|-------------|--|--|--|
| 목적 [핵심어] | * 주민자치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주민의 자율적 해결 역량 강화, 지역사회 공동체 신뢰 증진] | * 농촌마을의 공동체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주민 스스로 마을발전 계획 수립 시행] | * 주민 행복 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 [자발적참여,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자립기반 조성] |

| 구분 |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안 |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
|--------------------|--|---|--|
| 기본이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 * 주민자치활동 * 마을공동체의 개방성, 다양성, 자율성, 독립성 * 주민 전체의 이익과 다른 마을공동체와의 조화, 국가 번영 | - | - |
| 용어 정의 | 마을, 주민,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마을공동체 기업 | 농촌, 농촌 마을공동체, 농촌마을만들기, 농촌공동체회사, 농촌재능기부 | 지역공동체,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공동체 조직, 지역공동체활동, 지역자원, 마을기업 |
| 책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체의 책무 *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 - | *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
| 원칙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 * 다양성 존중 *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균형 있는 지역발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율 * 개방성 * 상생 * 지역사회 기여 |
| 계획 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발전계획 수립 (통/리, 읍/면/동) * 지역계획 수립 (시/군/구, 시/도) * 중앙정부부처(행자부)의 기본계획 * 계획에 따른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마을만들기계획 * 농촌마을만들기계획을 시/군/구 수준의 계획(예: 농발계획)에 반영 * 지역계획 수립 (시/군/구, 시/도) * 중앙정부부처(농식품부)의 기본 계획 * 농촌마을만들기 계획에 대한 농식품부 및 지자체 재정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계획 수립 (시/군/구, 시/도) * 중앙정부부처(행자부)의 기본계획 * 계획에 따른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
| 지원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양성/지원 * 국공유 재산 활용 특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마을만들기 협약 이행에 필요한 지원 * 농촌공동체회사 운영 지원 * 농촌마을만들기 역량강화 * 농촌마을만들기 전문인력 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체 인적 역량 강화 * 지역공동체 관련 기관/단체/법인에 업무 위탁 *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특례 * 공공기관 우선 구매 |
| 추진체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및 시/도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 * 중앙정부(총리) 소속 마을공동체 중앙위원회 * 전담부서 설치 * 시/군/구 및 시/도 수준에 지원기관(마을공동체 지역지원센터) 설치, 업무위탁 * 행자부 통제하에 마을공동체중앙 지원센터 설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마을만들기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 지자체에 전담부서 설치 또는 전문위원 임명 * 시/도 및 시/군/구 수준에 지원기관(농촌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업무위탁 * 농식품부 통제하에 농촌마을만들기진흥원 설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및 시/도 지역공동체 위원회 * 중앙정부(총리) 소속 지역공동체 정책 위원회 * 지역공동체 정책 실무위원회(행자부) * 시/도 및 시/군/구 수준에 지원기관(지역공동체 지역지원센터) 설치, 업무위탁 * 행자부 통제하에 한국지역진흥원 설치 |
| 법률에서 언급한 기타 사업의 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체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마을공동체 기금 조성 * 마을공동체재단 * 마을상생협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개발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농촌재능기부 활성화 * 농촌마을만들기 협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업 설립/운영 * 지역공동체의 생활여건 개선 * 지역공동체 재단 설립/운영 * 지역공동체 기금 조성 * 지역공동체의 날 |

지원 사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령, ‘지역(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사회서비스 등 지역사회복지 영역에 국한할 것인가, 지역사회복지 영역에 국한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나열할 것인가(예: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돌봄, 아동/청소년의 학교 밖 학습과 돌봄, 사회적 농업, 재능기부 등 자원봉사활동)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추진체계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지, 즉, 중앙정부 수준에서 전국에서 일어나는 사업을 지원하거나 점검하고 감독할 준정부기관 혹은 위탁기관을 두게 할 것인가, 그 경우 행안부 등 타 부처와의 의견 조율이 가능할 것인가, 기초 및 광역 지자체 수준 지원기관(이른바, 중간지원조직 또는 조력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법조문에 명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2. 기존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할 경우

한편, 신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달라진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관련 법률 중 어떤 것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파악해야 한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 질법”으로 약칭)을 개정하는 전략이 우선은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여타의 법률(연구과제 착수보고 자료에 제시했던 법률들)에 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어업인삶의 질법”(2020년 8월 28일 시행예정 법률 기준) 제19조의 4(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조문을 고치고, 그 하위 시행규칙을 고쳐서 활용할 수 있는데, 현재 제19조의 4 ①항과 ②항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최소한의 근거가 있다.

〈참고 4-1〉 농어업인 삶의질 법 제19조의 4(농어업인들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업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법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에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지원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할 경우, 우선 검토해야 할 사항은 세 가지다.

첫째. 앞의 법률 제19조의4 ②항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지원 방법’ 등에 관해 규정을 농림축산식품부령(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재 시행규칙에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둘째. 앞의 법률을 고치고 시행규칙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계획제도’나 ‘정책추진체계’ 등을 풍부하게 구상할 경우, 현실적으로 모두 포함하기 어려울 것이어서 ‘신법 제정’ 전략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앞의 법률 ①항에 열거하고 있는 지원 대상 조직의 법인격 중에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적 농업 확산 전략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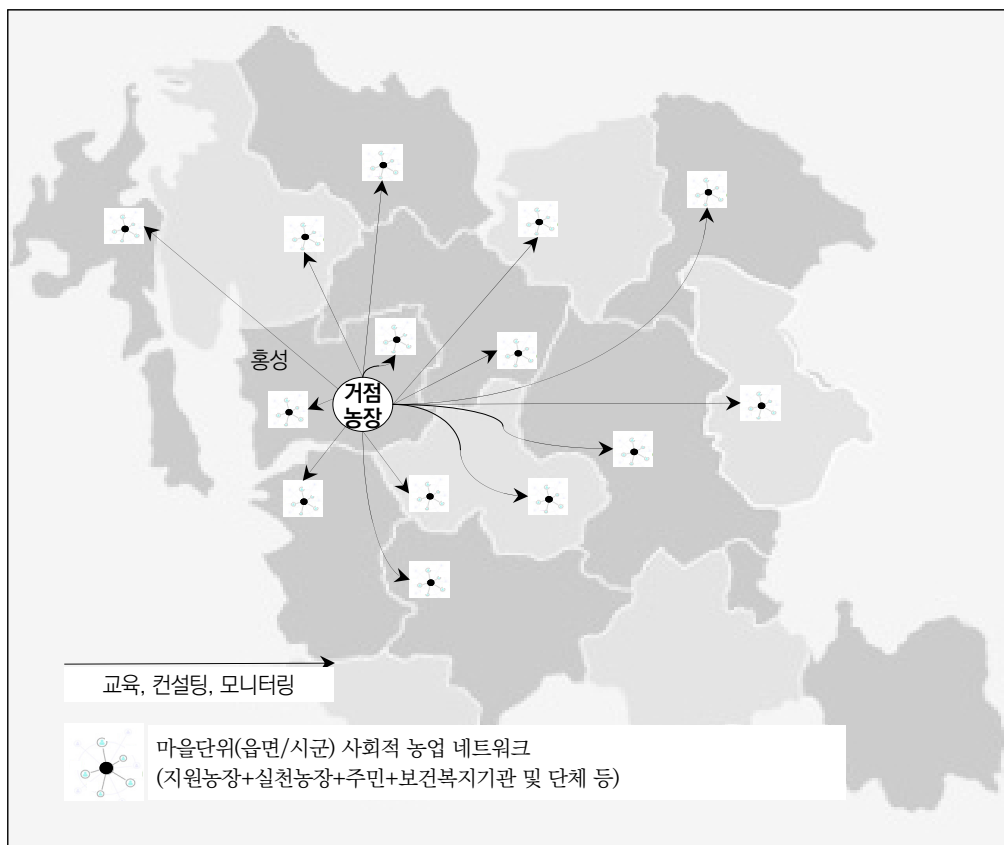
국내에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곳들의 경험과 아일랜드 케리 카운티 시범 프로젝트의 내용을 토대로, 지역공동체에 바탕을 둔 사회적 농업 추진 방안의 기초적인 윤곽을 구상할 수 있다.²³⁾ 현재로서는 일련의 ‘원칙들’에 가까운 것이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을 더 부가해서 완성할 뼈대가 될 수 있겠다. 그것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읍·면 혹은 시·군 단위에서 사회적 농업을 함께 실천할 여러 명의 농업인 그룹을 형성해야 한다. 둘째, 이들 농업인과 사회복지기관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보건복지 분야 기관 및 단체, 그리고 참여자가 될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아동 등의 가족이나 당사자 조직, 그리고 사회적 농업 실천에 조력할 기관·단체(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회적 경제 연합조직, 여성농업인센터, 주민자치회 등)가 작업반을 형성해 사회적 농업의 지역공동체-기반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 수립 과정에는 당연히 이들 작업반

²³⁾ 이탈리아와 같은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도 실험해 볼 필요가 있으며, 그런 사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정책이 이탈리아와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지역공동체에 바탕을 둔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을 한국에서 사회적 농업의 주류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상당한 실험과 변형과 기간이 필요할 듯하다.

구성원들의 '사회적 농업 학습과 교육훈련'이 동반되어야 한다. 셋째, 작업반을 중심으로 관계자들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분담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행한다. 실행 과정에서도 사회적 농업 실천농장의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꾸준하고 실질적인 학습과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그것에 관해서는 광역 단위의 거점농장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관하는 전문가 집단의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실행단계에서 상임 퍼실리테이터를 고용한다. 가급적 농업 현장을 이해하면서도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 지식을 겸비한 지역 주민 중에서 채용한다. 상임 퍼실리테이터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전국의 사회적 농업 실천농장들이 함께 경험을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모임을 꾸준히 개최하며, 조력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사회적 농업에 관해 정보와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한다.

〈그림 5-1〉 사회적 농업 거점 농장의 활동 범위(예시: 충청남도)



2. 지역공동체-기반 사회적 농업의 두 가지 모델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사회적 농업을 추진한다고 할 때 그 양상은 크게 두 종류로 전개될 수 있다. 따라서 두 종류의 모델을 제안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회적 농장들과 비농업 부문 행위자들이 협력 연결망을 구성한 토대 위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것과(아일랜드 케리카운티 사례 참고), 농업인을 포함한 여러 분야 행위자들이 협동조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을 구성해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면서 실천하는 것(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 참고)으로 구분할 수 있다.

2.1. 협력 연결망 모델

협력 연결망 모델은 사회적 농업 실천 주체로서 여러 개 사회적 농장(실천농장), 사회적 농장 활동 참여자 및 당사자 조직, 보건·복지·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기관(사회복지기관, 보건의료기관, 학교 등), 상임 퍼실리테이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혹은 사회적경제 조직 연합체 등의 조력 기관을 연결하는 구조이다. 이 같은 연결망 구조 그 자체로는 행정적 또는 재정적 책임이 부여되는 단위(예: 법인)가 되기 어려우므로 참여자 중 역량이 가장 높고 리더십을 갖춘 사회적 농장 한 곳이 대표를 맡는다. 관리 등 여러 측면의 실무를 담당해야 할 상임 퍼실리테이터는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조력기관(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 소속으로 두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표 사회적 농장의 소속으로 한다.

협력 연결망 모델의 사회적 농업 실천 유형별로 장단점이 존재한다. 돌봄의 경우 여러 사회적 농장에 참여자들이 분산 배치되는 방식이어서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역사회 안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이 정기적으로 사회적 농장을 방문하여 농장 활동에 참여한다. 그러나 농장활동 프로그램 수준을 뛰어넘는 돌봄이나 고용을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뒤따른다. 고용 유형은 경우에 따라서 간단한 일용

농업노동의 형식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분산 배치의 경우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을 살리는 모델인 만큼, 한 사회적 농장에서 장기적인 상근 농업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농업교육은 지역공동체 내에 직업훈련으로서 농업 교육을 귀농 청년, 발달장애인 등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훈련의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자가 농작업의 전체 주기 모든 활동을 경험하면서 일정한 수입까지 거두는 방식의 집중적인 농업교육을 실행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인적 자원 운용에 있어서 사회적 농업 실천과 관련한 전담 인력으로 상임 퍼실리테이터를 둔다.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할 수 있는데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읍/면 또는 시/군 수준에서 형성된 사회적 농업 협력 연결망 구성원들의 활동을 조율한다. 가령, 여러 유형의 장애인이나 경증 치매 노인을 각기 어느 사회적 농장에 배치할 것인지, 또는 배치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을 진행할 실무 책임을 맡는다.

둘째, 여러 사회적 농장에 참여하는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개인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고 면담하며 관찰한다. 가령, 발달장애 청년 A씨가 사회적 농장 ‘갑’에 주 2회 방문하여 농장활동을 하던 중 집에서 농장 ‘갑’까지의 거리가 멀어 불편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가까운 다른 사회적 농장에 연계하거나 교통수단을 마련한다.

셋째, 지역사회 내 농업인, 보건복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연락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공동체 내에서 네트워킹을 촉진한다. 이렇게 구축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획과 실천을 제안하는데 가령, H군 J면 소재 사회적 농장들이 H군의 치매안심센터와 J면 사회보장협의회 임원단을 접촉하여 J면에 거주하는 경증치매노인의 인지개선을 위한 사회적 농장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퍼실리테이터가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결과 사회적 농업이 확산되어 지역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농업에 관심을 갖는 농업인을 초대해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농업 현황을 설명하고, ‘거점농장’에 연결하여 교육, 학습,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게 안내한다.

이 과정에서 농업인은 지역공동체 내외에 거주하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

’ 사람을 초대하여 농장활동을 매개로 돌봄, 교육, 일자리 등을 제공한다. 가령, 발달 장애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원예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는 경증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으며,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 분야 인턴십 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다. 또한 고령 소농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주간 활동프로그램이나 농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청년 귀농인들에게 영농을 가르칠 수 있다.

협력 연결망 모델은 하나의 조직이 아닌 연결망 형태의 단위이기 때문에 사회적 농업 활동과 관련된 금전적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단일하게 유지하기 어렵다. 연결망 구성원들의 내부 논의를 거쳐, 경상비용 부담 및 외부로부터 오는 보조금 등의 경상비 지원금 분배에 대해 합의해 두어야 한다. 단, 상임 퍼실리테이터의 임금은 연결망 구성원들이 각출해서 부담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며, 공공 부문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보건복지 서비스 등의 제공기관이 지닌 주간활동 프로그램 예산을 사회적 농장에 지불할 수도 있는데(예: 주간활동 프로그램 위탁 시행), 이때 해당 제공기관이 참여자가 방문하는 사회적 농장에 직접 지불한다. 그러나 전체 연결망 구성원들 사이에 합의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표 5-1〉 협력 연결망 구성원의 역할 분담

| 기능 | 사회적 농장 | 퍼실리테이터 | 중간 지원조직 | 참여자 | 가족 당사자 단체 |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기관 | 비고 |
|----------------------------------|--------|--------|---------|-----|-----------|---------------|------------|
| 농장 활동 프로그램 기획 | ◎ | | ○ | ○ | ○ | ○ | ○: 의견 제시 |
| 농장 활동 프로그램 진행 | ◎ | 관찰 | | 참여 | 송영 | 송영 | |
| 참여자 관찰 | ○ | ◎ | | | ○ | ○ | ○: 관찰 및 기록 |
| 참여자 배치 및 프로그램 조정 | ○ | ◎ | | ○ | ○ | ○ | ○: 의견 제시 |
| 농장 활동 프로그램 모니터링 | ○ | ◎ | | ○ | ○ | ○ | ○: 의견 제시 |
| 농장 활동 프로그램 평가 | ○ | ○ | ◎ | ○ | ○ | ○ | ○: 의견 제시 |
| 지역공동체-기반 사회적 농업 계획 수립, 중장기 전망 확립 | ○ | ○ | ◎ | | ○ | ○ | ○: 의견 제시 |
| 관계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공유 및 학습 | 참여 | 참여 | ◎ | | 참여 | 참여 | |

주: ◎는 해당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할 구성원을 표시한 것이다.

2.2. 협동 조직 모델

협동 조직 모델에서는 여러 명의 농업인, 사회적 농장 활동 참여자 및 당사자 조직, 보건복지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기관(사회복지기관, 보건의료기관, 학교 등), 기타 다양한 지역공동체 내부의 조직 등이 출자하여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조직 형식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이유는, 법률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자격을 인정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드시 사회적 협동조합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원이 농업인들로만 구성될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그러나 가급적 비농업 부문의 행위자도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이 바람직하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 농업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 소유 혹은 임차 측면에서 제도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농업법인에 관한 법령 개정을 통해서만 완전히 해소할 수 있으므로 중장기 과제로 남는다. 단기적으로는 영농조합법인에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나 법인도 준조합원으로 참여하거나, 그들도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 형태로 사회적 농업 협동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회사법인의 상법상 법인 형식은 주식회사보다는 유한회사의 형태로 하고 정관에 '1인 1표의 원칙'을 두어 협동조합과 유사하게 민주적 운영의 원리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협동조직이 상임 퍼실리테이터를 고용하여 직접적인 농장 활동 외의 여러 측면 실무들을 맡는다. 기본적인 역할은 앞의 '협력 연결망 모델'에서 제시한 것과 동일하다. 이 협동조직은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혹은 정관상에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을 명시하여 조정한 농업회사법인 등이 유력한 조직 형식이 된다.

지역 내의 보건복지 및 교육 관련 기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의 조력 기관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 협동조직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협동 조직 모델은 상대적으로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결집해 하나의 조직 단위에서 운영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 관리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비교적 큰 규모의 사

회적 농장을 갖추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고용이나 장기간의 집중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에 유리하다. 또한 법인격을 지니는 하나의 조직 단위여서, 외부 기관이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식적인 계약·협약·재정 지원 등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협동 조직을 설립하는 데에는 출자자들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어서, 초기 설립 과정이 쉽게 진행되기 어렵다.

이 모델의 인적 자원 운용 측면에서는 상임 퍼실리테이터를 협동 조직의 직원으로 두며, 농업활동은 여러 농업경영체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 조직이 보유한 농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협력 연결망 모델’과 다른 점이다. 물적 자원 운용 측면에서는 자산, 경상비용, 수입 등의 모든 흐름이 하나의 조직 내부에서 완결되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

3. 추진 전략

3.1. 농촌 지역공동체 안에서 협력 연결망 형성

농촌 현장에서 형성되어 확장되고 있는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결사와 다양한 협동조직 활동의 흐름과 연결하여,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인 사회적 농업 확산을 촉진하는 전략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 지원사업만을 유일한 인센티브로 삼아 사회적 협력 연결망 구성을 촉진할 수는 없다. 즉, 정부 지원사업을 받기 위한 서류상의 협력 연결망이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 연결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활동하는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사회적 경제 조직 연합, 거점농장 등 조력 기관들이 지역공동체 내에서 농업인, 비농업 부문 보건·복지·교육 분야 기관, 사회적 농업 참여자 당사자 조직 및 가족 등과 간략한 ‘지역공동체 사회적 농업 계획’을 준비하는 포럼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약간의 비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계획’에는 사회적 농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농업인, 농장활동 참여자, 보건복지 및 교육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분담해야 할 역할, 활동의 규모, 일정 등이 포

함되게 한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선 선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바람직하게는, 그 ‘계획’에 따라 사회적 농업 실천 프로그램을 소규모로 운영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험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주군 안성면 공동체지원센터는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을 신청할 농업경영체들과 사회복지기관 등을 사전에 조직하는 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²⁴⁾ 타 부처가 농촌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농림축산식품부의 타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사회적 농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지역에 홍보하고 권장한다. 이때, 연대해야 할 중요한 조직이나 단체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조직 연합체, 주민자치회, 농업회의소 등이다.

이들 조력기관이 사회적 농업 협력 연결망을 지역공동체 안에 형성하는 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무주군 안성면 공동체지원센터의 활동을 예로 들어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한다<표 5-2>. 관계자들 사이의 회의 및 모임을 촉진하며, 해당 지역 안에 사회적 농업 실천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을 만나 안내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 기관·단체에 도움과 협조를 요청하며, 사회적 농장에서 농장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실무 차원에서 지원하기도 하며, 농업인들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서류 작업을 지원하며, 사회적 농업 실천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여러 행위자들의 자체 모임을 촉진하는 등의 활동이라 할 수 있겠다. <표 5-2>는 무주군 안성면 공동체지원센터가 2019년 한해 동안 수행했던 여러 활동을 기록한 보고서 중에서, 사회적 농업 실천을 지원했던 팀의 주요 활동만을 옮겨온 것이다.²⁵⁾

24) 익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3개의 농업경영체를 별도로 네트워킹하여 농식품부 지원사업 신청 전에 자발적인 학습 모임을 운영한 바 있다. 또 다른 예로는 거창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원주생명농업, 임실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강원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은 사회적 농장, 사회적 농업에 관심 있는 농업인, 사회복지기관 등이 모여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의견을 모으는 토론회나 연속 세미나 등을 개최하였다.

25) 이 보고서에서 안성면 공동체지원센터는 한해 동안 총 11개의 사업을 추진했다고 기록했는데, 사회적 농업과 관련된 활동이 그중 하나다.

〈표 5-2〉 무주군 안성면 공동체지원센터의 사회적 농업 관련 지원 활동(2019년)

| 시기 | 활동 | |
|----|---|---|
| | 연결망 형성(회의, 정보교류 등) | 사회적 농장 지원(교육, 문서작성 등) |
| 1월 | ▶ 밴드관리/자원봉사자(복지원예사)관리 | ▶ 결과보고서 및 평가서 준비 ▶ 농가별 프로그램 계획서 제출 ▶ 대외용 사업계획서 작성 |
| 2월 | ▶ 전국 사회적 농업 협의체 회의 참석 ▶ 솔로몬지역아동센터, 호룡불, 지역자활센터 방문(소식지 전달 및 사업내용 공유) ▶ 무주교육지원청 방문(서비스대상자 협조 요청) ▶ 드림마을 방문(세부프로그램 협의) ▶ 전라북도 담당 사무관 방문(정보 공유) ▶ 밴드관리/자원봉사자(복지원예사) 관리 | ▶ 교육실행계획서 작성 및 배포 ▶ 사회적 농업 농가 맞춤형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가 동행 방문 ▶ 사회적 농업 교육(농가 대상, 1차) ▶ 사회적 농업 교육(농가 대상, 2차) 및 컨설팅 |
| 3월 | ▶ 전국 사회적 농업 협의체 회의 참석 ▶ 무주군 사회적 농업 협의체 및 대표자 회의(사업계획 공유 및 관계자 업무분담 논의) ▶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소속 단체 방문(2018년 무주군 사회적 농업 결과보고서 공유) ▶ 특수교육지원센터 관계자와 농가 방문(학부모동아리 및 방학 프로그램 연계 건 관련 논의, 호룡불마을/반햇소) ▶ 무주교육지원청 방문(교육계획서 제출 및 서비스 대상자 모집 홍보) ▶ 특수교육지원센터 관계자와 농가 방문(학부모동아리 및 방학 프로그램 연계 건 관련 논의, 진원반디길/정원산책) ▶ 전라북도 도청 관계자 방문(사회적 농업 활성화 방안 논의) ▶ 밴드관리/자원봉사자(복지원예사) 관리 | ▶ 개인정보동의서 양식 제작 ▶ 사회적 농업 교육(농가대상, 3차) ▶ 사회적 농업 교육(농가대상, 4차) |
| 4월 | ▶ 전국 사회적 농업 협의체 회의 참석 ▶ 무주 사회적 농업 실천 농업경영체 대표자 회의(4월 진행사항보고 및 예산 논의) ▶ 호룡불 농가 미팅(프로그램 관련 회의 및 예산 논의) ▶ 서비스 참여자 모임 '해노리팀'과 회의(프로그램 참여 권유) ▶ 드림마을 프로그램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전라일보, 무주신문) ▶ 복지원예사 강사 미팅 및 농가 라운딩 ▶ 자원봉사 그룹 회의 ▶ 밴드 업그레이드 및 자원봉사자 관리 | ▶ 진원반디길 농장 프로그램 진행(1회) ▶ 정원산책 농장 프로그램 진행(2회) ▶ 반디농장 프로그램 진행(1회) ▶ 변경사업계획서 작성 |
| 5월 | ▶ 전국 사회적 농업 협의체 회의 참석 ▶ 무주팜앤씨 대표자 회의(일정 보고 및 사후관리 논의) ▶ 무주군 사회적 농업 협의체 회의 진행 ▶ 반햇소 자원봉사자 모임 회의(상반기 프로그램 진행 논의) ▶ 무주교육지원청 체험 시연(사회적 농업 소개 및 프로그램 시연) ▶ 무주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관계자 회의(적상/부남중학교 참여) ▶ 밴드 업그레이드 및 자원봉사자 관리 | ▶ 진원반디길 농장 프로그램 진행(2회) ▶ 정원산책 농장 프로그램 진행(2회) ▶ 반디농장 프로그램 진행(2회) ▶ 반햇소 농장 프로그램 진행(3회) ▶ 리플렛 시안 및 홍보 현수막 작성 |
| 6월 | ▶ 전국 사회적 농업 협의체 회의 참석 ▶ 무주군 사회적 농업 협의체 대표자회의(프로그램 진행방향 논의) ▶ 사회적 농업 홍보(무주산골영화제 촌락마켓 행사장) ▶ 맨드 업그레이드 및 자원봉사자 관리 | ▶ 진원반디길 농장 프로그램 진행(2회) ▶ 정원산책 농장 프로그램 진행(1회) ▶ 반디농장 프로그램 진행(2회) ▶ 반햇소 농장 프로그램 진행(4회) ▶ 데코용 홍보물 제작 |

| 시기 | 활동 | |
|-----|--|--|
| | 연결망 형성(회의, 정보교류 등) | 사회적 농장 지원(교육, 문서작성 등) |
| 7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사회적 농업 협의회 회의 참석 ▶ 사회적 경제 박람회 참여 ▶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 인식 콘서트 참석 ▶ 밴드 업그레이드 및 자원봉사자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원반디길 농장 프로그램 진행(2회) ▶ 정원산책 농장 프로그램 진행(1회) ▶ 반디 농장 프로그램 진행(1회) |
| 8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사회적 농업 협의회 회의 참석 ▶ 무주군 사회적 농업 협의회 회의(프로그램 진행상황 공유 및 2020년 사업 방향 논의) ▶ 특수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 농가 라운딩(프로그램 전 농가 시 설점검 및 일정 논의) ▶ 대표자 회의(프로그램 내용 공유 및 예산 논의) ▶ 특수교육지원센터 평가회의(여름방학 프로그램 평가) ▶ 무주군 내 네트워크 그룹 면담(귀농귀촌협의회: 무주군사회적 농업 협의회 회의 참석 관련) ▶ 경상남도청 관계자 방문 회의(무주군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공유) ▶ 밴드 업그레이드 및 자원봉사자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원반디길 농장 프로그램 진행(2회) ▶ 정원산책 농장 프로그램 진행(1회) ▶ 특수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진행(장애 아동 차량탑승 관리, 프로그램 모니터링) |
| 9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사회적 농업 협의회 회의 참석 ▶ 진원반디길 농장 대표자 회의(2020년 사업 방향 논의) ▶ 농가 회의(2020년 사업방향 논의, 사회적 농업 지속 및 무주팜앤씨 티 승계 여부 논의) ▶ 교육용 설명 ppt 작성 ▶ 특수교육지원센터 2020 프로그램 회의(2020년 사업 방향, 농가 프로그램 연중 실습 희망, 반햇소 직업프로그램 연중 실습 희망, 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체험 프로그램 희망) ▶ 귀농귀촌협의회 대상 설명회 진행(무주군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공유 및 2020년 사업계획 안내) ▶ 무주군 농업인대학 설명회 진행(무주군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공유) ▶ 사회적 농업 포럼 참여 및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참석 ▶ 사회적 농업 관심농가 설명회(피그말리온, 흑염소농장, 바람개비, 딸기학교 등을 대상으로 무주군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공유) ▶ 사회적 농업 설명회 지원(해빌캠핑장) ▶ 밴드 업그레이드 및 자원봉사자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원반디길 농장 프로그램 진행(2회) ▶ 정원산책 농장 프로그램 진행(3회) ▶ 반디 농장 프로그램 진행(1회) ▶ 반햇소 농장 프로그램 진행(2회) ▶ 변경계획서 작성 |
| 10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사회적 농업 협의회 회의 참석 ▶ 무주군 사회적 농업 협의회 회의 진행(전국협의회 회의 내용 공유 및 하반기 프로그램 공유) ▶ 강의자료 정리 및 자료집 제작 ▶ 세미나 실행계획서 작성 ▶ 사회적 농업 설명회 농가 방문(사회적 농업 참여 홍보 및 사업계획 안내) ▶ 지역자활센터 네트워크 회의 ▶ 사회적 농업 세미나 교재 제작 ▶ 주민교육 세부계획서 작성 ▶ 협의회 회의 PPT 작성 ▶ 세미나 진행 ▶ 밴드 업그레이드 및 자원봉사자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원반디길 농장 프로그램 진행(2회) ▶ 정원산책 농장 프로그램 진행(5회) ▶ 반디 농장 프로그램 진행(1회) ▶ 반햇소 농장 프로그램 진행(2회) ▶ 바람개비 딸기학교 방문(2020년 사업 계획서 작성 논의) ▶ 2020년 사업계획서 작성 ▶ 건설팅(반햇소 농장 프로그램 모니터링) ▶ 반햇소 농장 홍보 영상 촬영 |

| 시기 | 활동 | |
|-----|---|---|
| | 연결망 형성(회의, 정보교류 등) | 사회적 농장 지원(교육, 문서작성 등) |
| 1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사회적 농업 협의회 회의 참석 ▶ 세미나 실행계획서 작성 ▶ 정원산책 농장 프로그램 평가회(2019 프로그램 종료 후 농가와 참여자 기관 합동 평가회) ▶ 세미나(무주군 사회적 농업 활성화 방안 모색) ▶ 주민교류(지역 내 참여농가와 대상자, 주민이 함께 교류하는 김장담그기 및 나눔 행사) ▶ 주민교류 보도자료 발송 ▶ 전국협의회 분과모임 실행계획서 작성 ▶ 세미나 결과보고서 작성 ▶ 밴드 업그레이드 및 자원봉사자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산책 농장 프로그램 진행 ▶ 반햇소 농장 프로그램 진행(3회) ▶ 반햇소 농장 판매활동 모니터링(적상중, 부남중 학생들이 생산한 제품 판매 및 기부) |
| 1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사회적 농업 협의회 회의 참석 ▶ 소식지 발행 ▶ 완료보고서 발행 ▶ 밴드 업그레이드 및 자원봉사자 관리 | |

자료: 무주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2020).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이처럼 지역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농업 협력 연결망이 형성되는 것을 촉진하도록 지원사업을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가령,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여, 정부 보조사업 신청 자격을 현행의 ‘비농업 부문 기관·단체와의 협력 연결망 갖춘 농업경영체’에서 ‘5개 이상의 농업경영체가 참여하며 비농업 부문 기관·단체가 함께 구성한 협력 연결망’으로 설정할 수도 있겠다. 보조사업자 선정 시 단독 경영체가 아니라 참여하는 농업경영체가 5개 이상인 경우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우선 선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기존에 사업을 시행하는 사회적 농장들에게도 인근의 농업인 등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권장하고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한다.

한편, 협력 연결망 형태가 아니라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등 여러 행위자가 공동으로 출자한 단일 조직이 농장을 보유(소유 혹은 임차)한 상태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것도 장려한다. 처음부터 협동조직을 설립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되므로, 협력 연결망 형태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한 단위들이 진화하여 협동조합 등을 설립하여 더 큰 규모로 실천하는 부분에 대해 경상비를 추가 지원한다. 이런 과정에 관여하고 도움을 줄 조력기구(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사회적 경제 연합조직 등)를 확인하고, 이들 조력기구의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중앙정부 수준의 정책사업이 필요하다.

3.2. 사회적 농업을 촉진할 다양한 수준의 교육·학습 지원

사회적 농업을 준비하는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에 ‘지역공동체 기반’의 관점을 강화하여 반영하는 일이 중요하다. 현재는 농정원이 위탁 공모제 형식으로 진행되는 사회적 농업 집체교육, 농식품공무원 연수원에서 기획 진행되는 집체교육,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농업 소개 교육 정도가 있으나 교육내용 편성이 프로그램 운영 기관이나 개별 강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별도의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적 농업’ 교육 과정을 마련해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지역공동체 사회적 농업’ 준비 과정에서 이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적절한 단위(거점농장이나 사회적 농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나 사회적경제 연합 조직 등)를 통해 운영케 한다.

사회적 농업 실천 농업인 등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등 당사자들(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교육 과정을 정형화하여 제공할 필요도 있다. 거점농장들과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이때 교육내용상 강조되어야 할 것은 ‘지역공동체 기반’이라는 관점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면할 때 견지해야 할 관점 및 스킬’이다.²⁶⁾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의 교육훈련, 컨설팅 등의 활동을 점검하고 ‘거점농장 직무역량 강화’ 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이 과정은 교육훈련 활동을 담당할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높은 수준의 학습이 요청되므로, 전문 연구자와 거점농장 담당자들이 밀도 높은 세미나를 여러 차례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각종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콘텐츠(도서, 텍스트 자료, 영상 등)를 개발하고 배포할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현재로서는 거점농장과 한국농어촌공사 공동체팀의 몫으로 남겨져 있는 듯하지만,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6) 가령, 아일랜드에서 사회적 농업 관련 프로젝트들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Social Farming Ireland는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등 여러 관계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형식으로는 책자와 동영상 등이 있으며, 내용으로는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일반적 소개, 사회적 농업 참여 대상자의 특성(정신장애, 지적장애, 청년, 학습장애 청소년 등)별로 달라질 수 있는 사회적 농업 실천의 구체적 양상이나 이점 등에 대한 소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이 참고할 수 있는 핸드북(handbook) 같은 것들이 있다.

3.3. 사회적 농장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측면 과제

무엇보다, 사회적 농업 실천 농장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선은 사회적 농장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공공 부문의 대가 지불 메커니즘이 제도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아직은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경영체의 수가 아주 적고, 사회 전반에 걸쳐 인식 저변이 두텁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 수준의 법령에 기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듯하다. 돌봄농업을 사회보험 제도 안으로 통합한 바 있었던 네덜란드의 제도화 과정을 참고할 만하다.²⁷⁾ 사회보험 제도에 통합되던 시점에서 네덜란드의 돌봄농장 수는 200여 개가 넘었으며,²⁸⁾ 그 무렵에 사회보험 제도의 큰 변혁이 있어서 개인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과정에서 네덜란드의 돌봄농장은 엄격하게 마련된 인증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받았고, 그 같은 인증에 필요한 각종 교육과 컨설팅이 진행되었다. 이런 방식의 제도화에 이르기까지는 사회적 농업 실천이 크게 확산됨과 더불어 한국사회 전체에 걸쳐 인식 저변이 두터워져야 할 듯하다.

그때까지 단기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농장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²⁹⁾ 우선, 사회적 농장이 영농활동과 사회적 농업 실천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입을 얻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장애인, 노인 등 돌봄농업 분야에서 사회적 농장의 프로그램에 참여자로부터 대가를 지불받을 수 있는 중앙정부 수준의 제도는 거의 없다. 다만,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참여자들의 주간활동을 사회적 농장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은, 지역에 따라 사례에 따라 부분적으로 가능하며 그런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 이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접 강력하게 확산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해도 여건이 성숙해야 하고 꽤 오랜 시일이 필요할 듯하다. 보건

27) 근년에는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보조금으로 보상하는 체계로 바뀌었다.

28) 네덜란드 전체 농가 수가 6만 5,000여 호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9) 이와 관련해서, 사회적 농업과 연계할 만한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사업들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연계 형식 측면에서 추진 방향을 제안한 연구로는 “김정섭 외(2019b),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 부처 협업 방안》, 농림축산식품부”를 참고. 이 보고서에서 개괄적으로 검토한 중앙정부 사회보장사업 외에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정책사업이 사회적 농업 실천과 결합될 때 사회적 농장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반드시 정책사업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농촌 지역에서 전개되는 사회적 경제 실천과의 연대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복지부, 교육부, 농식품부 등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가 협의해야 할 사안이지만, 실무 차원에서 보면 지역 현장의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결정 권한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공동체 수준의 협력 연결망을 형성하고 그곳에 비농업 부문 기관·단체가 참여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다시 한번 중요한 과제가 된다. 우선은 그런 방식으로라도, 사회적 농장이 운영하는 ‘농장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평소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부터 비용을 지불받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접 개입하여 그런 여건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지역 수준에서는 ‘프로그램 위탁’의 형식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사회적 농장이 협약을 맺어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경비의 일부분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 영역의 사회보험제도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를 개선한다면, 사회적 농업 실천 집단이 참여할 기회를 만들 여지가 있다.³⁰⁾ 그 전제 조건은 사회적 농장 수가 현재보다 더 많아져야 하며, 사회적 농장에서 제공하는 농장활동 프로그램, 교육, 일자리 등의 수준이 설득력을 갖출 만큼 상당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영농활동을 통해 수입을 얻는 것은 농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영체로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사회적 농장의 경우 특별히 ‘윤리적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차별화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도화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익산시에서는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31조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조항을 마련해두었는데, 그것이 지역의 사회적 농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자활기업 형태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은 모두 익산시 학교급식체계에 우선구매 방식으로 공급된다.

돌봄농업이 국가의 공적 돌봄체계 중 한 부분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네덜란드나, 노동통합 혹은 돌봄을 제공하는 정부 정책 전달체계의 핵심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30) 이 논의의 배경에는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사업 현황에 관한 선先이해가 필요하다. 사회적 농업의 관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유애정)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도’(고명균)를 검토한 글을 각각 <부록 4>과 <부록 5>에 수록하였다. 이 두 개의 원고는 2020년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두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자 등이 모여 다섯 차례 비공식적으로 개최했던 ‘농업-복지 연계 연속 세미나’에서 발표되었던 글이다.

제도를 마련하고 그 바탕 위에서 사회적 농업을 지원하는 이탈리아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아직 사회적 농업 실천에 대한 공공 부문의 ‘대가 지불 메커니즘’이 공식화되어 있지 않다. 이는 지역공동체에 바탕을 둔 사회적 농업 실천을 주장하는 몇 가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지역공동체에 전승되는 호혜의 문화와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로부터 사회적 농업 실천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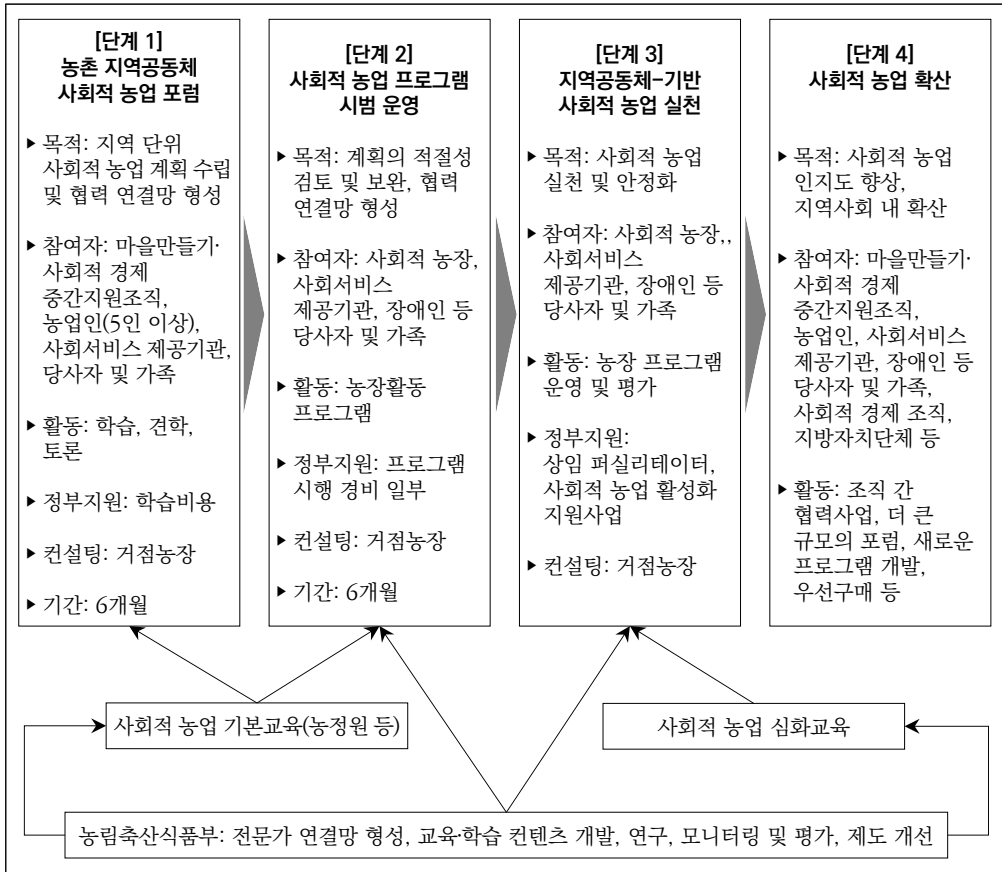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경영체로서는 공공 부문의 제도에 기반한 ‘대가 지불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충분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제약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회적 농업 실천이 단순히 국가의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일부분으로 자리 매김하는 것은 아니므로, 장래에 ‘대가 지불 메커니즘’이 제도화된다고 해서 사회적 농장의 경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농장이라고 해도 기본은 농업경영체이므로, 농업생산활동은 여전히 사회적 농장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3.4. ‘지역공동체-기반 사회적 농업’ 추진 전략의 단계별 요소

3.4.1. 농촌 지역 수준에서 추진 단계

앞의 논의를 종합하여, 농촌 지역 현장의 관점에서 실행해야 할 ‘지역공동체-기반 사회적 농업’ 추진 방안을 요약·제시하면 <그림 5-2>와 같다. 각 단계별로 지역에서 관련 행위자들이 모여 연결망을 구성케 하며, 단계마다 수행해야 할 활동의 목적과 내용을 구분하였다.

〈그림 5-2〉 농촌 현장의 관점에서 본 지역공동체-기반 사회적 농업 추진 전략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역 안에서 농업인들을 포함하여 여러 주체들이 사회적 농업을 접하고 논의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드는 일이다[단계 1]. 즉, 일종의 ‘포럼’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농촌 지역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된 계층을 포용하고 농업 활동에 관여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이 모임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지역 내 협력 연결망 형성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이 모임은 여러 차례 지속적인 ‘학습’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 또 이 모임에 참여하는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서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행위자일수록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가능하다면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이나 사회적 경제 연합조직이 이 과정을 중재하고 주도하는 것이 좋다. 이들 조직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소통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1단계 과정의 계속된 ‘포럼’ 형식의 모임을 통해 목표해야 할 것은 해당 지역에서 사회적 농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계획으로 수립하는 일이다.

그리고 나면, 수립한 지역 단위 사회적 농업 계획에 맞춰 시범 프로젝트를 소규모로 진행해 볼 수 있다[단계 2]. 소규모 시범 프로젝트의 속성상 참여자가 몇 차례 농장을 방문하여 농업활동을 경험케 하는 방식의 ‘농장활동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같은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공동체 내 여러 행위자들이 공동으로 수립한 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보완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약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역 단위의 사회적 농업 추진 계획을 보완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

‘지역공동체-기반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세 번째 단계에 들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중요해진다. 본격적으로 지역의 여러 참여자들이 여러 농가들과 결합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므로, 인적·물적 자원이 더욱 많이 필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임 퍼실리테이터’가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 부문이 여건을 만들어주는 일이다. 활동비 혹은 임금을 보장하는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3.4.2. 중앙정부 수준에서 본 단계별 지원 전략

‘지역공동체-기반 사회적 농업’을 추진하려 할 때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의 관점에서는 지원 정책 수단을 단계별로 재편하거나 새로 마련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앞 절에서 제안한 단계별 추진 절차는, 사회적 농업을 실천할 당사자들이 농촌 현장에서 수행하고 경험해야 할 과정들을 모형화한 것이라면, 그런 실천을 정책 수단을 통해 촉진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의 실행계획도 서로 상응하는 구조로 만들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5-3〉 ‘지역공동체-기반 사회적 농업’ 촉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단계별 지원 전략

| 구분 | [단계 1] 농촌 지역 공동체 사회적 농업 포럼 | [단계 2]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시범 운영 | [단계 3] 사회적 농업 실천 |
|--------------|--|--|---|
| 목적 | ▶ 지역에 사회적 농업을 인지하고 논의할 연결망 형성 | ▶ 지역공동체-기반 사회적 농업 시범프로젝트 계획의 보완 ▶ 지역공동체 내 사회적 농업 협력연결망 형성 | ▶ 사회적 농업 실천 및 지역사회 내 인지도 제고 |
| 지원대상 | ▶ 사회적 농업에 관심을 지닌 농업인(5인 이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잠재적 사회적 농업 참여 당사자 및 가족,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 등 | | ▶ ‘사회적 농업 협력 연결망’ 혹은 ‘사회적 농업 협동조직’ |
| 지원내용 | ▶ 포럼활동비용(학습, 토론, 견학 등) ▶ 사회적 농업 관련 전문가 및 지식정보 | ▶ 사회적 농장 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드는 경상비 ▶ 참여자 학습 및 네트워킹 활동에 드는 경상비 | ▶ 사회적 농장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현행, 사회적 농업활성화 지원사업) ▶ 상임 퍼실리테이터 활동비(인건비) |
| 지원기간 | ▶ 6개월 | ▶ 6개월 | ▶ 3~5년 |
| 성과목표 | ▶ 지역공동체-기반 사회적 농업 시범프로젝트 계획 ▶ 시범프로젝트 참여 의향자 명단 | ▶ 지역공동체-기반 사회적 농업 실천 조직 형성 ▶ 본격적인 사회적 농업 계획 수립 | ▶ 지역 내 사회적 농업 실천 확대 (농업인 수, 다양한 참여자) ▶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 관심과 협력 여건 도출 |
| 지원사업 시행자 | ▶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 또는 농업인,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 | ▶ ‘사회적 농업 협력 연결망’ 혹은 ‘사회적 농업 협동조직’ |
| 모니터링 및 조언 | ▶ 농식품부에서 권하는 관련 전문가 ▶ 거점농장 | | |
| 기타 | ▶ 중앙정부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회적 농업 관련 집체 교육 참여 권유 | | ▶ 전국의 여러 주체들이 모이는 협의체(전국포럼) 운영 |

이상과 같이, 농촌 현장에서 지역공동체-기반 사회적 농업이 추진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사업도 그에 맞게 조정하여 추진하더라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지식 및 정보 측면에서의 지원이다. 사회적 농업이 농업과 보건복지 등 여타 부문의 연결과 섞임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식이나 정보 수요가 적지 않다. 따라서 지역공동체 단위에서부터 전국 수준으로, 사회적 농업 관련 경험자와 미경험자를 아울러 다양한 내용의 지식 및 정보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앙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표 5-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5-4〉 사회적 농업 경험 여부에 따른 교육 지원

| | 사회적 농업 미경험자 대상 | 사회적 농업 경험자 대상 |
|-------------|--|---|
| 농촌 지역공동체 수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체 기반 계획 수립 및 지역 내 사회적 농업 확산을 위한 학습 - 형식: 학습동아리, 포럼, 선진지견학, 초빙강연 - 시행주체: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기존 사회적 농장, 거점농장, 사회적경제조직 등 연합체 등 - 내용: 사회적 농업의 기본 이해, 지역 내 계획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체 기반 계획 수립 및 지역 내 사회적 농업 확산을 위한 학습 - 형식: 학습동아리, 포럼, 선진지견학, 초빙강연 - 시행주체: 기존 사회적농장, 거점농장 - 내용: 지역 내 확산 계획 수립 ▶ 사회적 농업 농장활동의 기획과 실행에 관한 기술(skill) 향상 - 형식: 타 지역 사회적농장과의 경험공유, 세미나, 초빙강연 - 시행주체: 기존 사회적농장, 거점농장 - 내용: 사회적 농장활동 기획 및 실행요령 |
| 전국 수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 형식: 집체식 교육과정, 토론회 등 - 시행주체: 농정원 등 - 내용: 사회적 농업의 기본 이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농업 농장활동의 기획과 실행에 관한 기술(skill) 향상 - 형식: 집체식 교육과정(2박3일 등) - 시행주체: 거점농장 연합 - 내용: 사회적 농장을 방문하는 참여자 대면 요령, 프로그램 기획 방법 등 |

부록 1

〈농촌 지역에 소재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현황〉

| 광역 | 기초 | 명칭 |
|------|--------------|--------------------|
| 강원도 | 춘천시 | (재)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 |
| | 삼척시 | 삼척시도시재생지원센터 |
| 경기도 | 가평군 | 가평군마을공동체통합지원센터 |
| | 광주시 | 광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
| | 김포시 | 김포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
| | 안성시 | 안성시따복공동체지원센터 |
| | 양주시 |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 | 양평군 | 양평군지역공동체지원센터 |
| | 용인시 |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
| | 이천시 | 이천시행복공동체지원센터 |
| | 평택시 | 평택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
| | 포천시 |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 |
| | 화성시 | 화성시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
| 경상남도 | 거창군 | 거창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
| | 밀양시 | 밀양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
| | 함안군 | (사)함안군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
| 경상북도 | 봉화군 | 봉화군농촌활력화센터 |
| | 의성군 | 의성군이웃사촌지원센터 |
| 전라남도 | 곡성군 | 곡성행복마을만들기지원센터 |
| | 광양시 | 광양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
| | 나주시 |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 |
| | 담양군 | 담양군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 |
| | 무안군 | 무안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 |
| | 순천시 | 순천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
| | 영광군 | 영광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 |
| | 장흥군 | 장흥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 |
| 화순군 | 화순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 | |

| 광역 | 기초 | 명칭 |
|------|------|---------------------|
| 전라북도 | 고창군 | 고창군공동체지원센터 |
| | 김제시 | 김제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 |
| | 남원시 | 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 |
| | 무주군 | 무주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
| | 부안군 | 부안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 |
| | 순창군 | 순창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 |
| | 완주군 | 완주소셜굿즈센터 |
| | 익산시 | 익산시농촌활력지원센터 |
| | 임실군 | (사)임실군마을가꾸기협의회 |
| | 장수군 | (사)장수지역활력센터 |
| | 정읍시 |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 |
| | 진안군 |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
| 충청남도 | 공주시 | 공주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 | 금산군 | 금산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
| | 논산시 | 논산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
| | 당진시 | 당진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
| | 보령시 | 보령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
| | 부여군 | 부여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
| | 서산시 | 서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
| | 서천군 | 서천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
| | 아산시 | 아산시공동체지원센터 |
| | 예산군 |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
| | 천안시 | 천안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
| | 청양군 |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마을공동체지원센터 |
| | 태안군 | 태안군농어촌마을지원센터 |
| | 홍성군 | 홍성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
| 충청북도 | 증평군 | 증평군행복마을만들기지원센터 |
| | 청주시 | 청주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
| 총계 | 55개소 | |

주: 도농복합시 및 군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함.

자료: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홈페이지 <<http://www.koreamaeul.org/>>.

〈이탈리아의 사회적 농업 법〉

Article 1 목적

1. 본 법은, 헌법 117조항 2항 m)에서 명시한 원칙과 지역 책임(Regional Responsibilities)에 따라, 국내 농촌 및 소외 지역의 개인, 가족, 지역사회에 적절하고 균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필수 서비스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농가경영체의 다기능 측면(Multi-functionality)에서 제공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 보건 서비스, 교육 서비스, 사회 고용 등을 반영하는 사회적 농업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제정한다.

Article 2 정의

1. 본 법의 목적에 따라, 사회적 농업은 본 조항 4항에서 정한 제한 사항 내에서 개인, 그룹, 사회적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의 정의 및 범위는 1991년 11월 8일 제정된 법 n. 381에 따름)에 의해서 행해지는 농업인의 활동(Civil Code의 2135조항에서 언급)을 의미하며, 다음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활동을 뜻한다.
 - a) 장애를 가진 근로자 및 소외 계층 근로자(2014년 6월 17일 제정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Regulation No. 651/2014 2조항 3)과 4)의 정의에 따름)의 사회적 고용, 소외 계층(1991년 11월 8일 개정된 법 n. 381의 4조항에서 언급함)과 미성년자에 대한 재활 프로젝트와 사회적 지원
 - b) 기술 및 역량 개발, 사회적 통합, 노동 통합, 여가, 일상에서의 유용한 서비스를 목표로 유무형 농업 자산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 c) 보건 및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고 정신 또는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Emotional and Cognitive Stakeholders)의 상황을 개선하려고 의료 치료, 정신 재활 등을 수반하거나 지원하는 활동과 서비스(동물사육과 식물재배를 활용하는 경우도 포함)
 - d) 지역 수준에서 인정받은 사회적 및 교육 농장에서 생물다양성 보존과 관련한 환경 및 식품 교육, 지역 내 지식 전수 교육을 목적으로 행하는 프로젝트로 미취학 아동과 사회적·정신적·물리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함
2. 농림식품부정책장관령은 본 법의 발효 후 60일 이내에 채택해야 하며, 사회적 농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역, Trento·Bolzano 자치 지방 간 관계 형성을 위해 개최하는 상설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에 따른다. 관련 의회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 조항 1항에서 언급한 활동과 관련한 수단과 최소 요건을 정의한다.
 3. 본 조항 1항의 b), c), d)호 에서 언급한 농업인의 활동은 Civil Code 2135항에 부합할 수 있는 연계 활동을 구성해야 한다.
 4. 본 조항 1항에서 언급한 활동은 수익의 대부분을 농업 활동에서 창출하며 농업 관련 매출액이 30% 이상인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본 법의 목적을 위해 해당 사회적 협동조합을 사회적 농업 행위자로 간주한다.
 5. 본 조항 1항에서 언급한 활동은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2006년 3월 24일에 제정한 법령 n. 155에 따름), 국가에 등록된 사회 진흥 단체(2000년 12월 7일 제정한 법 n. 383 에 따라 설립함), 개인(2000년 11월 8일 제정한 법 n. 328 1조 5항에서 언급함)이 수행할 수 있으며, 각각의 규율과 시설에 대한 사항은 현 법률에 따른다.
 6. 본 조항 1항에서 언급한 활동과 관련한 필요한 규정은 보건 및 복지 서비스와 해당 지역 내 공공당국과 협력하여 설정한다. 지역 내 담당 공공 기관들은 농업과 사회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을 기획하고, 사회적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공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경영체, 농업인, 지역 내 여러 기관을 통합할 수 있는 정책을 도모한다.

Article 3 사회적 농업경영체(Operator) 인정

1. 본 법안 2조 1항에서 언급한 편익과 서비스를 기획하는 지역 네트워크는 사회적 농업 활동의 통합을 추구하며, 지역과 Trento·Bolzano 자치 지방에서는 자체적 능력으로 본 법의 발효 이후 6개월 이내에 필요 시 본 법안 2조 1항에서 언급한 서비스와 편익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사회적 농업 행위자를 인정 또는 승인할 수 있으며, 대중에게 승인한 사회적 농업 운영자를 알릴 수 있다. 지역과 Trento와 Bolzano 자치 지방은 최소 2년 이상 운영해온 사회적 농업 행위자들에게는 법안 발효 이후 임시 승인을 할 수 있으며, 법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을 1년 이내에 충족해야 함. 승인을 받으면 서비스와 활동들에 대한 점검·평가를 받으며 이는 본 법안 7조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본 조항 1, 2번째 문장에서 언급한 운영자 인정 혹은 승인은 공공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Article 4 생산자 단체 조항

1. 농업경영체 중 일부는 2005년 5월에 제정한 Legislative Decree n.102, 유럽 의회의 Regulation (EU) No. 1308/2013, 2013년 12월 27일 의회 결정 사항, 국내법 등에 따라 사회적 농업 생산품과 관련한 생산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Article 5 사회적 농업 활동을 위한 전제 조건

1. 농업인이 본 법안 2조에서 제시한 활동을 위해 설계한 건축물은 농촌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모든 면에서 도시 관련 조항들과도 부합해야 한다.
2. 지역과 Trento와 Bolzano 자치 지방은 사회적 농업 활동에 사용할 건물의 경우 기존 건물 의 복원 및 개량과 지역의 특정한 건축물 유형 및 특징, 환경 및 경관에 부합하도록 장려한다.

Article 6 지원 및 개입

1. 공공 기관에서 관리하는 학교와 병원 식당은 2012년 8월 7일에 개정된 법 n. 135의 1조 1항 4번째 문장의 조항에 따라 (2012년 7월 6일에 제정한 법령 n. 95에서 개정함), 사회적 농업 행위자가 생산한 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2. 사회적으로 생산한 재화를 공공장소에 적절하게 할당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것은 1998년 3월 31일에 개정된 Legislative Decree n.114의 법령 28조에서 의미하는 바에 따라 정의한다.
3. 2012년 3월 24일에 개정된 법 n. 27(2012년 1월 24일에 제정한 Decree-Law n.1의 제66조에서 개정함)에서 언급한 농업 공공 토지와 지방정부 및 비영토(non-territorial)에 속하는 토지의 양도와 임대 시 사회적 농업의 발전과 설립을 위한 활동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반 마피아법과 2011년 9월 6일에 제정한 Legislative Decree n.159에서 언급하는 예방조치에 따라 몰수한 물품과 토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반 마피아법의 48조 3항 c)와 Legislative Decree n.159에서 언급하는 예방조치에 따라 1986년 7월 8일에 제정한 법 no. 349의 문구에 “~, 사회적 농업 행위자 또한 인정받음.”을 추가한다.
5. Special Decree에 따라 경제금융장관은 사회적 농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역, Trento·Bolzano 자치 지방 간 관계 형성을 위해 개최하는 상설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에 따라 농림식품정책장관, 고용사회정책장관과 협의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가용 자원과 공공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본 법안 2조에서 제시한 활동에 대한 필요 요건과 추가 혜택 및 지원 수단에 관한 사항을 정의한다.
6. 지역에서 농촌개발 계획을 기획할 때 다기능성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 활동을 공간 및 사회 개발에 통합하는 데 기반을 두는 사업 구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사회적 농업 사업 시행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파트너십을 장려한다.

Article 7 사회적 농업 관측 센터 설립

1. 농림식품정책부와 정부에서 설립한 사회적 농업 관측 센터(Social Farming Observatory)는(이후 이를 “센터(Centre)”라고 부름) 다음의 임무를 담당한다.
 - a) 사회적 농업 분야의 공공기관 활동 가이드라인에서는 경영체 인정을 위한 균일한 표준, 사회적 농업 활동 점검·평가, 행정 절차 간소화, 기술적 지원 수단 마련, 경영체 교육 및 지원, 승인 교육 과정의 정의, 효과적인 모델 정의, 경영체와 공공 행정 간의 표준 계약 개발을 정의한다.
 - b) 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국내 사회적 농업 활동의 현황과 발전에 대한 정보를 점검하고 가공한다.
 - c) 사회적 농업 활동의 효과성과 지역(Local) 서비스 네트워크로의 편입과 관련한 연구의 수집과 합동 평가를 수행한다.
 - d) 통합 정책(Cohesion Policy)과 농촌개발 정책에서 농업의 사회적 통합을 조직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 e) 지역(Region) 및 지방(Local) 당국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연계 수단 및 지역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2. 관측 센터는 지역과 Trento·Bolzano 자치 지방에서 사회적 농업과 관련하여 설립한 유사 기관들과 각종 업무를 조율한다.
3. 센터는 농림식품정책장관령에 따라 임명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a) 5개 정부 부처(농림식품정책장관, 고용사회정책장관, 교육대학연구장관, 보건장관, 법무장관)에서 각각 지정한 5인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 b) 사회적 농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역, Trento·Bolzano 자치 지방 간 관계 형성을 위해 개최하는 상설위원회에서 임명한 지역과 Trento·Bolzano 자치 지방 소속의 5인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 c) 언급한 기관에서 지정한 국가 차원에서 가장 대표성을 가지는 농업 전문 기관

소속의 2인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 d) 언급한 네트워크에서 지정한 국가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소속의 2인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 e) 사회적 농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역, Trento·Bolzano 자치 지방 간 관계 형성을 위해 개최하는 상설위원회에서 임명한 국가 차원에서 가장 대표성을 가지는 제3섹터 소속의 2인의 대표자로 구성하며, 지역의 사회적 농업 분야에서 활동적인 경영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 f) 2000년 12월 7일에 제정한 n. 383 법에 의해 설립되고 국가 등록을 한 농업 관련 사회진흥협회(social promotion associations)소속의 2인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2000년에 제정한 법 n. 383의 11조에 따른 국가 협회 관측 센터(National Observatory of associations)에서 지정한다.
- g) 협동조합 운동(cooperative movement)의 보호 및 지원을 대표하는 국가차원의 협회에서 지정한 협동조합 소속의 2인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4. 농림식품정책장관의 시행령은 본 법의 시행 이후 120일 이내에 채택되며, 사회적 농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역, Trento·Bolzano 자치 지방 간 관계 형성을 위해 개최하는 상설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과 센터 운영과 기관 유형의 정의에 따름. 현 법 체제 내에서 가용한 인력, 설비, 재정 자원이 신규로 투입되거나 공공 재정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관측 센터는 비용에 대해 보상금, 상품권(tokens), 보수, 세금 공제, 상환을 지정된 비용 범위 이상으로 올릴 수 없다.

본 법은 국가법으로 이탈리아 연방법의 공식적인 규범 법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모든 이들은 이를 관찰 및 시행할 의무가 있다.

2015년 8월 18일

Date in Palermo, addi 'August 18, 2015

MATTARELLA

Renzi, President of the Council of Ministers

「사회적농업 육성법」 발의안(2018년 12월 27일 발의)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여 농촌에 부족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사회적농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농업”이란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농장”이란 사회적농업을 영위하는 농장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사회적농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농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농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회적농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회적농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사회적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적농업의 인력양성, 재정지원, 교육, 홍보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농업과 관련된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5. 사회적농업과 관련된 연구, 실태조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시·도별 사회적농업 지원계획 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회적농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회적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농업의 현황, 지역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농업 육성위원회) ①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사회적농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적농장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사회적농업 육성정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농업 육성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 등 사회적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농업, 농촌, 복지,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회적농업의 확산과 사회적농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사회적농업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사회적농장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회적농업의 활성화 및 사회적농장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사회적농장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농장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적농장(이하 “지정농장”이라 한다)은 지정농장임을 증명하는 도형 또는 문자 등의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사회적농장은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지정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경영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농장에 농업경영·기술·세무·노무·법률·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농장에 대하여 사회적농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협력관계 구축비, 취약계층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시설개선비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설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농장의 운영에 필요한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판로 확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농장의 국내외 시장개척, 전시

회·박람회 개최 및 참석,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등의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지정농장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등) ① 지정농장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농장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나 업무에 필요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사항을 검토 및 평가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6조(지정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농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농장 및 그 운영주체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지정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2.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촌 지역공동체의 사회서비스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초안〉

제1조(목적) 이 법의 목적은 농촌에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농촌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고 농촌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 지역공동체”란 농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경제·문화·환경 등의 제반 영역에서 일상생활과 지역 정체성을 공유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관계에 바탕을 두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읍·면 또는 리
 - 나. 동일한 시·군에 속해 있으면서 서로 붙어 있는 둘 이상의 읍·면
 - 다. 동일한 시·군에 속해 있으면서 서로 붙어 있는 둘 이상의 리
3. “사회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제도를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4. “농촌 지역공동체의 사회서비스”란 농촌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농촌 주민에게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농촌 지역공동체의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활동은 주민의 주도과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② 농촌 지역공동체는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하려는 제반 기획, 활동, 평가 등의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협동적인 방식으로 의사결정하고 활동해야 한다.
- ③ 농촌 지역공동체의 활동은 지역사회 전체의 사회적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

해 수행되어야 한다.

④ 농촌 지역공동체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농촌 지역공동체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행정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기본원칙을 존중하면서 농촌 지역공동체가 사회서비스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지역공동체의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농업정책, 지역정책, 사회복지정책 등 각종 정책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촌 지역공동체의 사회서비스 활성화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촌 지역공동체의 사회서비스 활성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촌 지역공동체 사회서비스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지역공동체의 사회서비스 제공 현황과 여건 분석
2. 농촌 지역공동체 사회서비스 활성화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3.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농촌 지역공동체 사회서비스로서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 가. 사회적 농업
 - 나. 농촌의 노인, 장애인,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 다. 농촌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주민의 고용
 - 라. 농촌 주민의 보건, 생활환경 개선, 평생교육, 학교교육, 여가문화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 주민 활동과 자원봉사활동
 - 마. 농촌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

4. 그 밖에 농촌 지역공동체의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 ③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각각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수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회의) ① 농촌 지역공동체의 사회서비스 활성화 정책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농촌 지역공동체 사회서비스 정책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 ② 자문회의에는 사회복지, 평생교육, 마을만들기, 사회적 경제, 보건의료 등과 관련된 전문가와 농촌 지역공동체 활동에 종사하는 민간 부문 인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회적 농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어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이들에게 농업 활동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지역공동체가 노인, 장애인,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농촌 지역공동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대상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사회보장사업 현황을 고려하여 농촌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도록 결정해야 한다.

제11조(취약계층 고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고용 촉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사업을 고려하여 농촌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제12조(농촌 주민의 자발적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주민들이 사회서비스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거나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실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지역공동체들의 역량 강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농촌 주민 등에게 조력하는 농촌 지역공동체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지역공동체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시군 소속 공공기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서식에 맞추어 시장·군수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⑤ 지원기관의 지정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지원기관이 재지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시장·군수가 검토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제14조(권한 위임 및 업무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농촌 지역공동체의 사회서비스 활성화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를 제13조제2항의 지원기관이나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위탁 업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1 또 다른 법률명으로 “농촌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안해 봅니다. 그렇게 할 경우, 법률이 포괄하는 범위가 늘어나게 될 것인데, 행정안전부 계통을 통해 진행되는 ‘마을공동체 기본법’ 등과 관련해 경합이 일어나 합의를 보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지리라 생각합니다.
- 2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3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이 부분을 아예 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국가(농식품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도 계획을 수립하게 의무화하거나 ‘할 수 있다’는 정도로 권장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아예 빼는 경우, 농식품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일관된 정책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할 토대를 형성할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지자체들도 계획을 수립하게 의무화하는 것은, 지자체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현재의 조문을 넣은 것입니다.

〈한국형 케어팜 모델 적용: 공적돌봄제도 체계와의 연계 방안〉³¹⁾

1. 검토 배경

- 농촌, 사회적경제, 돌봄 이슈를 둘러싼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네덜란드의 케어팜(care farm) 모델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 네덜란드 케어팜이 확대될 수 있는 주요 기반은 1)국가적 차원의 농업의 중요도가 높고, 2)네덜란드의 사회보험제도(WBZ)에서 가족이나 지역사회가 돌봄을 제공해도 보험급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즉, 비공식돌봄체계에 대한 제도적 중요도)이라고 볼 수 있음.

- 네덜란드 케어팜이 치매노인, 발달장애인 등에게 신체 및 인지기능 저하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생산 및 공급을 수행하면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본인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긍정적인 효과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한국의 제도권 내에 안착시키기에는 몇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음. 우선, 치매노인 및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계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인식 제고가 이뤄져야 할 것임.
 - 그 중에서도 특히, 치매노인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들이 사회적 돌봄 대상자라고 인식할 뿐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인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³¹⁾ 본 부록은 농업복지연계포럼에서 건강보험연구원 유애정 박사가 발제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 또한, 네덜란드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이라는 공식적인 서비스 제공기관 형태를 띠지 않더라도 비공식적 돌봄제공자에 대한 중요도도 제도권 내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운영형태가 갖춰져야 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수 있어 제도적 차이점을 고려하여 케어팜 제도화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이에 ‘한국형 케어팜’ 제도화를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보건복지서비스 등 공적돌봄제도 체계와의 연계 방안을 적절히 검토하면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운영 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그 중에서도 특히, 향후 우리나라의 노인돌봄(요양)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 보장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 제도권 내에서 또는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제도적 보완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임.

2. 케어팜-공적돌봄제도와의 연계 방안

2.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상태

- 케어팜에 참여할 주요 대상자 그룹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케어팜에 참여한 대상자의 상태상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네덜란드의 사례를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케어팜 운영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의 관계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봐야 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1-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상태상을 살펴보면 등급판정자의 약 50%가 치매질환을 안고 있으며 장기요양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ADLs은 일부 부분도움이면서 치매질환자가 포함됨.

〈부표 5-1〉 2018년 등급판정 완료자의 ADL 및 인지장애정도 분포

단위: 점, 명, %

| 구분 | ADL 평균 점수 | ADL 부분도움 인정자수(비율) | 기능상태 | 인지 ¹ | 행동 변화 ² |
|----------------|-----------|--------------------|---|--------------------|--------------------|
| 1등급 | 34.4 | 45,111 (100.0) | ADL 11개 이상 완전도움 | 41,637 (92.3) | 7,079 (15.69) |
| 2등급 | 28 | 84,751 (100.0) | ADL 10개 부분도움 이상 | 83,759 (98.83) | 23,070 (27.22) |
| 3등급 | 20 | 211,098 (100.0) | ADL 6개 부분도움 이상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 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 206,300 (97.73) | 48,978 (23.2) |
| 4등급 | 15.5 | 264,680 (100.0) | ADL 2개 부분도움 이상 (옷벗고입기, 목욕하기) | 255,909 (96.69) | 41,900 (15.83) |
| 5등급 | 13.8 | 53,891 (99.99) | ADL 1개 부분도움 이상 (목욕하기) | 53,104 (98.53) | 11,880 (22.04) |
| 인지 지원 등급 | 12.7 | 7,459 (66.18) | - | 10,905 (96.75) | 1,248 (11.07) |
| 등급외A | 14 | 77,778 (100.0) | ADL 1개 부분도움 이상 (목욕하기) | 70,991 (91.27) | 2,035 (2.62) |
| 등급외B | 13 | 69,447 (99.88) | ADL 1개 부분도움 이상 (목욕하기) | 61,783 (88.86) | 786 (1.13) |
| 등급외C | 12 | 8 (0.06) | - | 10,694 (79.84) | 433 (3.23) |

주 1) 杉浦圭子 외(2007)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상생활 수행상의 도움이 필요한 인지기능 항목(인정조사도구에서 단기 기억 장애, 의사소통 불가능, 장소 미인지, 이해력 장애 증상) 중 1개 이상 체크된 자)

2) 杉浦圭子 외(2007)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상생활 수행상의 도움이 필요한 행동변화 항목(인정조사도구에서 배회, 폭력, 밤낮변화, 주위도움거부 관련 증상)중 1개 이상 체크된 자

자료 : 유애정의(2019), 장기요양 사각지대 진단과 과제 : 대상자와 급여내용 중심으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2.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급여유형의 서비스 내용 : 주야간보호기관 중심으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수급자(가족)의 희망하는 시설 및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갖추고 있음.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급여유형 및 급여량을 참고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되 시설급여의 경우에는 1일 기준 급여비용의 20%를 본

인이 부담해야하며, 재가급여의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급여비용의 15% 범위 내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종류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시설급여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를 의미하고,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로 구분되어있음.

〈부표 5-2〉 장기요양급여 개선 및 서비스 확대 과정

| 시행 | 개선내용 |
|-------|--|
| 2013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야간보호서비스 활성화 위해 운영방식 개선 -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50% 추가 적용 - 야간 가산 및 공휴일 가산 적용 |
| 2014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매특별등급 도입에 맞춰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치매가족휴가제 도입(연간 6일, 연 한도액 무관)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목욕서비스 제공 시 1인당 최대 월 4회 가산금 지급 1~4등급 수급자 월 1회 건강관리 위한 방문간호급여 제공 |
| 2016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요양급여 개선 - 1일 최대 240분 2회 → 1일 최대 3시간 3회까지 - 4시간 서비스 이용은 1일 1회로 제한 주·야간보호기관 정원 초과 시 감산 적용 2~5등급 치매수급자를 위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1~4등급 수급자에게로 확대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도입 촉탁의제도 개선(요양시설 입소자의 의료서비스 강화) |
| 2017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요양급여 1일 4시간 서비스 이용 1~2등급 수급자로 제한 |
| 2018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매가족휴가제 이용대상자 확대 - 의사 소견서 상 치매가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자 단기보호급여 이용일수 조정 - 이용일수 : 월 15일 → 월 9일, 연장이용 가능 횟수 : 연 2회→4회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8),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사

- 위의 급여유형을 고려해 볼 때, 케어팜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유형 중 주야간보호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음.
 - 주야간보호기관의 경우 재가에서 생활하면서 적극적으로 일상생활 중의 프로그램 적용을 강점으로 활용하고 있어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케어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에 대한 급여비 책정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지난 10여년 동안의 제도운영 과정에서 급여기준을 고도화시켜(표2)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야간보호기관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야간보호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 및 인력배치기준과 서비스 제공기준을 준수해야 함.
 - (시설기준) 이용자 10인 여부에 따라 시설기준 적용이 달라짐. 10인 미만의 경우, 생활실, 사무실 및 의료(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및 물리(작업)치료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세면장(목욕실)·세탁장(건조장) 확보가 필요함.
 - (인력배치기준) 이용자 10인 여부에 따라 인력배치기준 적용이 달라짐. 10인 미만의 경우 시설장 1명, 간호(조무)사 1명 이상, 7:1 요양보호사(치매전담실 4:1), 조리원 1명. 10인 이상의 경우 사회복지사 1명, 보조원(운전자) 1명이 추가적으로 배치되어야 함.
 - (서비스제공기준)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 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4) 08:00-22:00를 표준급여제공시간으로 하고, 24시 이후에는 수급자를 보호하여서는 안된다; 5) 주야간보호기관은 1-4등급 치매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함.

- (급여비용)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구분됨. 단, 치매환자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1회 60분 이상씩 주 3회 또는 월 12회 제공한 경우에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수급자 1인당 월 6,000원을 가산한다. 가산비용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프로그램 관리자 및 해당 치매전문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어야 함.

2.3. 치매환자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현황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 중 치매환자의 비율은 2020년 4월 현재 전체 장기요양 등급판정자의 약 52.5%를 차지하고 있음.

- 그 중에서도 특히, 1-3등급에서의 치매환자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등급의 경우에는 약 70%의 등급판정자가 치매질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부표 5-3>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중 치매있다 응답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 판정자 | 인정자 | | | | | | |
|-----------------|---------|---------|--------|--------|---------|---------|--------|---------|
| | | 소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등급 |
| 치매있다 응답자 | 487,024 | 481,145 | 29,422 | 58,551 | 136,058 | 164,781 | 76,444 | 15,889 |
| | 100.0% | 98.8% | 6.0% | 12.0% | 27.9% | 33.8% | 15.7% | 3.3% |
| (총 판정자 중 비율) | 52.5% | 63.2% | 68.6% | 69.6% | 60.7% | 49.4% | 100.0% | 100.0% |

주 1) 인정조사 시 질병 및 증상 중 치매 있다 응답한 자 (사망, 중복, 기각, 각하자 제외)

2) 기각, 각하자 중 치매 있는 자 19,246명

3) 치매 있음 응답하지 않았으나 보완서류 제출, 치매진단내역 확인 등 추가증빙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5등급 판정받은 49명, 인지지원등급 판정받은 20명 포함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2020.4.30일 기준)

○ 치매환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2015년 말에 발표된 제3차 국가치매관리계획 ‘치매가 있어도 우리 동네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2016-2020)’에서는 편안하고 안전한 치매진단·치료·돌봄 제공을 위해 치매환자의 증증도에 맞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정책추진방향을 제시하였고 돌봄과 관련한 정책방향은 1)장기요양 대상자 확대, 2)가족의 돌봄을 지원하는 재가서비스 확대였음.

- 장기요양 대상자 부분에서는 경증치매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위하여 장기요양서비스 등급기준을 조정하고 경증치매 대상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으나 대상자의 상태에 맞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에 대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졌음.

- 또한, 재가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야간보호시설을 확충해 왔으나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경우 주야간보호시설 등 인프라 확대의 한계, 주야간보호시설 외 가정에서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정부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하였고, 보다 적극적인 확충을 위해 2019년부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을 위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2022. 12월 31일까지)으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대상자 1인당(시설 월 10만원, 주간보호 월 5만원)의 가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지원금의 운영방식도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단기적 대안으로 작동될 수 있으나 치매환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장기요양기관이 치매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장기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주야간보호기관 내 치매전담실은 정원 10명을 기준으로 각각의 설비기준을 갖춰야 하는데 10명 이상인 경우 생활실, 사무실 또는 의료 및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및

물리(작업)치료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목욕실) 및 세탁장(건조장)을 갖춰야 함.

- 이와 함께, 각 치매전담실은 1실당 25명이 정원이고, 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 1명당 6.6㎡ 이상의 생활실 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함.
- 주야간보호기관 내 치매전담실 이용이 가능한 대상자 기준은 1)의사소견서에 치매사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2~4등급 수급자, 2)5등급 수급자, 3)인지지원등급 수급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치매전문요양보호사와 시설장 및 프로그램 관리자를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치매전담실 간 인력을 공동활용할 수 있으나 일반실과 치매전담실 간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때, 시설장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단독 운영하거나 입소자가 10인 미만인 주야간보호기관인 경우 프로그램 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으며, 시설장 및 프로그램 관리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중 1명을 지정해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에 의하면 2020년 5월 현재,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전국에서 20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79개소,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8개소,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운영기관 96개소로 나타남.

- 또한, 전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중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관은 12개소(5.9%)이며, 사회복지법인시설은 87개소(42.9%),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은 104개소(51.2%)의 분포를 띄고 있음.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정원 3,681명 중 약 74% 수준인 2,734명이 현재 이용 중임

3. 제도화를 위한 검토사항

3.1. 현재의 제도에 기반한 모델을 만들 것인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연계한 ‘케어팜’의 제도화는 기존의 주야간보호 급여유형을 활용해 나가는 방향에서 점진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임.
 - 특히,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기관의 운영형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케어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별도의 가산기준을 적용하여 급여화 해 나가는 방향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현재는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기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주야간보호기관의 경우 향후 대다수의 이용자가 치매환자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기관에 한정된 프로그램을 도입하되 이를 전체 주야간보호기관의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케어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준수해야 할 시설 및 인력배치기준, 서비스 제공기준 등을 개발해야 할 것이므로 한국형 케어팜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 개발이 필요할 것임.
 - 예를 들어, 농작물 재배를 위한 공간(농지면적)의 최소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전담인력을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과 같은 인력을 필수적으로 배치할 것인지, 서비스 제공기준을 필수적으로 하루 몇 시간 이상 등의 구체화 된 내용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케어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치매환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생산력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급여비 지급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결국 전담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배치하느냐에 따라 급여비 수준이 결정될 수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임.

3.2. 새로운 제도유형으로 개발할 것인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아닌 지자체 보건복지서비스 중의 하나로 ‘케어팜’을 구축하려고 할 때는 기존의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중의 하나로 포함시키거나, 치매환자에 국한할 경우 치매관리사업 중의 하나로 검토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임.
 - 이럴 경우,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며 특히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한 사업비가 전제되어야 적용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인식해야 함. 이 경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으로서의 엄격한 설비기준 등은 다소 유연해질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재정 확보를 해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현재, 제4차 국가치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연중으로 국가치매관리사업의 하나로 치매안심마을을 확충해 나가는 것처럼 케어팜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운영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이렇게 국가치매관리사업의 하나로 운영될 경우에는 지자체와 치매안심센터가 주요 관리 주체가 되는 것이며, 케어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체(법인형태?)가 위탁운영하는 형태로 운영해 나가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임.

〈발달장애인과 1차 산업 연계 활성화 방안〉³²⁾

1. 들어가면서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된 직장을 갖는 것은 누구나의 희망사항이다.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 위해 자기개발에 아낌없는 투자를 한다. 그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특수」와 「보호」라는 이름 아래 비장애인과 분리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일자리를 통한 인간다운 삶은 풀어야 할 오랜 숙제이다.

근로는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권리이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은 특별한 지원을 통해서 적합한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고 사회적 고려가 있어야 근로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은 신체적 기능에 큰 장애가 없지만 인지와 사회성 부족으로 실제로는 직업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데, 간혹 인권 침해에 노출되기도 하는데, 몇 년 전 떠들썩했던 각종 노예 사건처럼 성인이 되어도 어른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장기간 학대와 임금착취에 시달리기도 한다.

2020년 6월 말 등록 발달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9.33%인 24만 5,000명이다<부표 4-1>. 18~64세 성인 발달장애인은 전체 발달장애인의 약 75%에 이른다<부표 4-2>.

32) 본 부록은 농업복지연계포럼에서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고명균 센터장이 발제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부표 6-1〉 전국 장애인·발달장애인 추이

단위: 명, %

| 구분 | 2012년 | 2014년 | 2016년 | 2018년 | 2019년 | 2020.6월 |
|-------|-------------------|-------------------|-------------------|-------------------|-------------------|-------------------|
| 등록장애인 | 2,511,159 | 2,494,460 | 2,511,051 | 2,585,876 | 2,618,918 | 2,626,277 |
| 발달장애인 | 190,163 (7.57) | 203,879 (8.17) | 218,136 (8.69) | 233,620 (9.03) | 241,614 (9.23) | 244,918 (9.33) |
| 지적장애 | 173,257 (6.90) | 184,355 (7.39) | 195,283 (7.78) | 206,917 (8.00) | 212,936 (8.13) | 215,230 (8.20) |
| 자폐성장애 | 16,906 (0.67) | 19,524 (0.78) | 22,853 (0.91) | 26,703 (1.03) | 28,678 (1.10) | 29,688 (1.13) |

자료: 2012~2020.6.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현황

주: 발달장애인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현재 2012년 대비 28.8% 증가하였다.

〈부표 6-2〉 연령별 발달장애인 현황

단위: 명

| 구분 | 0~9세 | 10~19 | 20~29 | 30~39 | 40~49 | 50~59 | 60~69 | 70~ |
|--------|--------|--------|--------|---------|---------|---------|---------|-----------|
| 등록장애인 | 31,626 | 58,934 | 97,032 | 125,497 | 247,891 | 463,421 | 592,495 | 1,009,381 |
| | 1.20% | 2.24% | 3.69% | 4.78% | 9.44% | 17.65% | 22.56% | 38.43% |
| 발달장애인 | 18,534 | 42,821 | 60,686 | 40,947 | 33,446 | 27,391 | 15,420 | 5,673 |
| | 7.57% | 17.48% | 24.78% | 16.72% | 13.66% | 11.18% | 6.30% | 2.32% |
| 지적장애인 | 11,331 | 33,161 | 50,920 | 38,203 | 33,178 | 27,349 | 15,415 | 5,673 |
| | 5.26% | 15.41% | 23.66% | 17.75% | 15.42% | 12.71% | 7.16% | 2.64% |
| 자폐성장애인 | 7,203 | 9,660 | 9,766 | 2,744 | 268 | 42 | 5 | |
| | 24.26% | 32.54% | 32.90% | 9.24% | 0.90% | 0.14% | 0.02% | |

자료: 2012~2020.6.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현황

주: 19세 이하 장애 아동 중 발달장애 아동이 67.7%를 차지한다. 18세에서 64세 사이 성인기 발달장애인이 전체 발달장애인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약 75%에 달한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을 찾아보기 힘들다. 비장애인 고용률 61%에 비해 발달장애인은 24.9%에 불과하다(부표 4-3). 일자리가 있는 발달장애인도 최저임금 이하의 월급을 받는 경우가 많아 지적장애는 70만 원 자폐성장애는 35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부표 4-4). 근속기간도 매우 짧고 고용형태도 불완전 임시 계약직인 경우가 많다.

〈부표 6-3〉 장애인과 발달장애인 고용현황

단위: 명, %

| 구분 | 15세 이상 인 구 | 경제활동인구 | | | 비경제활동인구 | 경활률 | 실업률 | 고용률 |
|----------|---------------|------------|------------|-----------|------------|------|-----|------|
| | | 소계 | 취업자 | 실업자 | | | | |
| 전체 인구 | 44,141,000 | 28,184,000 | 27,064,000 | 1,121,000 | 15,956,000 | 63.9 | 4.0 | 61.3 |
| 전체 장애 인구 | 2,495,043 | 922,897 | 861,648 | 61,249 | 1,572,146 | 37.0 | 6.6 | 34.5 |
| 발달장애 | 194,657 | 52,846 | 48,540 | 4,306 | 141,811 | 27.1 | 8.1 | 24.9 |
| 발달 장애 외 | 2,300,386 | 870,051 | 813,108 | 56,943 | 1,430,355 | 37.8 | 6.5 | 35.3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8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재구성

〈부표 6-4〉 장애인 임금 현황(월 평균)

단위: 만 원

| 구분 | 지체 장애 | 뇌병변 장애 | 시각 장애 | 청각 장애 | 언어 장애 | 지적 장애 | 자폐성 장애 | 정신 장애 | 신장 장애 | 심장 장애 | 호흡기 장애 | 간 장애 | 안면 장애 | 장루 요루 장애 | 뇌전증 장애 | 전체 |
|------|----------|-----------|----------|----------|----------|----------|-----------|----------|----------|----------|-----------|---------|----------|----------------|-----------|-----|
| 2017 | 189 | 124 | 196 | 125 | 155 | 70 | 35 | 87 | 176 | 65 | 101 | 278 | 120 | 188 | 90 | 171 |
| 2014 | 167 | 112 | 156 | 120 | 130 | 57 | 45 | 56 | 183 | 327 | 110 | 190 | 160 | 78 | - | 153 |
| 2011 | 155 | 118 | 136 | 125 | 141 | 54 | 38 | 53 | 189 | 100 | 99 | 196 | 70 | 86 | 117 | 142 |
| 2008 | 121 | 104 | 136 | 88 | 92 | 41 | 23 | 23 | 147 | 97 | 86 | 235 | 124 | 84 | 66 | 115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2018

2.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8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각종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발달장애인 복지정책에 가장 영향력이 큰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의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부도 6-1〉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 생애주기 | 주요과제 |
|------|--|
| 영유아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정밀검사 지원 확대(1,000명 → 7,000명)로 조기진단 강화 - 통합유치원(1개 → 17개) 및 특수학급 확대(731학급 → 1,131학급) - 양육 정보제공 및 부모교육 지원, 부모 자조모임 양성 |
| 학령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신설('19년 4,000 → '22년 2만 2000명) - 특수학교·학급 확대(174교, 1만 325 학급 → 197교, 1만 1575 학급)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확대('18년 7개소 → '19년 13개소) |
| 청장년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활동서비스(학습형, 체육형 등) 신설('19년 1,500명 → '22년 1만7,000명)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확대('18년 2,500명 → '19년 5,000명)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확대('18년 1,200명 → '19년 3,000명) |
| 중노년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검진기관 확대, 건강추치의제 등 건강관리체계 강화 - 발달장애인 소득보장 체계 구축(공공신탁제 도입 등) |
| 전주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대(2개소 → 8개소) - 공공후견인·법률지원 확대, 권익옹호 및 성교육 전문가 양성 - 가족부담경감을 위한 휴식지원서비스(1만 명 → 2만 명) |

여기서 경제활동의 주 대상인 청장년기 계획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① 주간활동서비스를 통한 돌봄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한다. 복지절벽 상태의 최종증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의미 있는 생활(주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간활동은 발달장애인이 소그룹별로 주간에 지역 내에서 학습형·체육형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년 2,500명(당초 1,500명) 대상 주간활동 바우처를 주22시간(월88시간) 제공하고 22년에는 성인 발달장애인 1만 7천 명까지 확대한다.
- ② 재가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주거복지를 지원한다. 재가 발달장애인이 주거생활코치를 통해 자립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자립체험 임대주택 지원을 추진한다. 20년에 임대주택 50호로 시작, 연차별 확대 추진한다.
- ③ 시설거주 발달장애인에는 탈시설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장애인 탈시설·자립

지원 모델 마련 및 지역사회 정착 유도를 위해 「장애인 돌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탈시설 체험주택 운영, 공공임대주택 연계 및 자립정착금 지원 등을 통해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 주거를 지원한다.

- ④ 발달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한다. 발달장애인의 취업의욕 고취를 위해, 장애인을 직접 동료지원가로 참여시키는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역 맞춤형 서비스란 지역 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동료상담, 자조모임 활동 등 발달장애인의 취업의사 및 구직활동 의욕 고취를 위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 ⑤ 발달장애인에 맞춤형 직업 훈련과 일자리를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춰 직무능력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하고, 맞춤 훈련과정을 연간 2천명까지 확대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를 기존 5개소에서 21년에 20개소까지 확대하고, 요양병원, 마트 등에서 직접 직업재활을 실시, 다양한 현장직무 경험을 지원한다. 또한 훈련-취업 연계로 취업성과가 높은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의 지원인원을 확대(2,500명→5,000명)하고, 현장훈련기간 및 적응지도기간을 연장한다.
- ⑥ 고용 유지를 지원하고 사업장 인식을 개선한다. 근로지원인을 확대하여, 발달장애인에도 특수성과 니즈를 고려한 근로지원인을 지원한다. 근로지원인은 22년 1만명까지 확대를 목표로 하는데 주된 업무는 직장내 의사소통 지원, 사업장 내외 이동 지원 등이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이 학령기의 훈련센터 확대를 시작으로 청장년기에는 고용촉진과 유지를 위한 정책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현재 발달장애인들은 생애주기별 근로능력별로 특수학교 전공과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영역의 발달장애인 공공일자리, 발달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보호작업시설과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 근로작업시설이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비롯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기업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 경험의

기회가 있다. 이 외에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고용부담금 제도, 연계고용과 지원고용, 근로지원인 그리고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가 있다.

3.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시도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과 고용에 대한 노력은 민간 영역에서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민간영역의 발달장애인 신규직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표 6-5〉 민간영역 발달장애인 신규직무

| 연도 | 기관·업체명 | 운영형태 | 직무 |
|-------|--------------|--------------------|---|
| 2012년 | 베어베터 |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 인쇄, 제과제빵, 커피로스팅, 배송, 화훼, 기업 내 사내매점 등 |
| | 오티스타 | 사회적기업 | 디자인교육, 디자인 전시회 자폐인 디자인 작품 판매 |
| 2013년 | 커피지아 | 사회적기업 | 커피콩 감별 |
| 2014년 |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재단법인 | 은행도우미, 대학병원 내 도어서비스 차트 딜리버리, 홍보도우미 |
| 2015년 | 동구밭 |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 유기농 작물 재배, 천연비누 생산 |
| | 드림위드양상블 | 사회적기업 | 클라리넷 앙상블 연주 |
| | 테스트웍스 | 사회적기업 | 소프트웨어 테스터 |
| 2016년 | 링키지랩 | 카카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 인터넷 서비스 콘텐츠 운영 웹 디자인, 검색운영 |
| 2017년 | 소소한소통 | 예비 사회적기업 | 쉬운 글 감수 |
| 2018년 | 드림앤바이크 | 협동조합 | 자전거 정비 |
| | 가나안근로복지관 | 장애인 근로사업장 사회적기업 | 애완견 간식(사냥개) |
| 2019년 | 굿컴퍼니 | 소셜벤처 | 생활체육 보조코치 |
| | 푸르메스마트팜서울농원 | 장애인보호작업장 | 스마트팜 식물 재배 |

지난 수년간 발달장애인을 위한 적합직종을 찾기 위한 노력은 주로 비농업 분야에 집중되었다. 바리스타 등 일부 업종이 발달장애인 적합 일자리를 대표하는 것처럼 알

려져 있지만 다른 업종 특히 1차 산업에서는 성공적인 사례는 드물다. 유기농 작물을 재배하는 사회적기업 동구밭과 스마트팜 식물 재배를 시작한 푸르메스마트팜서울농원이 있지만 아직 그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이르다.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함에 있어서 발달장애인의 낮은 생산성을 이유로 적은 설비 투자만으로 가능한 단순 임가공 업종이 보호작업장의 상징처럼 고착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보아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과감한 첨단 설비와 기술투자가 필요하다. 제과제빵, 경인쇄, 1차 산업 등 최근 주목받는 직종과 일터에서 설비와 기술투자는 필수적이다.

발달장애인에게 일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발달장애인의 삶이 보여주는 굴곡에도 있다. 성인이 되면 그동안 발달장애인을 주로 돌보던 장애부모의 나이도 60대에 이르러 질병, 사고, 실직 등의 이유로 30대에 이른 발달장애인의 돌봄능력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전국의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이용률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18~29세 44.3%, 30~39세 32.2%, 40~49세 23.1%, 50~59세 16.5%, 60세 이상 5.8%으로 나이가 들수록 발달장애인이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간 서비스 이용률을 보면, 대도시 32.8%, 중소도시 27.5%, 농어촌 18.7%로 도농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농어촌의 30대 이후 발달장애인은 10명 중 1명 정도만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보고 있다는 현실이다.

발달장애인의 효과적인 직업재활 수단으로서 1차 산업이 지니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 ① 비교적 적은 설비 투자비로 자체생산이 가능함
- ② 2차 산업 분야에 비해 다른 종목으로의 전환이 용이하고 그 손해가 훨씬 적음
- ③ 2차 산업에 비해 높은 지적 수준을 요하지 않음
- ④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정서적, 교육적 치료효과를 줄 수 있음
- ⑤ 농업 인력의 부족과 장애인 고용이라는 2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 가능

1차 산업을 발달장애인의 효과적인 직업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 ① 장애특성에 적합한 고소득 1차 산업 품목의 발굴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직업평가 및 직무분석 등 각종 직업재활과 특수교육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여 장애인근로자에게 적절한 역할 배치 및 영농기술의 전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생산된 1차 산업 품목들이 좋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판로 및 유통구조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한다.
- ④ 친환경 농업에 의한 웰빙 농산물 생산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 ⑤ 농촌관광 분야의 활성화를 통해 소득 증대와 더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자연스러운 통합도 도모할 수 있다.

1차 산업에 종사하려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작업 환경 만들기는 다음과 같다.

- ① 지적 수준이 높지 않을 것
- ② 단순하며 일관된 반복효과가 있는 것
- ③ 장기간의 경험이나 숙련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
- ④ 안전도가 높은 것
- ⑤ 기계력을 이용할 수 있는 것
- ⑥ 기계, 장치, 공구, 재료, 제품 등이 비교적 변화가 적은 것
- ⑦ 기계, 장치, 공구 등의 조정이 간단할 것
- ⑧ 매우 기민한 동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 ⑨ 장기간의 정신 긴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 ⑩ 작업능률을 높게 요구하지 않는 것
- ⑪ 계산측정이 필요 없거나 아주 간단한 것
- ⑫ 작업의 정밀도가 높지 않은 것
- ⑬ 작업공정이 세분화되어 가능한 한 단일작업으로 취업이 가능한 것
- ⑭ 지역사회 산업과 연결되는 것

4.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서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개인예산제라는 선진형 예산지원방식에 가장 근접한 모형으로 다수의 이용자와 장애부모들로부터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이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하여 2022년이 되면 1조 2,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유지 등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그룹별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룹별로 제공하므로 주간활동 제공인력 1인이 이용자 2~4인씩의 1개 그룹을 담당하며 그룹 구성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및 협력기관을 통한 프로그램 이용을 지원한다. 도전적 행동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2인 그룹을 1개 이상 구성하여야 하며, 제공기관별로 전체 이용인원의 20% 이상을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간활동 프로그램 이용 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공기관에서 협력기관으로의 이동 등 기관 간 이동은 주간활동 프로그램 시간대로 인정 가능하며, 거주지에서 제공기관으로의 이동이나 귀가를 위한 차량 운행의 경우 주간활동 프로그램 이용범위에 월 이용시간의 최대 20%까지 인정 가능하다.

이용시간은 평일 낮 시간(09:00~18:00)에 이용자 월 바우처 급여시간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야간, 토,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이용할 수 없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직업훈련 등을 이용하거나 주간보호시설 이용자는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와 동일한 시간대에 활동지원과 주간활동 동시 이용이 불가하다.

주간활동서비스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욕구와 선택에 기반하여 참여형 및 창의형 등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물론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유해한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프로그램은 불가하다.

〈부표 6-6〉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프로그램 예시

| 구분 | 내용 |
|-----|--|
| 참여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조모임 : 티타임, 동아리, 독서모임 등 • 산책, 걷기, 수영, 등산, 요가, 볼링, 탁구, 농구 등 건강 증진 활동 • 직장 탐방, 캠프, 여행 • 교육(일상생활 자립, 권리, 성인권 및 안전 교육 등) • (문화관람) 연극 및 영화 관람, 미술관 및 박물관 이용 등 |
| 참여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조모임 : 목적이 있는 특정 활동의 기획 회의, 계획, 수행 등 제반활동 • 음악활동 :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중창이나 합창, 난타배우기 등 • 미술활동 : 그림그리기, 작품 감상, 한지 공예 작품 만들기, • 바리스타 교육, 가드너, 제과제빵, 양초공예 등 • (노예) 휴으로 생각 표현, 창작품 만들기, 생활도자기 만들기 • (사진 찍기) 카메라 관리, 사진 찍기, 사진 인화방법 • (공예품 만들기) 목공예, 비누공예 등 • 기타 제반 창작활동 |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안내』.

바우처 비용은 제공기관의 그룹 구성인원수에 따라 적용 요율을 달리하는데, 2인 그룹에는 기본단가를 적용하고, 3인 그룹에는 기본단가의 80%, 4인 그룹에는 기본단가의 70%를 적용한다. 제공기관은 매일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후 제공 월의 총 이용시간 만큼을 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이용자가 총 계약시간의 80% 이상 출석할 경우 바우처 비용 100% 청구 가능하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와 달리 주간활동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주간활동 제공기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공공·비영리기관과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우선 선정하되, 농어촌 등에는 영리기관(개인사업자 등)도 제공기관으로 선정 가능하다.

농어촌 지역 및 소규모 사업수행 지역(시군구) 특례 조항으로 이용인원 10인 이하인 제공기관은 시설장이 전담관리인력을 겸직할 수 있고 인접한 다른 사업수행 시군구와 공동으로 주간활동 제공기관 지정이 가능하다. 농어촌 지역은 이용자 수가 5인 미만인 제공기관의 경우 제공인력 1명으로 3인 그룹이나 4인 그룹 구성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사무 공간과 활동공간을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활동공간의 경우 이용자 1명 당 3.3제곱미터 이상의 전용 공간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또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노유자 시설)에 따라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의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5. 제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시작되어 올해 4000명의 성인 발달장애인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령별 도농간 서비스 이용 격차는 존재하고 있다. 특히 농촌형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몇몇 예외조항에도 불구하고 시행 2년차 농촌형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하다. 2020년 6월 현재 전국의 191개 시군구에서 253개의 제공기관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800여 개의 협력기관이 지정되어 있지만 도 단위 중소도시나 농촌지역 제공기관들은 이용자가 적어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촌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간활동서비스 프로그램에 원예, 농촌 체험, 소동물 키우기 등의 프로그램이 명시되고 이를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제공기관이 계속된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면 서비스 지속은 어렵기 때문에 10인 미만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형 서비스의 경우 이를 보전할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농촌형 서비스의 특성상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지원에 대한 비용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협력기관으로 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여러 제공기관과 협약을 맺고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협력기관으로 진입해서 매주 정해진 요일에 송영을 지원하여 농장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실제 대전의 한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협력기관에서 찾을 수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기관의 욕구에 부합하여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농촌의 충분한 근로능력을 가진 성인 발달장애인이 상시적 복지서비스가 부족하고 접근이 어려워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지난 5월 광주 광산구와 경북 안동시에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이 선정된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촌의 잠재력과 발달장애인 가족의 욕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희망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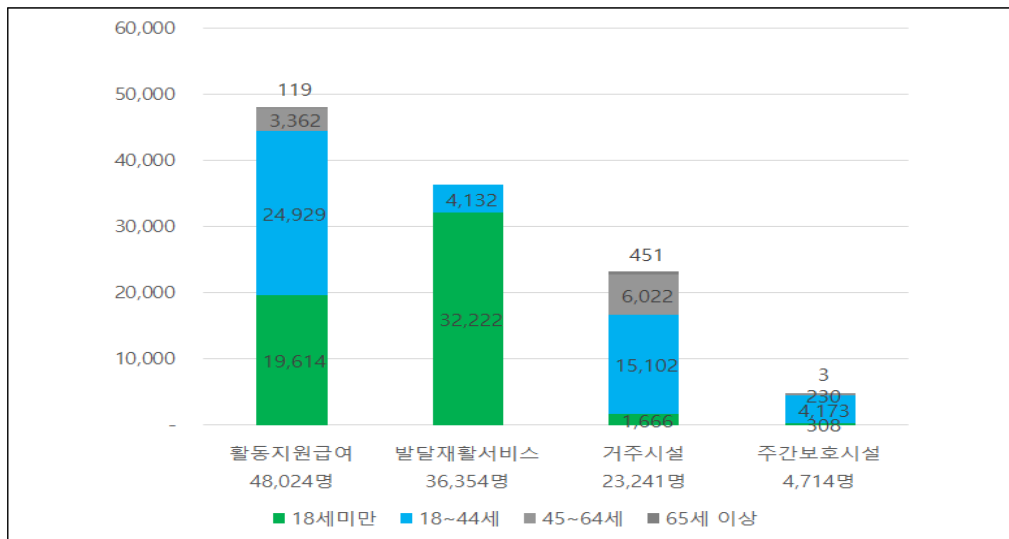
〈부표 6-7〉 시도별 지역별 발달장애인 현황

단위: 명, %

| 시도 | 등록장애인 | | 발달장애 | | 지적장애 | | 자폐성장애 | |
|----|---------|--------|--------|--------|--------|--------|-------|--------|
| 서울 | 394,816 | 15.03% | 33,234 | 13.57% | 26,967 | 12.53% | 6,267 | 21.11% |
| 부산 | 175,959 | 6.70% | 14,003 | 5.72% | 11,998 | 5.57% | 2,005 | 6.75% |
| 대구 | 125,873 | 4.79% | 11,441 | 4.67% | 10,237 | 4.76% | 1,204 | 4.06% |
| 인천 | 145,398 | 5.54% | 12,254 | 5.00% | 10,672 | 4.96% | 1,582 | 5.33% |
| 광주 | 70,194 | 2.67% | 7,912 | 3.23% | 7,049 | 3.28% | 863 | 2.91% |
| 대전 | 73,131 | 2.78% | 7,642 | 3.12% | 6,588 | 3.06% | 1,054 | 3.55% |
| 울산 | 51,030 | 1.94% | 5,028 | 2.05% | 4,377 | 2.03% | 651 | 2.19% |
| 세종 | 12,106 | 0.46% | 1,266 | 0.52% | 1,084 | 0.50% | 182 | 0.61% |
| 경기 | 564,994 | 21.51% | 53,199 | 21.72% | 45,280 | 21.04% | 7,919 | 26.67% |
| 강원 | 101,585 | 3.87% | 9,179 | 3.75% | 8,428 | 3.92% | 751 | 2.53% |
| 충북 | 97,566 | 3.71% | 11,305 | 4.62% | 10,540 | 4.90% | 765 | 2.58% |
| 충남 | 133,976 | 5.10% | 13,154 | 5.37% | 12,139 | 5.64% | 1,015 | 3.42% |
| 전북 | 132,292 | 5.04% | 13,218 | 5.40% | 12,418 | 5.77% | 800 | 2.69% |
| 전남 | 141,460 | 5.39% | 12,958 | 5.29% | 12,145 | 5.64% | 813 | 2.74% |
| 경북 | 181,115 | 6.90% | 17,576 | 7.18% | 16,352 | 7.60% | 1,224 | 4.12% |
| 경남 | 188,370 | 7.17% | 17,608 | 7.19% | 15,602 | 7.25% | 2,006 | 6.76% |
| 제주 | 36,412 | 1.39% | 3,941 | 1.61% | 3,354 | 1.56% | 587 | 1.98% |

도 단위 지역일수록 전체 인구 중 발달장애인 비율이 높음(서울 0.33%, 전북 0.70%)

〈부도 6-2〉 서비스별·시설별 발달장애인 이용자 수



주: 발달장애인 비경제활동 인구 중 활동지원급여, 거주시설 등을 이용하는 인원을 제외하더라도 근로가 가능한 성인 발달장애인 중 상당수가 마땅한 직업경험을 갖지 못하고 있음.

참고문헌

- 고명균(2014). 《발달장애인법과 일자리》. 한국장애인개발원 드림잡리포트.
- 교육부(2019). 《특수교육 통계》. 교육부.
- 구자인, 정민철, 이윤정, 황바람, 신소희(2020). 《농산어촌 유토피아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시범계획 수립》. 충남연구원·마을연구소 일소공도.
- 김선형(2019).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개발을 위한 현황과 과제”, 2019년 연차학술대회 발표자료. 한국직업재활상담사협회.
- 김용득 외(2013). 《전국 성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실태조사》.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 김정섭(2016). “청년에게 권농하려면”, 한국농어민신문(7월 19일자).
- 김정섭(2018). “사회적 농업, 농업과 농촌의 탈영토화: 홍성군 장곡면 사례”, 《농촌지도와 개발》, 25(3): 121-133.
- 김정섭, 이정해, 김경인, 안석(2017). 《사회적 농업의 실태와 증장기 정책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섭, 정유리, 유은영(2019a). “농촌 지역사회에서 펼쳐지는 협동 조직 활동”, 《농촌사회》, 29(1): 7-35.
- 김정섭, 나현수(2019b).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 부처 협력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2020). “2020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실적 보고 자료”. 비공개 내부자료.
- 농촌진흥청(2017).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2016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농촌진흥청.
- 무주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2020). 《2019년 농촌과소화 대응인력 육성사업 사업결과보고서》, 무주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
- 박우진(2020). 《발달장애인 가족창업특화사업장 직종개발에 관한 연구》,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 보건복지부(201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 오길승(2006). “정신지체 등 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 실태 및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서 1차 산업 분야 활성화 방안”, 《직업재활연구》, 16(1): 5-25.
- 이한나, 김동기, 김용진, 전지혜(2020). “한국 사회서비스 분야 개인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고찰”, 《한국장애인복지학》, 49: 83-118.
- 정민철(2014). “협업농장과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웹페이지 게시물.
- 존 풋(2019), 《정신병원을 폐쇄한 사람》, 권루시안 옮김, 문학동네.
- Beard, C.(2010). *The experiential learning toolkit: Blending practice with concepts*. London: Kogan Page.

- Bloom, G.(2009). "Priority areas and innovation strategies for further developing Social Farming in Europe", In Di Iacovo and O'Connor(eds.), *Supporting policies for Social Farming in Europe: Progressing Multifunctionality in Responsive Rural Areas*. Firenze: ARSIA.
- Bureau of European Policy Advisers. (2011). *Empowering people, driving change: Social Innovation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Commission.
- Burchardt, T., Le Grand, J., & Piachaud, D. (1999). "Social Exclusion in Britain 1991-1995",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33(3): 227-244.
- Chovanec, T., Hudcová, E., & Moudrý, J. (2015). *Social Farming: A document prepared in the framework of the Working Committee for Social Farming i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Ministry of Agriculture of the Czech Republic.
- Crowley, C., O'Sullivan, S., & O'Keefe, B. (2017). *An Evaluation of Kerry Social Farming 2017*. Ireland: Commission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Rural Areas.
- European Commission. (2010). *Overview of Social Farming and Rural Development in Selected EU Member States*. European Commission.
-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2012). *Opinion of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on 'Social farming: green care and social health policies'*. Brussels: EESC.
- FAO. (2015). "The Implications of Social Farming for Rural Poverty Reduction", Technical Workshop Final Report. Rome.
- Fazzi, L. (2011). "Social Co-operatives and Social Farming in Italy", *Sociologia Ruralis*, 51(2), 119-136.
- Ferre, F., Guilio, A., Valerio, L., Longhi, S., Lazzari, A., Fattore, G., Ricciardi, W., & Maresso, A. (2014). "Italy: Health System Review",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16(4), 1-168.
- Goris, K., & Dessein, J. (2007). *Social Farming in Flanders and Belgium*. SoFar Project.
- Habermas, J. (1984).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NewYork: Beacon Press.
- Hassink, J. (2007). *Social Farming in the Netherlands*. SoFar Project.
- Hassink, J. (2009). "Social farming across Europe: overview", In F. Di Iacovo and D. O'Conner(eds.). *Supporting policies for Social Farming in Europe: Progressing Multifunctionality in Responsive Rural Areas*. Toscana: ARSIA.
- Hassink, J.(2017). *Understanding Care Farming as a swiftly developing sector in The Netherlands*. PhD. Thesis. Amsterdam: University of Amsterdam.

- Hassink, J., & Dijk, M. (2006). "Farming for health across Europe: comparison between countries, and recommendations for a research and policy agenda", In J. Hassink and M. Van Dijk(eds.). *Farming for health: Green-care farming across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ordrecht: Springer.
- Iacovo, F. D.(2010). "Social farming in Italy: feeding conventionally or re-shaping innovatively?", Presentation at the workshop "Linking rural development and social farming". Flanders, Belgium(1 oct. 2010).
- Iacovo, F. D., & D. O' Connor. (2009). *Supporting policies for Social Farming in Europe: Progressing Multifunctionality in Responsive Rural Areas*. Toscana: ARSIA.
- Iacovo, F. D., & Peroni, P. (2006). *Between Agriculture and Social Work, Non for Profit and Entrepreneurship*. SoFar Project.
- Iacovo, F. D., Moruzzo, R., Rossignoli, C., & Scarpellini, P. (2014). "Transition Management and Social Innovation in Rural Areas: Lessons from Social Farming",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Extension*, 20(3), 327-347.
- Iacovo, F.D, Petrice, J. & Rossignoli, C.(2015). "Social Farming and social prote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in the perspective of sustainable rural development", Proceeding of the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griculture in an Urbanizing Society. Denmark: Aalborg University.
- Mipaaf(Ministero delle politiche agricole alimentari e forestali)(2015). *La mappa degli Operatori dell' Agricoltura Sociale*.
- Ploeg, J. D. van der(2018). *The new peasantries: Rural development in times of g/balization*: London: Routledge.
- Social Farming Ireland(2018). *Social Farming and the Social Inclusion and Community Activation Programme(SICAP)*. Ireland: Social Farming Ireland.

사회적 농업 온라인 포털사이트(<http://socialfarm.kr>).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아그리콜뚜라 카포다르코Agricoltura Capodarco 홈페이지 (<http://www.agricolturacapodarco.it>).

젊은협업농장 웹페이지(<http://collabo-farm.com/about-young-collabo-farm/>).

행복농장 홈페이지(<http://happyhada.com>).



농촌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적 농업 추진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TEL. 044) 868-0846 <http://www.mafra.go.kr>